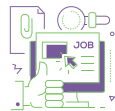


여성 경제 활동 백서

발간등록번호

11-1383000-100021-10



2024년

여성 경제 활동 백서

202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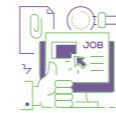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11-1383000-100021-10



2024년

여성
경제
활동
백서



2025.01.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입니다.

2023년에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정책 성과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두 번째로 발간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 고용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미래 신산업 전망에 따른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확대 및 지역핵심 산업기반 직업훈련과정 개발 등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출 지원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제도 개편, 기업 대상 다양성교육 운영 등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모든 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백서가 대한민국 여성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신영숙**

발간사



「2024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인력의 우수함은 이미 여러 부문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4년 54.7% +0.6%p), 여전히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이 더 낮아 출산과 육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년 한해 정부는 일·가정 양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4년 10월에는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고, 금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도 금년에는 4.4조 원으로 전년(2.7조 원) 대비 62.8%나 늘었습니다.

올해도 일하는 부모 누구나 큰 부담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연한 근로환경과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4 여성경제활동백서」에는 여성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고용환경 관련 주요 정책과 최신 통계를 수록했고, 특히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여성인력 현황과 여성의 근로여건 현황도 새롭게 수록했습니다.

발간에 힘써주신 전기택 박사님을 비롯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가족 및 여가부, 교육부, 중기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백서가 여성 일자리 정책 발전에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일과 가정에서 힘찬 하루를 보내고 계신 여성 근로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1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일러두기

- 여성경제활동백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시행 2022년 6월) 제9조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 현황 및 정부 지원정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발간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 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 금년은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두 번째 해로, 여성경제활동 관련 정책 변화와 성과를 기술하고 최근 10여 년간의 통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 정책내용 작성 기준시점은 2024년 9월이며, 통계작성 기준시점은 2024년 6월로, 동 시점까지 집계가능한 자료들을 수록하였습니다.

* 2024년 6월까지 2023년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2년 통계를 사용

* 2025년 확정적으로 시행 예정인 정책내용은 백서에 반영하였으며, 시행 시기를 병기

- 본 통계는 통계청 승인자료, 담당부처 제공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자료 특성에 따라 시계열에 반영하였습니다.

- 2013년 자료부터 제시하되, 자료제공이 가능한 연도에 따라 시계열이 달라질 수 있으며, 통계별로 주요 변화 시기를 고려하여 연도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통계별 주석 참조)

- 통계의 원자료는 각 출처 및 자료,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백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백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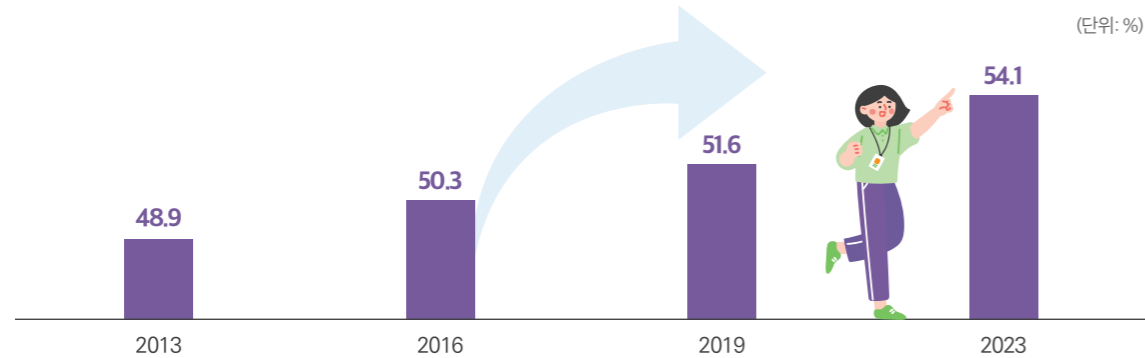
2023년 여성경제활동 통계



여성경제활동의 변화와 근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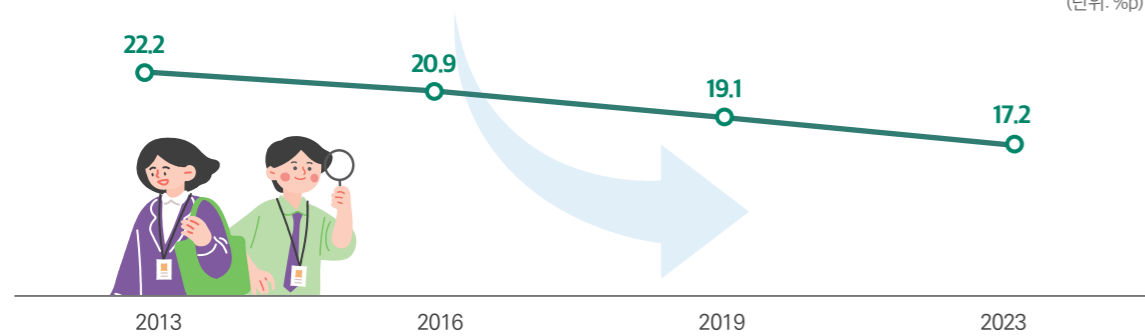
여성 고용률 증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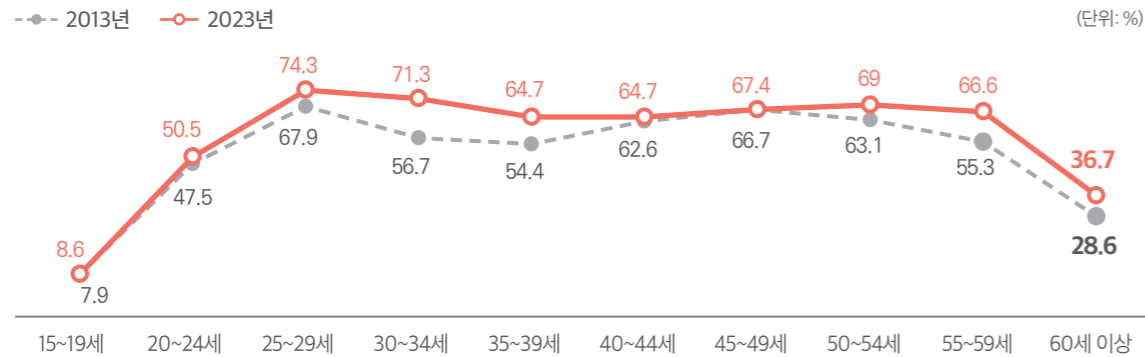
고용률의 성별 격차 감소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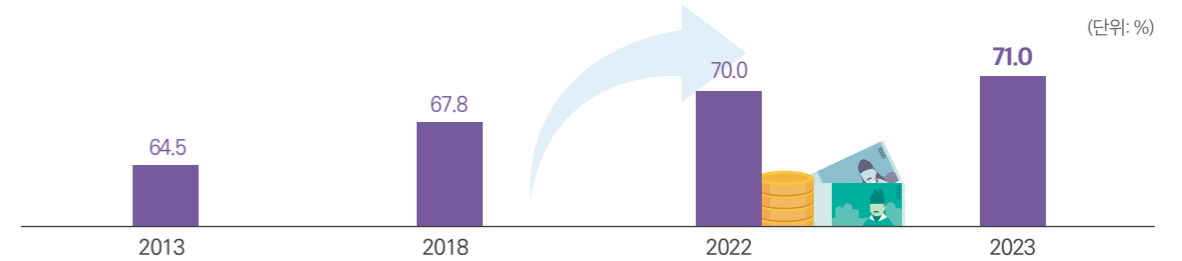
연령별 여성 고용률 M자형 완화

(단위: %)



시간당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 지속적으로 증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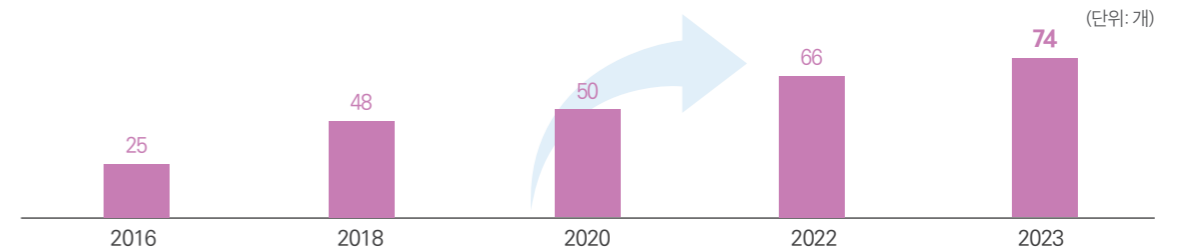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

연도	구직건수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	새일여성인턴 취업률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수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 센터 수
2013	209,530건	680개	96.8%	24,430명	사업시행전
2023	589,685건	715개	97.0%	26,950명	8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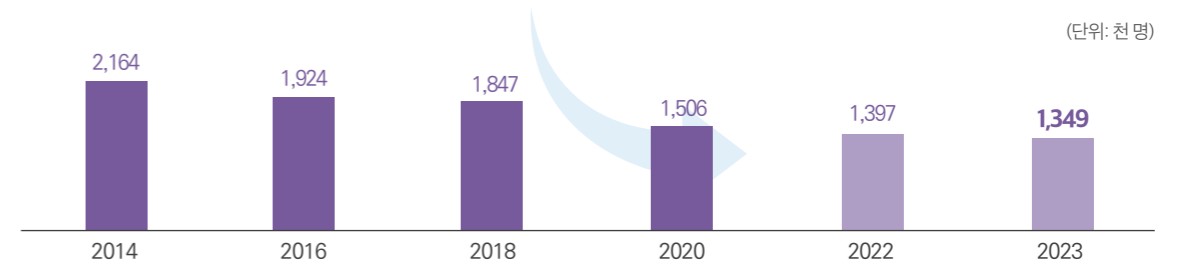
새일센터 고속련·고부가가치 훈련과정 수 증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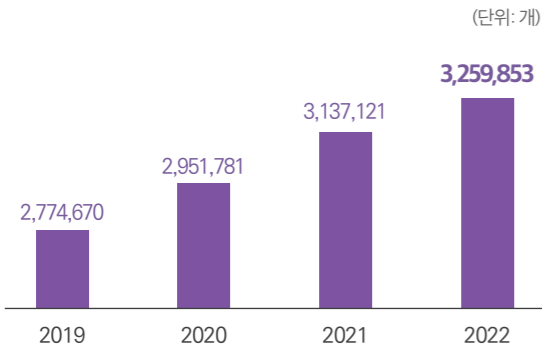
경력단절 여성 규모 감소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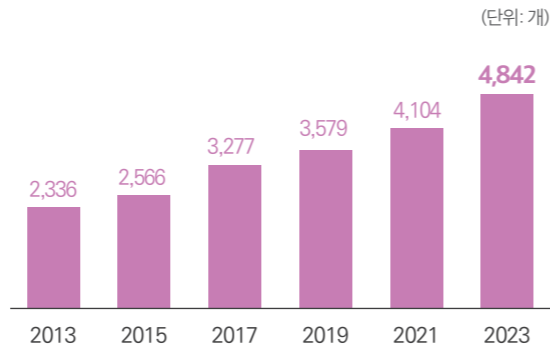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력 진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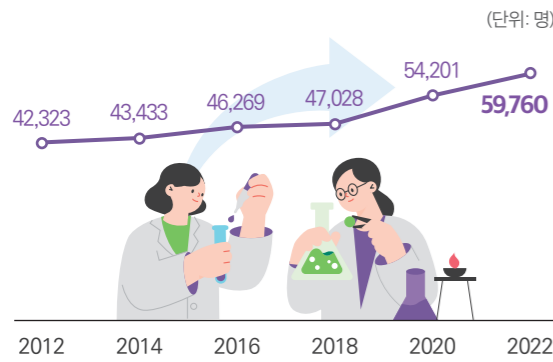
여성경영인 기업 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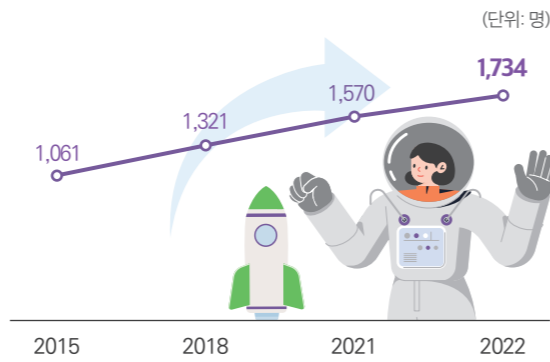
여성 벤처기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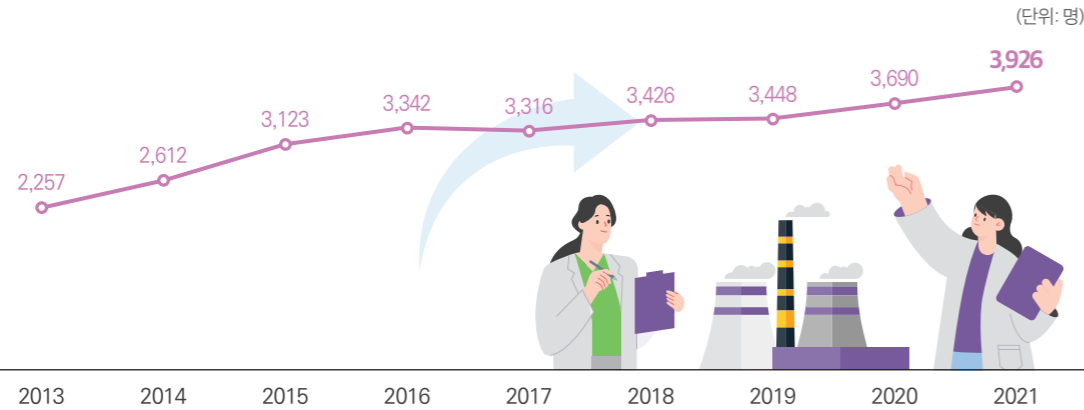
여성과학기술인력 증가



우주산업 분야 여성 인력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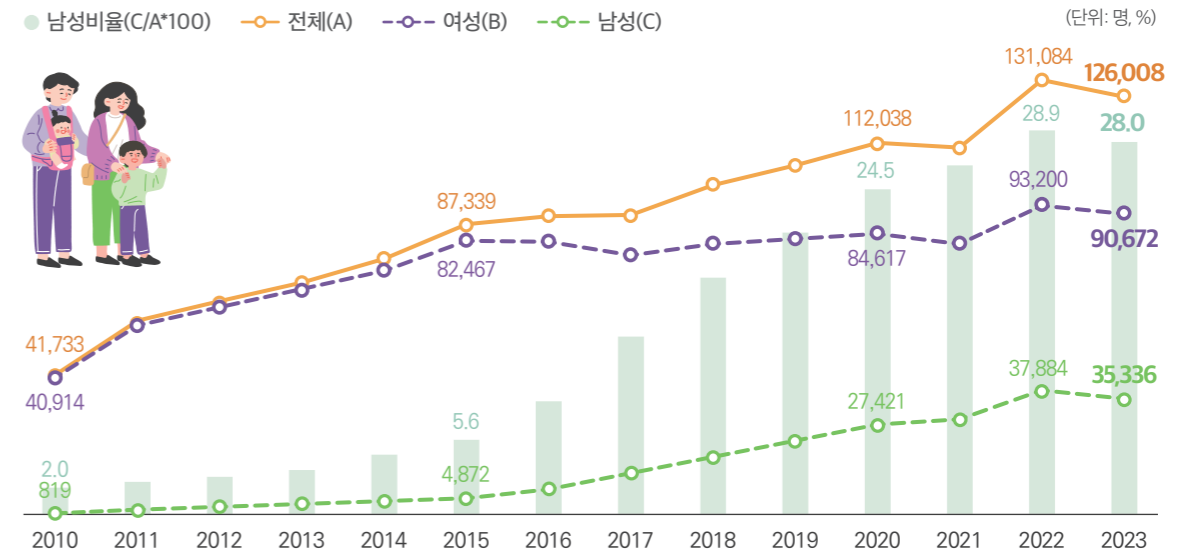


원자력 분야 여성 인력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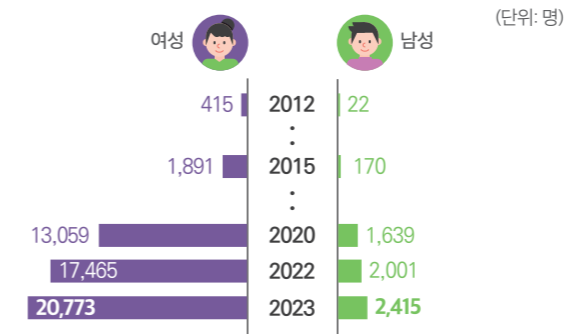


일·생활 균형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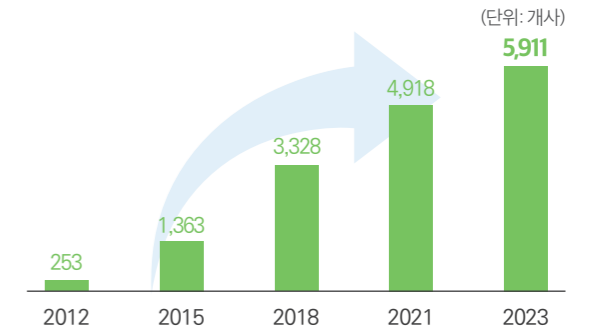
출생아 수 감소에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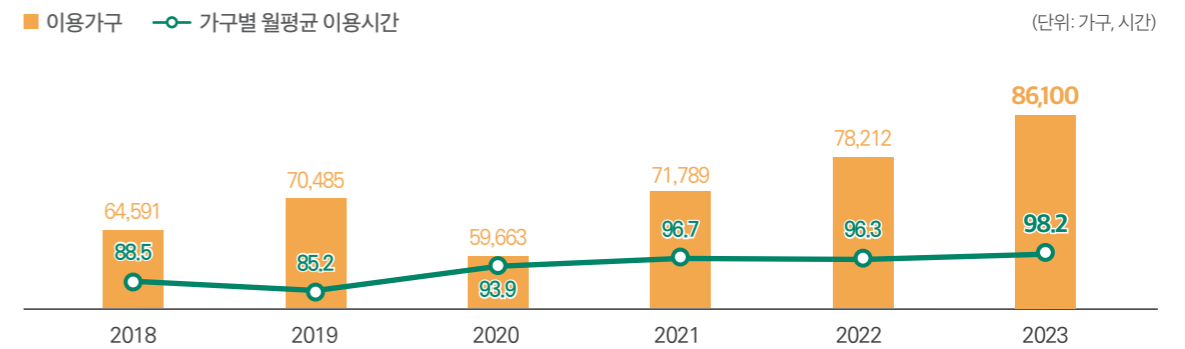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 증가



가족친화인증기업 증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규모 증가



목차

01 장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



1. 여성경제활동 관련 주요 정책·사업	18
가. 여성 취업지원 및 다양성 제고	18
나. 일·생활 균형 지원	22
다. 양성평등 고용환경 구축	35
2. 여성경제활동 관련 법령 제·개정	38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38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9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40
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1
마. 「양성평등기본법」	43

02 장

여성의 고용



1. 경제활동 현황	46
가. 취업자 변화	46
나. 실업자 변화	52
다.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54
2. 취업자 특성	57
가. 산업별·직업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57
나.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63
3.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 현황	65
가. 경력단절 여성	65
나. 고용보험 가입 현황	67
다. 구인·구직 여성	68
4. 주요 국가전략기술분야 여성 인력 현황	69
가. 성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인력 현황	69
나. 성별 원자력 분야 인력 현황	70
다. 성별 우주산업 분야 인력 현황	72
라. 성별 수소 분야 인력 현황	73
마. 성별 인공지능 분야 인력 현황	74
바. 성별 정보통신 분야 인력 현황	75
사. 성별 로봇 분야 인력 현황	76

03 장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기업 활동



1.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80
가. 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 현황	80
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현황	82
2.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86
가. 과학기술인 현황	86
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 현황	88
3. 여성 기업활동	89
가. 여성경영인 기업 현황	89
나. 창업 현황	92
다. 여성경영인 기업 수	94
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현황	96
마. 여성벤처기업 현황	96
바. 벤처기업 여성고용 현황	98

04 장

여성의 일·생활 균형



1.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102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108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 현황	110
4.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112
5. 초등돌봄교실 참여 현황	115
6.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116

05 장

여성의 근로여건 현황



1. 임금	120
2. 근로시간	130
3. 사회보험	133

통계 설명자료	136
관련 사이트	138

표 목차

표 II

표 II-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46
표 II-2	성별·연령별 고용률	48
표 II-3	성별·교육정도별 고용률	50
표 II-4	성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52
표 II-5	성별·연령별 실업자	53
표 II-6	성별·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54
표 II-7	성별·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56
표 II-8	산업별·성별 취업자	57
표 II-9	직업별·성별 취업자	59
표 II-10	성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61
표 II-11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63
표 II-12	직업별·종사자 규모별 여성 취업자	64
표 II-13	사유별·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 규모	65
표 II-14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67
표 II-15	성별 구인·구직 및 취업 건수	68
표 II-16	성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인력	69
표 II-17	성별 원자력 분야 인력	71
표 II-18	성별 우주산업 분야 인력	72
표 II-19	성별 수소 분야 인력(2022년)	73
표 II-20	성별 인공지능 분야 인력	74
표 II-21	성별 정보통신 분야 인력(2022년)	75
표 II-22	성별 로봇 분야 인력	76

표 III

표 III-1	성별 정부지원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현황	80
표 III-2	성별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 현황	81
표 III-3	전국 새일센터 운영 현황	82
표 III-4	새일센터 구직 건수, 취업률, 취·창업 건수 현황	82
표 III-5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	83
표 III-6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 및 수료자 수	83
표 III-7	연령별 새일센터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과정 참여 현황	84
표 III-8	새일여성인턴 연계 및 취업 현황	85
표 III-9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사업 현황	85
표 III-10	성별·고용형태별 과학기술인 인력 추이	86
표 III-11	성별·기관유형별 과학기술인 인력 추이	87
표 III-12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예산 및 수혜자 수	88
표 III-13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사업 취업 유지 현황	88
표 III-14	산업별 여성경영인 기업 비율 추이	89

표 목차

표 III-15	산업별·기업 성장단계별·매출액 규모별 여성기업 현황	91
표 III-16	산업별 여성 창업 건수	92
표 III-17	산업별 여성경영인 기업 수	94
표 III-18	지역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개소 현황	96
표 III-19	벤처기업 대표자 성별 현황	96
표 III-20	유형별 여성 벤처기업 현황('23.12.31. 기준)	97
표 III-21	업종별 여성 벤처기업 현황('23.12.31. 기준)	97
표 III-22	성별·고용형태별 벤처기업 종사자 수	98

표 IV

표 IV-1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추이	102
표 IV-2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	103
표 IV-3	성별·산업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104
표 IV-4	성별·직업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106
표 IV-5	성별·사업장 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106
표 IV-6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여부 및 유형	107
표 IV-7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108
표 IV-8	성별·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109
표 IV-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현황	110
표 IV-10	성별·사업장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	111
표 IV-11	전국 어린이집 현황	112
표 IV-12	직장어린이집 수	113
표 IV-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114
표 IV-1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114
표 IV-15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이용 현황	115
표 IV-16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현황	116

표 V

표 V-1	성별·고용형태별 평균 임금	120
표 V-2	성별·근속기간별 평균 임금	122
표 V-3	성별·고용형태별·근속기간별 평균 임금	124
표 V-4	성별·업종별 평균 월 급여 총액	126
표 V-5	성별·업종별 평균 시간당 임금	127
표 V-6	성별·직종별 평균 월 급여 총액	129
표 V-7	성별·직종별 평균 시간당 임금	129
표 V-8	성별·고용형태별 월 평균 근로시간	131
표 V-9	성별·근속기간별 월 평균 근로시간	132
표 V-10	성별 근로자 사회보험 유형별 가입률	134
표 V-11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135

그림 목차

그림 II

그림 II-1	성별 고용률 및 성별 격차	47
그림 II-2	15~64세 성별 고용률 및 성별 격차	47
그림 II-3	연령별 여성 고용률	49
그림 II-4	연령별 남녀 고용률 격차	49
그림 II-5	고학력(전문대졸 이상) 남녀 고용률	51
그림 II-6	교육정도별 남녀 고용률 격차	51
그림 II-7	성별 실업률 추이	52
그림 II-8	연령별 여성 실업률	53
그림 II-9	활동상태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55
그림 II-10	산업별 여성 취업자 비중	58
그림 II-11	성별 취업자 직업분포	60
그림 II-12	2023년 종사상지위별 여성 취업자 증감	62
그림 II-13	성별 취업자 종사상지위 변화	62
그림 II-14	사유별 경력단절 여성 비율 변화	66
그림 II-15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비율 변화	66
그림 II-16	사유별 경력단절 여성 규모	67
그림 II-17	고용보험 여성 가입자 및 비율 추이	68
그림 II-18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70
그림 II-19	원자력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71
그림 II-20	우주산업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73
그림 II-21	인공지능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75
그림 II-22	로봇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77

그림 III

그림 III-1	정부지원 재직자 직업훈련 여성참여 비율 추이	81
그림 III-2	성별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 비율 추이	82
그림 III-3	새일센터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과정 수 및 취업률 추이	84
그림 III-4	여성과학기술인 중 비정규직 비중 추이	87
그림 III-5	산업별 여성경영인 기업 비율	90
그림 III-6	여성경영자 비중이 증가한 주요 산업	90
그림 III-7	여성 창업기업의 산업별 비중	93
그림 III-8	산업별 여성경영인 기업 비율	95
그림 III-9	여성벤처 기업 비중 추이	97

그림 목차

그림 IV

그림 IV-1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추이	103
그림 IV-2	2023년 성별·산업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105
그림 IV-3	2023년 성별·사업장 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107
그림 IV-4	여성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추이	109
그림 IV-5	성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추이	109
그림 IV-6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추이	110
그림 IV-7	2023년 성별·사업장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분포	111
그림 IV-8	2023년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비율	112
그림 IV-9	직장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수 추이	113
그림 IV-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수 및 아이돌보미 수 추이	115
그림 IV-11	가족친화인증기업 수 추이	116

그림 V

그림 V-1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성비	121
그림 V-2	근속기간별 남녀 근로자의 임금과 성비(2013, 2023년)	124
그림 V-3	업종별 여성 월 평균 임금	126
그림 V-4	직종별 여성 월 평균 임금	128
그림 V-5	성별 근로자 월 평균 근로시간	130
그림 V-6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	131
그림 V-7	근속기간별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	133
그림 V-8	남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134



01 장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



1. 여성경제활동 관련 주요 정책·사업
2. 여성경제활동 관련 법령 제·개정

01 장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



1. 여성경제활동 관련 주요 정책·사업

가. 여성 취업지원 및 다양성 제고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근거법과 기본계획: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과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24)

1) 대상 및 목적

- 혼인·임신·출산·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구직상담, 직업교육, 인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2)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직업 상담 및 집단 상담	개인별·단계별 맞춤형 직업·진로 상담, 취업의욕 상실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구직자의 직업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 및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 유망 직종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인턴십 지원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고용유지를 지원 ※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한 사업장 및 인턴에게 1인당 460만 원(25년 예정) 한도 지원
새일센터 창업 지원	창업상담사 배치 및 예비창업자 발굴, 정보 제공, 초기 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통한 자금·공간·패키지 등 연계 우대 지원
경력이음 사례관리	경력단절여성 등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취업지원 ※ 20~40대 경력단절여성 대상 상담·진단부터 취업 및 사후관리까지 통합적 취업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구직자-구인처 간 취업연계, 새일센터 구직등록여성 및 취업자,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개선, 취업강화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	심리·노무·경력개발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교육 등 재직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여성) 심리고충·인사·노무·경력개발상담, 멘토링·동아리 등 고용유지 및 직장적응 지원 (기업) 컨설팅, 교육, 워크숍 등 직장문화개선 지원 등

3) 운영 현황

- 2008년 5개 기관을 통해 시범운영 실시 후, 2009년 72개소를 시작으로 2024년 기준 159개 센터를 지정·운영
※ 72개소(09년) → 85개소(10년) → 98개소(11년) → 110개소(12년) → 130개소(13년) → 140개소(14년) → 147개소(15년) → 150개소(16년) → 155개소(17년) → 158개소(18년) → 159개소(24년)
- 온라인으로 손쉽게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새일e직업훈련센터)을 확대 운영함. 2024년 기준 온라인 46개 과정,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과정은 147개 진행

○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사업(여성가족부)

1) 대상 및 목적

- 기업의 성별다양성 제고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성(DEI) 교육 사업 추진

2) 지원내용

- 조직의 제도변화에 적용 가능한 사례·실행 전략 중심의 ESG·DEI 교육

* ESG : 투자·경영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전략
* DEI :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의미하여 조직문화의 관점에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가치로서 ESG 전략 중 S(사회)에 포함됨

- 기업 규모·직종 등에 따른 조직문화와 제도 확산성을 고려한 업종별·단계별 맞춤형 교육
 - ①제도 파급력과 실행력을 갖춘 대기업, 중견기업, ②자율적 이행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가족친화예비기업, 스타트업 등) 등 기업 규모별 특성 고려
 - 의사결정권을 가진 CEO, 제도설계를 주도하는 HR 담당자 등 직종별로 CEO 포럼, 지역 산업단지 대상 찾아가는 HR 담당자 교육 등 다양한 접근 방식
- 기업의 실질적인 성별균형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 등 조직문화 개선수요가 있는 기업, 지역 산업단지, 중소기업 등 일·가정 양립 의식 및 여건이 부족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HR 담당자 대상 교육
- 장기적인 교육 효과 측정 및 확산을 위한 기업 유형별 조직문화 인식·진단 및 제도변화 측정

3) 사업 현황 및 실적

-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사업 교육인원

연도	2023년(시범운영)	2024년 10월
교육 인원	103명	282명

- '24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사업 교육 만족도
 - 일·생활 균형 이해도: (교육 전) 3.4점 → (교육 후) 4.2점
 - 관심도·중요도: (교육 전) 3.8점 → (교육 후) 4.4점

🔗 여성기업 지원

근거법과 기본계획: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1차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20~24)

○ 여성 창업 활성화 지원(중소벤처기업부)

- 여성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여성 전용 창업보육시설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18개 지역센터 내 여성창업보육실 운영. 창업 3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가 대상임. 입주 공간은 10평 내외이며, 입주 기간은 1년(연장심사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 여성창업경진대회: 우수 여성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멘토링, 시상, 사업화, 국내외 투자유치 등 패키지 지원. 창업 후 3년 미만 초기 여성창업자(투자유치 30억 원 미만) 대상으로 기술/일반창업, 예비창업, 지역 4개 부문을 지원함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우수 여성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멘토링, 시상, 사업화, 해외 진출, 국내외 투자유치 등을 패키지로 지원. 창업 7년 미만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무교육(1,000명), 컨설팅(70팀), 글로벌 홍보지원/해외진출(30팀) 지원

○ 여성기업 판로 촉진(중소벤처기업부)

- 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여성기업법」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운영.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영홍소핑 입점 지원(입점 및 방송 수수료 지원), SNS 광고 영상 제작비 지원, 맞춤형 MD 상담회(대형유통사 MD와 여성기업 1:1 매칭, 상담을 통해 유통사 입점 및 컨설팅), 판로역량 강화 교육(여성기업의 판로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출 전략, 대형유통망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등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

○ 여성기업 인력 지원(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여성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과 인력을 적시에 매칭하는 플랫폼
- 여성 CEO 최고 경영자 과정: 여성 CEO를 대상으로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
- 여성 CEO 경영애로 지원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서 경영전략·마케팅·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실시

- 여성기업 주간 지정: 여성기업 간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여성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1년 10월 「여성기업법」 개정을 통하여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2022년 4월에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사를 법제화함

○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수립 및 통계 자료 발간 등을 위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여성 경제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내외 여성기업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조사·연구
- 「여성기업법」 제7조에 따라 국내 유일의 국가승인 통계인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여성기업의 현황 및 경영 애로 사항 등을 파악. 2021년 4월에는 「여성기업법」 개정을 통하여 조사 실시 주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개편하였으며, 2022년부터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의 시의성을 확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근거법과 기본계획: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재직·승진목표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 공사부설 연구원 50개를 대상으로 매년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재직비율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여성 재직비율이 30%를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 및 국공립대학에서 지정하며, 기관 내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향상과 채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가 기관 전반에 확산되어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
- 운영 기관 수를 2005년 30개에서 2024년 147개로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산과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며, 일자리 매칭 사업을 통한 대학, 공공 및 민간기업 연구소로의 고용 촉진 및 연구비 지원(연간 학·석사급 2,100만 원/인, 박사급 2,300만 원/인)

○ 여성과학기술인 생애주기 성장지원 플랫폼 'W브릿지'(www.wbridge.or.kr)(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력탐색부터 경력전환, 경력심화 단계까지 여성과학기술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커리어 연속 성장을 지원하며, 초·중·고생, 대학(원)생, 미취업자, 재직자, 고경력자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여대학원생 연구책임자가 대학생, 중·고등학생과 팀을 이뤄 함께 공학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연구비는 일반과정은 팀별 최대 700만 원(50팀 내외), 심화과정은 팀별 최대 800만 원(100팀 내외)을 지원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운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정책조사 등을 추진

나. 일·생활 균형 지원

근거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임신·출산 지원제도(근로자 지원)

○ 출산전후휴가 제도(고용노동부)

1) 대상 및 기간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함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관련 보호 규정

-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3) 급여 지원 및 요건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 다태아의 경우 45일 한도)에 한함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정부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 원)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 원)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 원) 지급
대규모기업 근로자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 원) 지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4)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지원 3법 개정('24.10.22.)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고,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에서 100일로, 대규모기업은 30일에서 40일로 확대('25.2.23. 시행 예정)

○ 유산·사산휴가 제도(고용노동부)

1) 대상 및 기간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기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임신기간	휴가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급여 지원 및 요건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제도와 동일

3)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제도와 동일. 다만, 유산·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함) 1부 추가 제출
 - ※ 육아지원3법 하위법령 개정 예정으로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25년 2월 중 예정)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고용노동부)

1) 대상 및 기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2) 급여 지원 및 요건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정하여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지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육아지원 3법 개정('24.10.2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확대(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사용기한이 90일 이내 청구에서 120일 이내 사용으로 확대, 분할횟수가 1회에서 3회로 확대)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25.2.23. 시행 예정)

○ 난임치료휴가 제도(고용노동부)

1) 대상 및 기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주어야 함
- 난임치료휴가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급여지원 및 요건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정하여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0,760원) 지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난임 치료휴가 급여 지급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3) 신청방법

- 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 ※ 육아지원 3법 개정('24.10.22.)에 따라 휴가 기간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남. 또한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25년 2월 중 예정)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고용노동부)

1) 대상 및 지급 요건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유형: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 (1회 이상) 확인이 가능한 자
 - 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 확인이 곤란한 자
 - 유형: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2) 급여 지원

- 총 150만 원(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다름)

3) 신청방법

-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고용노동부)

1) 대상 및 기간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허용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 육아지원 3법 개정(24.10.22.)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로 확대, '25.2.23. 시행 예정)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산정(24.10.22. 시행)

🔗 육아 지원제도

○ 육아휴직 제도(고용노동부)

1) 대상 및 기간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함
-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사용 가능
-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2) 관련 보호규정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3) 급여 지원 및 요건

- 지급조건: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1~3개월 상한 250만 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상한 160만 원(통상임금 80%)를 월별로 받을 수 있음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육아휴직급여 특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 원), 7개월 이후 상한 160만 원(통상임금 80%)를 지급(첫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상한)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 원), 4~6개월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상한 160만 원(통상임금 80%)를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는 '25.1.1.자 시행

4) 신청의 제한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후 신청한 경우 급여 지급 불가)
- 신청주기: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함
- 구비서류: ①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1부 ②「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④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출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 육아지원 3법 개정(24.10.22.)에 따라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됨(25년 2월 중 예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고용노동부)

1) 대상 및 기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①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용 가능하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이상이 되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양육 대상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급여 지원 및 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frac{\text{월 통상임금의 100\%}}{\text{(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times \frac{10}{\text{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frac{\text{월 통상임금의 80\%}}{\text{(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times \frac{\text{단축 전 근로시간} - \text{단축 후 근로시간} - 10}{\text{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 2024년 7월 1일부터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으로 확대됨
- ※ 2025년 1월 1일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계산 기준금액(월 통상임금의 100%)의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3)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 ※ 육아지원 3법 개정('24.10.2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 사용기간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에서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2배 가산하여 최대 3년으로 확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산정('24년 10월 22일 시행)

⚙️ 사업주 대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제도

○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고용노동부)

1)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

2) 지원내용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 가능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첫 3개월 200만 원 870만 원
	만 12개월 초과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 원 36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일반	30만 원 360만 원
	인센티브 적용 시	40만 원 480만 원

3) 신청방법

-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음

○ 대체인력 지원금(고용노동부)

1) 대상

-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25.1.1.부터 육아휴직까지 확대 시행

2) 지원내용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최대 2개월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

구분	인수인계기간 (1개월 지급액, 최대 2개월 한도)	1개월 지급액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 원	월 80만 원 ('25.1.1.부터 월 120만 원으로 인상)

3) 신청방법

-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음

•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고용노동부)

1) 대상 및 내용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비하여 미리 대체인력 구직자 풀을 구축하고 구인기업의 대체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적합한 인재를 알선 추천하여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2) 지원내용(서비스 제공기관)

- 인재채움뱅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민간취업지원기관을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기업대상: 맞춤형 인재 추천/집중 알선
 - 구직자대상: 기초 소양교육, 경력 및 희망직종을 고려한 취업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 등에 특화된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기업대상: 지역사회 밀착형 구인서비스
 - 구직자대상: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 고용센터
 - 기업대상: 구인기업 발굴 및 구직자 알선
 - 직업상담 및 취업연계

• 동료업무분담지원금(고용노동부)

1) 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25.1.1.부터 육아휴직까지 확대 시행

2)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허용
-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일 것
-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등)을 할 것
-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 신청시기: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필요서류: 업무분담자 지정을 입증할 서류(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문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등)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 돌봄지원제도

○ 직장어린이집 지원(고용노동부)

1) 대상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주에 대하여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

2) 지원내용

- 설치비: 대규모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교재교구비 등 내역에 따라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 까지 지원
- 운영비: 인건비 지원은 1인당 월 60만 원(중소기업 월 138만 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은 월 200~520만 원 지원한도가 있음

3)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 문의

○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고용노동부)

1) 가족돌봄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 연간 최장 10일 사용 가능하고, 일 단위로 사용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됨
- 가족돌봄휴가 미허용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가족돌봄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 연간 최장 90일 사용 가능하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가족돌봄휴직 미허용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한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음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학업 사유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근거법: 「아이돌봄지원법」

1) 목적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도입

2) 지원내용

- 시간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기본형은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을 제공(시간당 이용요금: 11,630원)하고 종합형은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시간당 이용요금: 15,110원).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임
-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이며, 가사활동을 제외한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함.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임(시간당 이용요금: 11,63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대상은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서비스 제공(시간당 이용요금: 13,950원)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 만 0세 이상 2세 이하는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3명, 만 3세 이상 12세 이하는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5명 돌봄 가능(시간당 이용요금: 18,600원)

○ 늘봄학교(교육부)

1) 목적

-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

2) 지원내용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 '24년 초등 1학년부터 '누구나 이용' 학년 연차별 확대
- 초등 1~2학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제공: 저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제공 ('24년, 초1 → '25년부터, 초1~2)
- 초등 3~6학년 대상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3~6학년에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 등 프로그램 제공
- 시도교육청·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확산: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연계 프로그램, 수요에 맞춘 아침·저녁늘봄, 지역공간 활용 등 모델 다양화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학교에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 운영

⚙️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 유연근무제 활성화(고용노동부)

1) 필요성

-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 방식

2) 제도 내용

구분	내용
시차출퇴근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종료시간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원격근무제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3) 사업주 지원제도

구분	내용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인사노무관리 비용을 최대 연 360만 원까지 지원(육아기 근로자는 최대 연 720만 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일반 근로자 대비 월 2배 지원 ** 기존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으로 25년부터 적용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그 비용 일부를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는 근태관리 시스템과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의 50~80% 범위 내 최대 2천만 원 지원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근로시간 단축 등) 인프라는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의 70% 범위 내 최대 750만 원 지원 * 기존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으로 25년부터 적용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일터혁신(유연근무제 도입·활용 포함)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전문컨설턴트가 기업 맞춤형 기업상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을 지원 * 기존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으로 25년부터 적용

○ 가족친화인증제(여성가족부)

근거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 인증 개요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제공(중소기업 투·융자 대출 시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이용편의 제공,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

2) 인증 신청 대상: 신규 및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대상 기업

3) 신규인증 기준

구분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대기업·공공기관	70점	70점	75점
중소기업	60점	60점	65점
총계	100점 만점		
법규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인증, 유효기간연장, 재인증 모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획득 •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획득 •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 획득 및 최종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 획득 및 최종 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 획득 및 최종 점수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 획득 		

4) 인센티브 지원

-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혜택 제공
- 중소기업 투·융자 대출 시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이용편의 제공,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마크 부여 • 가족친화우수기업 정부 포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증 전/후 경영전략 무료컨설팅 • 가족친화 직장교육: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무료교육

5) 인증 현황

- 2023년 12월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총 5,911개사(대기업 668개, 중소기업 4,110개, 공공기관 1,133개)

6) 가족친화인증 준비 컨설팅

-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는 신규 가족친화인증획득이나 인증의 연장 및 재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관)에게 가족친화 전문 컨설턴트의 그룹형 및 방문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
- 매년 4월부터 그룹형/방문형 컨설팅을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지원 범위 등 적합성을 평가하여 선정(중소기업 우선선정)

○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1) 개요

-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 혜택 제공

2) 대상

- 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

3) 신청

-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①신청서(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②일·생활 균형 추진실적, ③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④평가지표별 증빙자료, ⑤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4) 사업절차

사전확인	• 결격사유 조회 및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
서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회 구성 • 현장실사 대상 사업장 선정
현장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단 구성 • 현장실사 진행
최종 선정	• '24년 203개소 선정

5) 유효기간 및 인센티브

- (유효기간) 3년
- (인센티브) 선정서(패) 수여 및 보도자료·사례집 등 홍보 지원
 - 감독·조사 면제, 금리 우대, 기술·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 혜택

다. 양성평등 고용환경 구축

근거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고용노동부)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시행('22.5.19.)

-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승진 등 고용에 있어 성차별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에도 시정을 신청 가능
-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차별시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으로 위촉된 차별시정위원 3인으로 '차별시정위원회'가 구성됨. 차별시정위원회는 담당 조사관을 통해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신청내용에 대해 조사를 한 후에 근로자(신청인), 사용자(피신청인), 증인, 참고인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 성차별 예방 및 지도·점검사업(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이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서 성(性)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 또는 형사처벌에 이르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성차별 금지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종 예방 및 지도·점검사업을 실시
- 2023년도에는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별적 고용관행을 지도·점검한 결과 6,00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관련 지도·점검(고용노동부)

-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 의무,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의무,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가 부여되며,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에게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부여됨
- 정부는 성희롱예방교육 무료강사 풀(pool)을 구성하여 성희롱 발생 개연성은 높지만 여건상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강사를 지원. 2023년 431개 사업장 13,102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장의 법 준수를 위해 여성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023년 1,028개소 점검 사업장 중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위반 사업장 등 1,017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고용노동부)

-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와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한 사전 안내서비스로 제공(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문자 및 이메일 수신에 동의한 경우)
- 가임기 여성근로자가 10인 이상, 임신 32주가 경과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매월 팩스 및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
- 2023년 임신 근로자 312,477명, 소속사업장 263,886개소에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안내

○ 국가성평등지수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
-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값으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며, 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임
- 지수 지표체계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경제활동·복지·가족 등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경제활동 분야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성비, 상용근로자 성비가 있음

영역	① 사회참여 영역			② 인권·복지 영역			③ 의식·문화 영역	
분야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2. 여성경제활동 관련 법령 제·개정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개요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5일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은 2021년 12월 7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
- 총 5장(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 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등, 제5장 보칙), 2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법 전부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뿐 아니라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 단절 예방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여성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조항	변경 사항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
제5조	기본계획 수립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제9조	여성경제활동백서	•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년 주요 제·개정 내용 및 이유

시점	제·개정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2024.3.26. 일부개정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항 신설(제5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해당 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에 맞는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024.9.27. 시행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함께 연령의 특성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제13조)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 개요

- 1987년 12월 4일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2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수정하여 시행
- 총 6장(제1장 총칙,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제3장 모성 보호,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39개의 조문, 부칙으로 구성
- 고용상 성차별 해소, 모성보호 지원 등 여성경제활동 관련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법으로, 2024년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남녀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보다 강화

○ 주요 내용

조항	변경 사항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제6조의2	기본계획 수립	•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3.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6.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9.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변경 사항	주요 내용
제2장 (제7조~ 제17조)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3장 (제18조~ 제22조)	모성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2024년 주요 제·개정 내용 및 이유

시점	제·개정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2024.10.22. 일부개정	<p>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확대, 분할사용 횟수 3회로 확대, 휴가 사용절차를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제18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p> <p>나.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로 확대하고 그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2일'로 확대,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제18조의3 제1항, 제3항)</p>	<p>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함</p>
2025.2.23. 시행 (2024.10.22. 공포)	<p>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사용(제19조 제2항)</p> <p>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제19조의2 제1항, 제4항) 등</p>	

자료: 고용노동부 제공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 개요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1999년 6월 1일 시행
-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

○ 주요 내용

조항	변경 사항	주요 내용
제5조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 5. 그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
제8조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에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음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제10조	자금지원 우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함
제15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제20조의2	여성기업의 확인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여성기업 해당여부 확인을 신청하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년 제·개정 주요 내용 및 이유

시점	제·개정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2023.10.31. 타법개정	균형성장촉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제6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2024.5.1. 시행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요

-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12월 18일 제정되어 2003년 6월 19일 시행
-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

○ 주요 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4조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제10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 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연구 활동 경비 및 국제협력 사업 지원
제11조 적극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에 여성과학 기술인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음
제13조 취업·재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제14조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의 설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년 제·개정 주요 내용 및 이유

시점	제·개정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2024.1.30. 일부개정	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조항 신설(제4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일·생활 균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제도 보완·개선함
2024.7.31. 시행	나. 적극적 조치 범위 확대(보직목표제 설정) (제11조) 다.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추진근거 마련(제13조의2) 라. 여성과기인 전담기관 법적 근거 마련(제14조의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 「양성평등기본법」(여성가족부)

○ 개요

-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5월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목표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총 6장(제1장 총칙,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6장 보칙), 53개의 조문, 부칙으로 구성
※ 2021년 이후로 개정 내용 없음

○ 여성경제활동 관련 주요 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20조 적극적 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하여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
제24조 경제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제25조 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뿐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부성권을 보장 규정
제26조 일·가정 양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28조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제29조 ~ 31조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고, 성폭력·가정 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제4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여성인력개발센터)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02장

여성의 고용



1. 경제활동 현황
2. 취업자 특성
3.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
4. 주요 국가전략기술분야 여성 인력 현황

02 장 여성의 고용



1. 경제활동 현황

가. 취업자 변화

○ 2023년 여성 취업자는 12,464천 명으로 전년 대비 303천 명 증가, 여성 고용률은 54.1%

- 여성 취업자는 2013년 대비 1,910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후 2023년까지 대체로 상승 추세
- 여성 고용률은 2022년 대비 1.2%p 상승하여, 2013년(48.9%) 대비 5.2%p 상승

표 II-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단위: 천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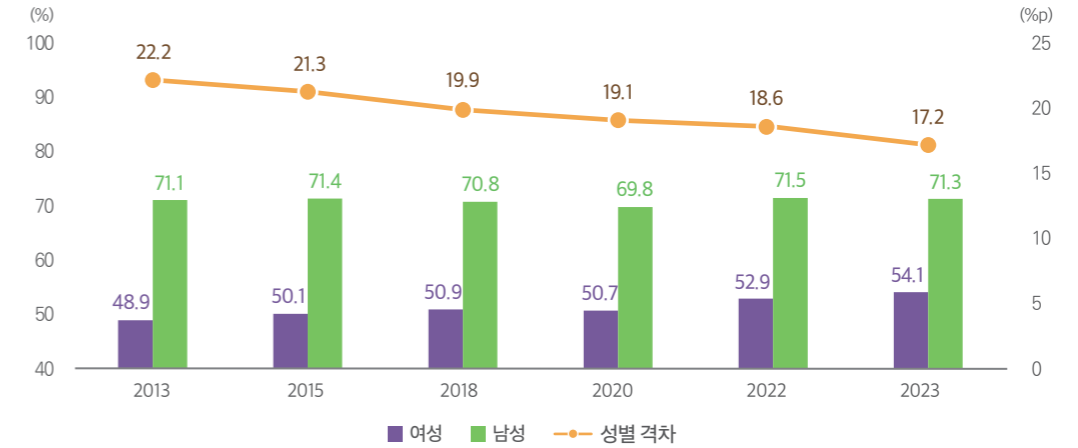
연도	취업자			고용률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13	25,299	10,554	14,745	59.8	48.9	71.1	
2014	25,897	10,840	15,057	60.5	49.7	71.7	
2015	26,178	11,022	15,156	60.5	50.1	71.4	
2016	26,409	11,168	15,241	60.6	50.3	71.2	
2017	26,725	11,356	15,368	60.8	50.8	71.2	
2018	26,822	11,450	15,372	60.7	50.9	70.8	
2019	27,123	11,660	15,463	60.9	51.6	70.7	
2020	26,904	11,523	15,381	60.1	50.7	69.8	
2021	27,273	11,725	15,548	60.5	51.2	70.0	
2022	28,089	12,161	15,928	62.1	52.9	71.5	
2023	28,416	12,464	15,952	62.6	54.1	71.3	
증감	'22년 대비	327	303	24	0.5	1.2	-0.2
	'13년 대비	3,117	1,910	1,207	2.8	5.2	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013년 22.2%p에서 2023년 17.2%p 수준으로 완화

-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018년 20%p 미만으로 낮아지고, 이후 점차 완화되는 추세

그림 II-1 성별 고용률 및 성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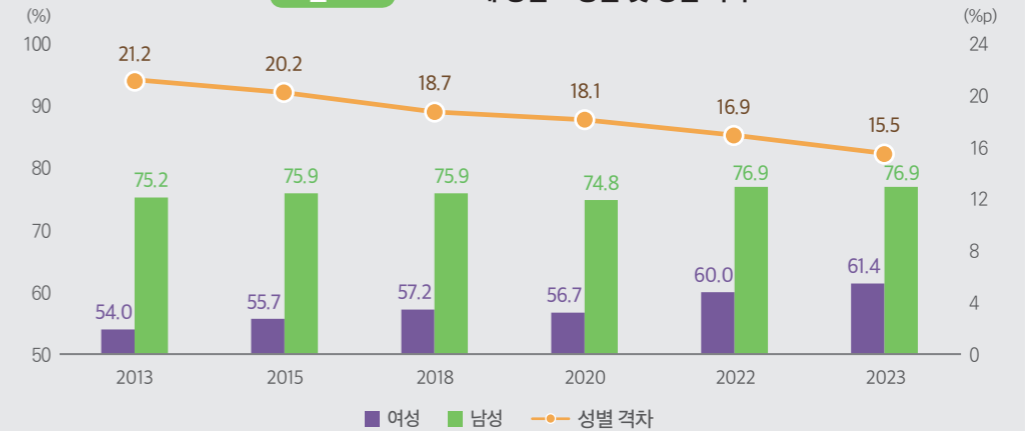


주: 1) 15세 이상
2)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참고: 15~64세 고용률

- 15~64세 여성 고용률은 2023년 61.4%로 전년 대비 1.4%p, 2013년 대비 7.4%p 상승
- 15~64세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3년 21.2%p에서 2023년 15.5%p로 완화

그림 II-2 15~64세 성별 고용률 및 성별 격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3년 대비 30대 여성 고용률의 높은 상승으로 M-curve 현상은 점차 완화 추세

-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2013년과 비교하여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 특히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14.6%p 상승)와 55~59세(11.3%p 상승) 연령층에서 높은 상승
- 또한 M자형에서 최저점인 35~39세 연령층에서도 여성 고용률은 64.7%로 2013년과 비교하여 10.3%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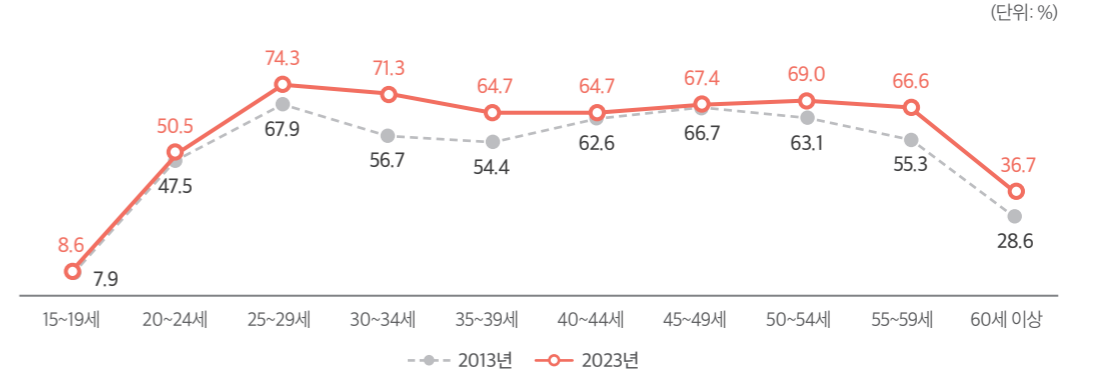
표 II-2 성별·연령별 고용률

(단위: %, %p)

연도	소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2013	59.8	6.9	43.3	68.8	72.9	73.6	77.5	79.4	76.3	69.3	38.4	
2022	62.1	8.0	46.0	71.4	78.3	76.4	77.5	78.7	79.1	75.0	44.5	
2023	62.6	7.2	45.7	72.3	79.7	78.1	78.0	79.3	79.2	76.0	45.5	
전체	'22년 대비	0.5	-0.8	-0.3	0.9	1.4	1.7	0.5	0.6	0.1	1.0	1.0
	'13년 대비	2.8	0.3	2.4	3.5	6.8	4.5	0.5	-0.1	2.9	6.7	7.1
	2023	54.1	8.6	50.5	74.3	71.3	64.7	64.7	67.4	69.0	66.6	36.7
2013	48.9	7.9	47.5	67.9	56.7	54.4	62.6	66.7	63.1	55.3	28.6	
2022	52.9	9.5	50.2	73.9	68.5	60.5	63.5	65.9	68.9	64.6	35.2	
2023	54.1	8.6	50.5	74.3	71.3	64.7	64.7	67.4	69.0	66.6	36.7	
여성	'22년 대비	1.2	-0.9	0.3	0.4	2.8	4.2	1.2	1.5	0.1	2.0	1.5
	'13년 대비	5.2	0.7	3.0	6.4	14.6	10.3	2.1	0.7	5.9	11.3	8.1
	2023	71.3	5.8	40.3	70.5	87.2	90.7	90.7	90.8	89.3	85.5	56.0
2013	71.1	5.9	38.2	69.6	88.4	92.1	92.1	91.9	89.5	83.4	51.1	
2022	71.5	6.5	40.9	69.1	87.0	91.2	90.8	91.2	89.2	85.3	55.7	
2023	71.3	5.8	40.3	70.5	87.2	90.7	90.7	90.8	89.3	85.5	56.0	
남성	'22년 대비	-0.2	-0.7	-0.6	1.4	0.2	-0.5	-0.1	-0.4	0.1	0.2	0.3
	'13년 대비	0.2	-0.1	2.1	0.9	-1.2	-1.4	-1.4	-1.1	-0.2	2.1	4.9

주: 1) 15세 이상
2)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3 연령별 여성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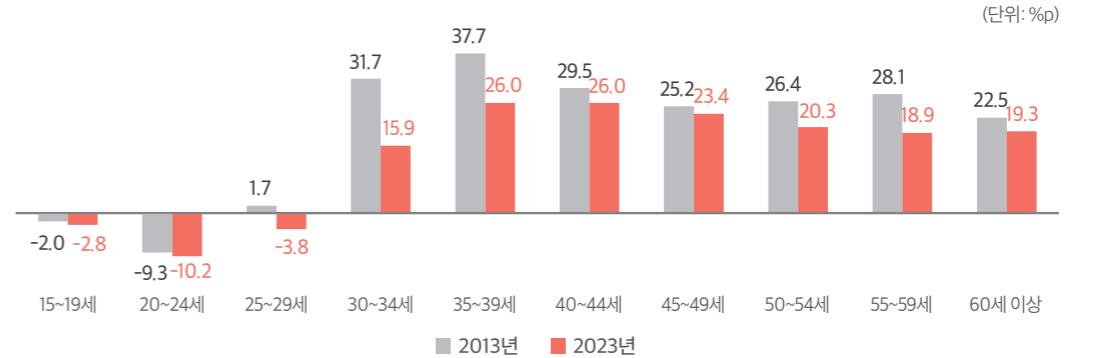


주: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의 경력단절 등의 원인으로 35~39세 성별 고용률 격차는 26.0%p

- 2023년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35~39세(26.0%p) = 40~44세(26.0%p) > 45~49세(23.4%p) > 50~54세(20.3%p) 순으로 크게 나타나며, 60세 이상 고용률의 성별 격차도 19%p 이상으로 높은 수준
- 30세 미만의 경우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013년과 비교하여 약간 상승하나, 3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성별 격차가 하락

그림 II-4 연령별 남녀 고용률 격차



주: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학력(전문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은 68.2%이며 전년 대비 1.3%p 상승

- 고학력 여성 고용률은 2020년에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2013년 대비 5.9%p 상승
- 고학력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013년 24.5%p에서 2023년 16.0%p로 점차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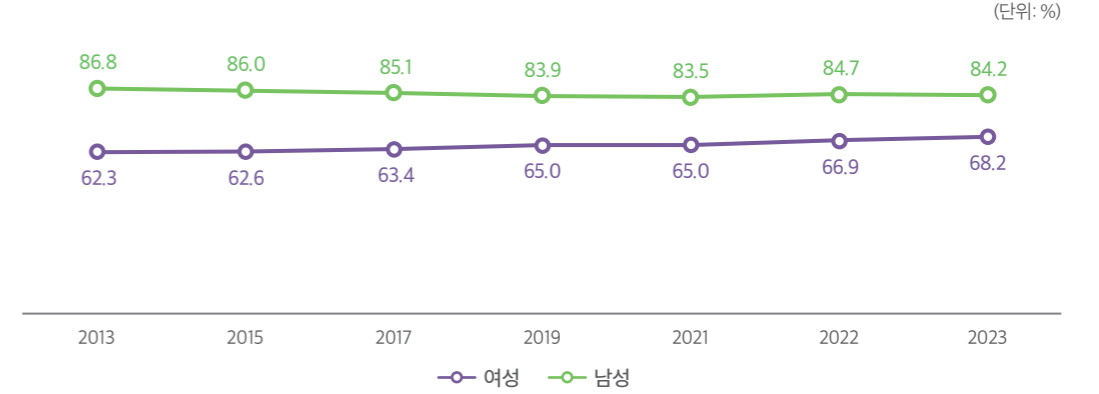
표 II-3 성별·교육정도별 고용률

(단위: %, %p)

연도	전체			여성			남성			
	소계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소계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소계	고졸 이하	대졸 이상	
2013	59.8	51.9	75.6	48.9	43.2	62.3	71.1	62.0	86.8	
2014	60.5	52.6	75.5	49.7	43.9	62.6	71.7	62.7	86.4	
2015	60.5	52.6	75.2	50.1	44.2	62.6	71.4	62.2	86.0	
2016	60.6	52.4	75.1	50.3	44.1	63.1	71.2	62.0	85.4	
2017	60.8	52.5	75.0	50.8	44.4	63.4	71.2	61.9	85.1	
2018	60.7	52.0	75.0	50.9	43.8	64.3	70.8	61.4	84.5	
2019	60.9	52.1	75.0	51.6	44.1	65.0	70.7	61.2	83.9	
2020	60.1	51.1	74.3	50.7	43.2	64.0	69.8	60.1	83.3	
2021	60.5	51.2	74.8	51.2	43.3	65.0	70.0	60.1	83.5	
2022	62.1	52.5	76.3	52.9	44.6	66.9	71.5	61.5	84.7	
2023	62.6	52.7	76.6	54.1	45.3	68.2	71.3	61.1	84.2	
증감	'22년 대비	0.5	0.2	0.3	1.2	0.7	1.3	-0.2	-0.4	-0.5
	'13년 대비	2.8	0.8	1.0	5.2	2.1	5.9	0.2	-0.9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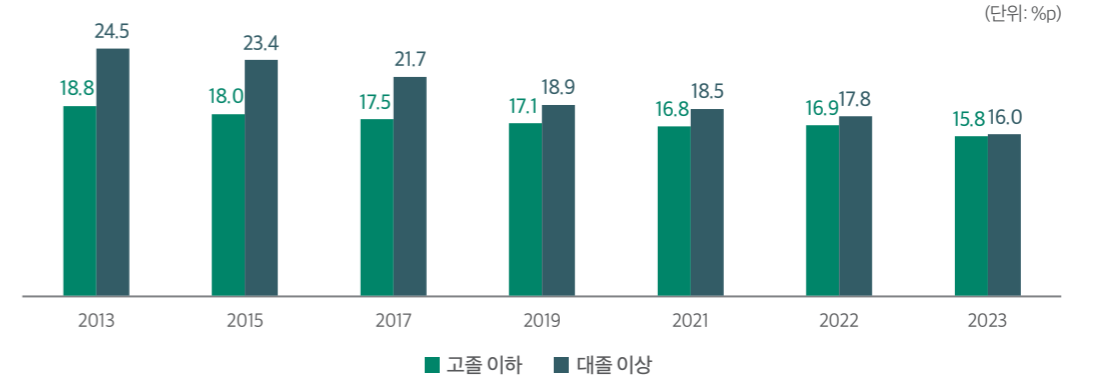
주: 1) 15세 이상
2)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5 고학력(전문대졸 이상) 남녀 고용률



주: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그림 II-6 교육정도별 남녀 고용률 격차



주: 남녀 고용률 격차=남성 고용률-여성 고용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실업자 변화

○ 2023년 여성 실업자는 353천 명, 실업률은 2.8%로 전년 대비 32천 명, 0.3%p 감소

- 여성 실업자는 2013년 308천 명에서 2020년 484천 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하여 2023년 353천 명으로 나타남
- 2023년 여성 실업률은 2.8%로 전년 대비 0.3%p 하락
- 여성 실업률은 2019년까지 남성보다 낮거나 같았으나 2020년 이후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2023년 남성(2.6%)보다 0.2%p 더 높음

표 II-4 성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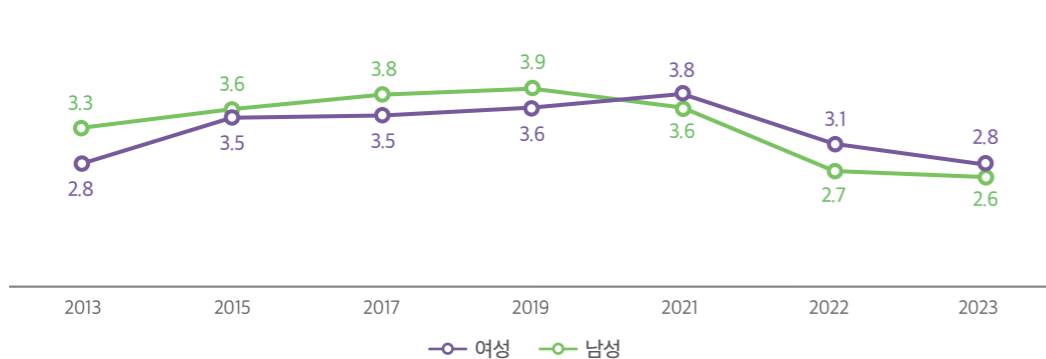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p)

연도	실업자			실업률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13	808	308	500	3.1	2.8	3.3	
2014	939	389	550	3.5	3.5	3.5	
2015	976	404	572	3.6	3.5	3.6	
2016	1,009	415	594	3.7	3.6	3.8	
2017	1,023	416	607	3.7	3.5	3.8	
2018	1,073	443	630	3.8	3.7	3.9	
2019	1,063	437	627	3.8	3.6	3.9	
2020	1,108	484	624	4.0	4.0	3.9	
2021	1,037	461	576	3.7	3.8	3.6	
2022	833	385	447	2.9	3.1	2.7	
2023	787	353	434	2.7	2.8	2.6	
증감	'22년 대비	-46	-32	-13	-0.2	-0.3	-0.1
	'13년 대비	-21	45	-66	-0.4	0	-0.7

주: 1) 15세 이상
2)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7 성별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25~29세 여성 실업자는 66천 명으로 전년 대비 6천 명 감소

- 2023년 여성 실업자는 60세 이상(71천 명) > 25~29세(66천 명) > 20~24세(41천 명) 순으로 높음
- 2013년 대비 여성 실업자는 60세 이상(55천명 증가)과 55~59세(12천 명 증가)에서 큰 폭으로 증가, 반면 20~24세는 동기간 33천 명 감소
- 여성 실업률은 20~24세가 5.4%로 가장 높고 25~29세 5.1%, 15~19세 4.7% 순으로 높으며, 2013년 대비 15~19세, 20~24세, 25~29세 연령층에서 낮아졌고(각각 -4.8%p, -3.6%p, -0.1%p) 이외 연령층에서는 상승하거나 변화 없음

표 II-5 성별·연령별 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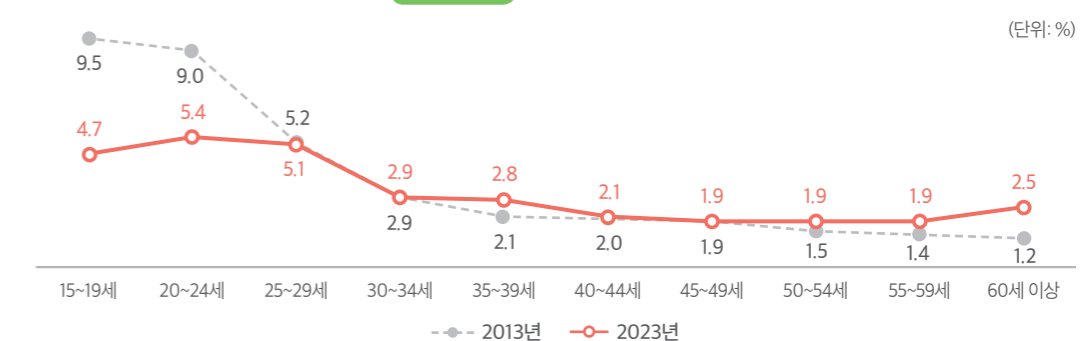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시점	소계	연령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전체	2013	808	26	126	172	113	65	75	61	58	51	61
	2022	833	12	97	164	87	62	66	63	55	59	169
	2023	787	9	74	159	82	61	59	62	57	59	164
	증감	'22년 대비	-46	-3	-23	-5	-5	-1	-7	-1	2	0
	'13년 대비	-21	-17	-52	-13	-31	-4	-16	1	-1	8	103
여성	2013	308	13	74	59	34	22	29	27	20	14	16
	2022	385	7	54	72	41	28	30	35	24	20	74
	2023	353	5	41	66	34	29	27	25	29	26	71
	증감	'22년 대비	-32	-2	-13	-6	-7	1	-3	-10	5	6
	'13년 대비	45	-8	-33	7	0	7	-2	-2	9	12	55
남성	2013	500	13	53	113	79	43	46	34	37	37	45
	2022	447	5	43	91	46	35	36	28	31	38	96
	2023	434	5	33	93	48	32	32	37	28	33	93
	증감	'22년 대비	-13	0	-10	2	2	-3	-4	9	-3	-5
	'13년 대비	-66	-8	-20	-20	-31	-11	-14	3	-9	-4	48

주: 15세 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8 연령별 여성 실업률

(단위: %)



주: 1) 15세 이상
2)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다.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 2023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은 가사 56.3%(5,761천 명)로, 전년 대비 17천 명 감소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3년 10,228천 명으로 전년 대비 214천 명 감소
- 활동 상태별로 보면, 2023년 가사 56.3%(5,761천 명) > 통학 15.5%(1,589천 명) > 연로 10.4%(1,067천 명) > 육아 8.2%(840천 명) > 쉬었음 5.0%(514천 명) 순으로 높게 분포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육아가 144천 명 감소하여 전체 감소의 2/3를 차지했고 연로(49천 명 감소), 취업준비(37천 명 감소), 가사(17천 명 감소)에서 크게 감소
- 한편 2013년과 비교해 보면, 육아(636천 명 감소)의 감소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통학(456천 명 감소)에서 감소. 반면 연로(412천 명 증가), 쉬었음(246천 명 증가)에서 크게 증가

표 II-6 성별·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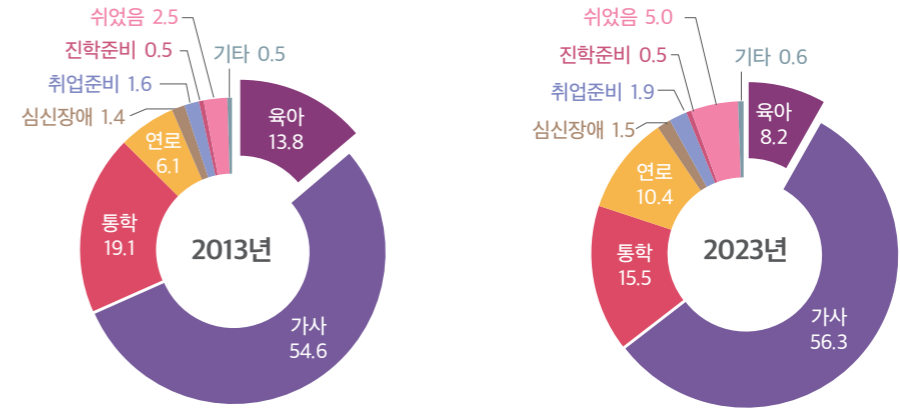
성별	활동상태별	2013	2015	2020	2022	2023	증감	
							'22년 대비	'13년 대비
전체	계	16,196	16,086	16,773	16,339	16,204	-135	8
	육아	1,483	1,442	1,188	996	856	-140	-627
	가사	5,984	5,815	5,966	5,964	5,963	-1	-21
	통학	4,301	4,082	3,616	3,317	3,328	11	-973
	연로	1,811	2,013	2,257	2,509	2,477	-32	666
	심신장애	403	437	442	445	474	29	71
	취업준비	379	371	543	553	488	-65	109
	진학준비	134	123	121	91	100	9	-34
	군입대대기	59	74	63	48	42	0	-17
	쉬었음	1,544	1,594	2,374	2,277	2,351	74	807
	기타 등	98	136	203	140	126	-14	28
여성	계	10,713	10,592	10,743	10,442	10,228	-214	-485
	육아	1,476	1,434	1,180	984	840	-144	-636
	가사	5,846	5,674	5,812	5,778	5,761	-17	-85
	통학	2,045	1,954	1,772	1,598	1,589	-9	-456
	연로	655	797	946	1,116	1,067	-49	412
	심신장애	149	170	158	140	150	10	1
	취업준비	167	163	222	232	195	-37	28
	진학준비	55	50	58	41	53	12	-2
	군입대대기	0	-	-	0	-	-	-
	쉬었음	268	298	499	492	514	22	246
	기타 등	52	54	97	62	60	-2	8

성별	활동상태별	2013	2015	2020	2022	2023	증감	
							'22년 대비	'13년 대비
여성	계	5,483	5,494	6,030	5,897	5,976	79	493
	육아	6	8	9	12	16	4	10
	가사	138	141	154	187	203	16	65
	통학	2,256	2,129	1,844	1,719	1,739	20	-517
	연로	1,157	1,215	1,311	1,393	1,410	17	253
	심신장애	254	267	284	305	324	19	70
	취업준비	213	208	321	321	293	-28	80
남성	진학준비	79	73	63	50	47	-3	-32
	군입대대기	59	74	63	48	42	-6	-17
	쉬었음	1,277	1,297	1,876	1,785	1,837	52	560
	기타 등	45	82	105	78	66	-12	21

주: 1) 15세 이상
 2)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3) 쉬었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조기퇴직·명퇴 등으로 인해 쉬고 있는 사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9 활동상태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주: 1) 15세 이상
 2)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3) 쉬었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조기퇴직·명퇴 등으로 인해 쉬고 있는 사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30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316천 명으로 전년 대비 6천 명 증가

- 2023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0세 이상에서 2,655천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44.4%)
- 2013년과 비교하여 15~19세에서 가장 많은 493천 명이 감소했고 20대(20천 명 감소)에서 다음으로 크게 감소. 반면에, 60세 이상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동기간 892천 명 증가
-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13년 대비 60대 이상에서 12.2%p 상승, 15~19세에서 10.7%p 하락

표 II-7 성별·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성별	연령별	2013	2015	2020	2022	2023	증감	
							'22년 대비	'13년 대비
전체	계	16,196	16,086	16,773	16,339	16,204	-135	8
	15~19	3,023	2,850	2,275	2,054	2,086	32	-937
	20~29	2,364	2,277	2,503	2,245	2,163	-82	-201
	30~39	1,951	1,794	1,569	1,408	1,287	-121	-664
	40~49	1,725	1,655	1,724	1,642	1,582	-60	-143
	50~59	1,982	1,943	2,005	1,850	1,800	-50	-182
	60+	5,151	5,568	6,696	7,140	7,287	147	2,136
여성	계	5,483	5,494	6,030	5,897	5,976	79	493
	15~19	1,571	1,466	1,168	1,057	1,078	21	-493
	20~29	1,164	1,145	1,261	1,191	1,144	-47	-20
	30~39	277	248	333	310	316	6	39
	40~49	270	262	328	305	305	0	35
	50~59	440	443	513	476	478	2	38
	60+	1,763	1,931	2,428	2,557	2,655	98	892
남성	계	10,713	10,592	10,743	10,442	10,228	-214	-485
	15~19	1,452	1,384	1,106	997	1,008	11	-444
	20~29	1,200	1,133	1,243	1,053	1,019	-34	-181
	30~39	1,674	1,546	1,237	1,098	971	-127	-703
	40~49	1,456	1,393	1,396	1,337	1,277	-60	-179
	50~59	1,543	1,500	1,492	1,373	1,322	-51	-221
	60+	3,388	3,637	4,268	4,583	4,632	49	1,244

주: 15세 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취업자 특성

가. 산업별·직업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2023년 산업별 여성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8%(2,348천 명) > 도매 및 소매업 12.7%(1,584천 명) > 숙박 및 음식점업 11.1%(1,384천 명) 순으로 높게 분포

- 전년 대비 여성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19천 명 증가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51천 명 증가), 도매 및 소매업(39천 명 증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8천 명 증가), 정보통신업(24천 명 증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2천 명 증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2천 명 증가), 건설업(21천 명 증가)에서 20천 명 이상 증가했지만, 운수 및 창고업(15천 명 감소),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1천 명 감소), 교육서비스업(10천 명 감소)에서는 10천 명 이상 감소
- 2013년과 비교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080천 명 증가했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06천 명 증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89천 명 증가), 정보통신업(166천 명 증가)에서 크게 증가, 이에 비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3천 명 감소)과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3천 명 감소), 도매 및 소매업(87천 명 감소) 등에서 크게 감소

표 II-8 산업별·성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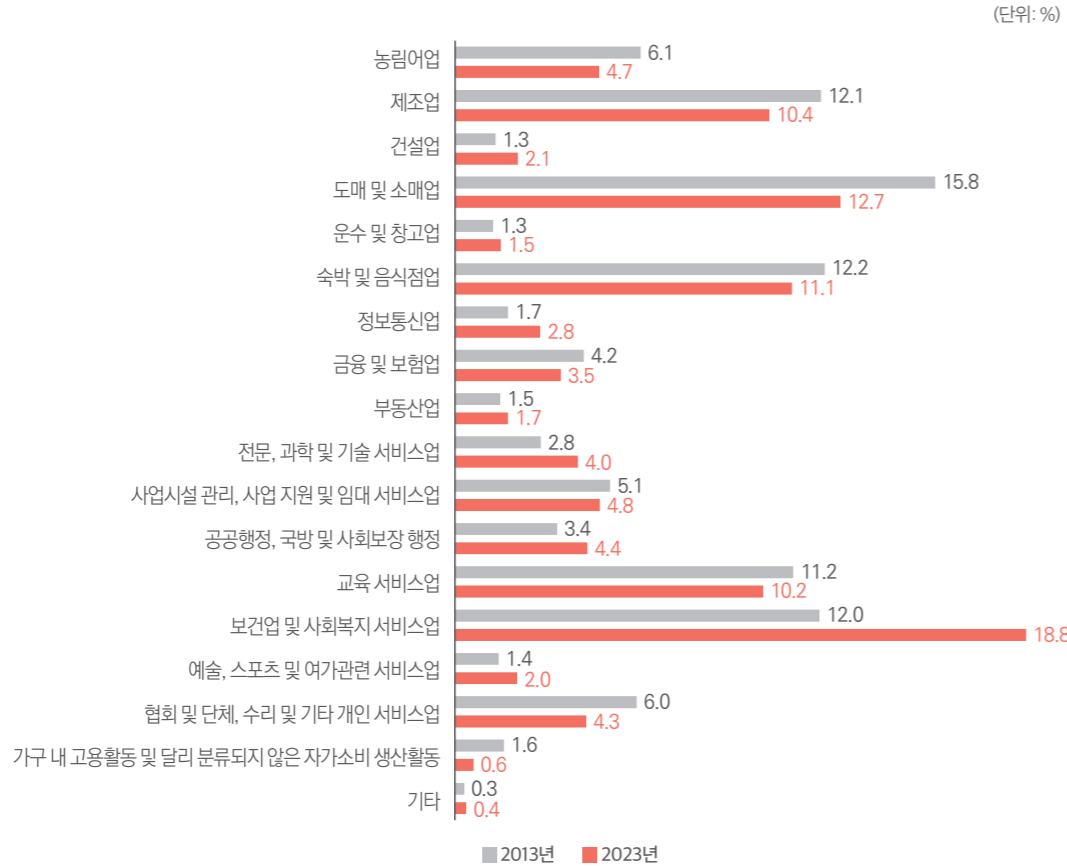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산업	여성					남성				
	2013	2021	2023	증감		2013	2021	2023	증감	
				'22년 대비	'13년 대비				'22년 대비	'13년 대비
전체	10,554	12,161	12,464	303	1,910	14,745	15,928	15,952	24	1,207
농업 임업 및 어업	645	594	592	-2	-53	868	932	921	-11	53
광업	2	1	1	0	-1	14	8	6	-2	-8
제조업	1,273	1,290	1,291	1	18	3,033	3,214	3,170	-44	13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1	16	17	1	6	63	64	72	8	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7	27	23	-4	6	76	128	123	-5	47
건설업	140	236	257	21	117	1,640	1,887	1,856	-31	216
도매 및 소매업	1,671	1,545	1,584	39	-87	2,023	1,768	1,692	-76	-331
운수 및 창고업	132	202	187	-15	55	1,296	1,453	1,458	5	162
숙박 및 음식점업	1,286	1,333	1,384	51	98	698	849	913	64	215
정보통신업	183	325	349	24	166	514	656	688	32	174
금융 및 보험업	447	429	434	5	-13	430	345	348	3	-82
부동산업	156	213	216	3	60	281	339	318	-21	37

산업	여성					남성				
	2013	2021	2023	증감		2013	2021	2023	증감	
				'22년 대비	'13년 대비				'22년 대비	'13년 대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8	482	504	22	206	731	806	854	48	12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39	606	595	-11	56	689	817	836	19	14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55	516	544	28	189	622	697	695	-2	73
교육 서비스업	1,177	1,276	1,266	-10	89	590	626	630	4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68	2,229	2,348	119	1,080	298	486	510	24	2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1	233	255	22	104	243	249	257	8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32	528	539	11	-93	629	591	591	0	-3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69	78	76	-2	-93	4	2	1	-1	-3
국제 및 외국기관	2	2	4	2	2	5	14	14	0	9

주: 1) 15세 이상
2) 제10차 표준산업분류로 2013년부터 시계열이 제공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10 산업별 여성 취업자 비중



주: 1) 15세 이상
2) 기타는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3) 제10차표준산업분류로 2013년부터 시계열이 제공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여성 취업자의 직업분포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1%(3,010천 명), 사무 종사자 20.7%(2,575천 명), 서비스 종사자 18.3%(2,278천 명)가 여성 취업자의 63.1% 차지

- 전년 대비 여성 취업자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157천 명 증가)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10천 명 증가)에서 100천 명 이상 증가했고 단순노무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에서 각각 32천 명과 27천 명 감소
- 2013년과 비교하면, 여성 취업자의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732천 명 증가), 사무 종사자(596천 명 증가), 서비스 종사자(538천 명 증가), 단순노무 종사자(226천 명 증가)에서 200천 명 이상 증가하였고, 판매 종사자(122천 명 감소),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38천 명 감소),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37천 명 감소),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7천 명 감소) 등에서 감소
- 이에 2013년 대비 여성 취업자의 직업 비중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5%p 상승), 사무 종사자(1.9%p 상승), 서비스 종사자(1.8%p 상승), 관리자(0.2%p 상승) 등에서 상승했고 판매 종사자(3.2%p 하락)를 포함한 이외 직종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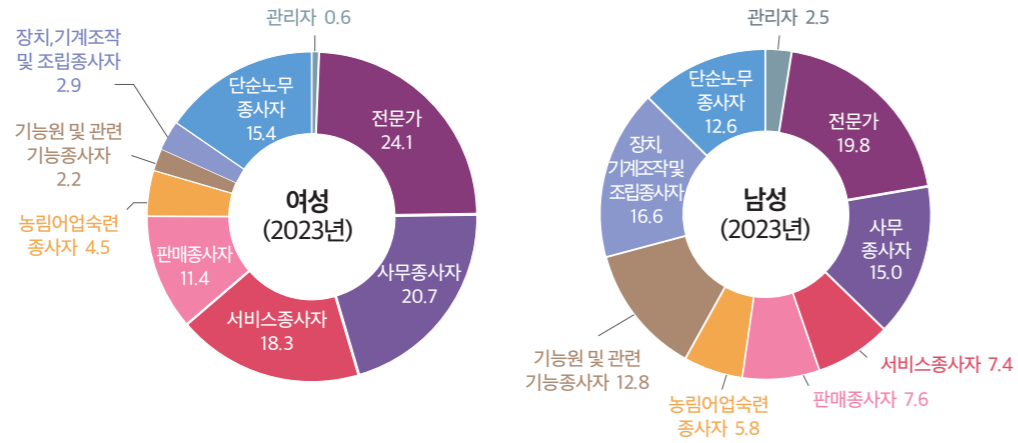
표 II-9 직업별·성별 취업자

산업	여성					남성				
	2013	2021	2023	증감		2013	2021	2023	증감	
				'22년 대비	'13년 대비				'22년 대비	'13년 대비
전체	10,554	12,161	12,464	303	1,910	14,745	15,928	15,952	24	1,207
관리자	47	64	78	14	31	362	373	398	25	3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78	2,900	3,010	110	732	2,690	2,985	3,158	173	468
사무 종사자	1,979	2,511	2,575	64	596	2,292	2,343	2,390	47	98
서비스 종사자	1,740	2,121	2,278	157	538	905	1,148	1,187	39	282
판매 종사자	1,537	1,407	1,415	8	-122	1,537	1,274	1,206	-68	-33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74	550	557	7	-17	846	913	924	11	78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311	300	273	-27	-38	1,943	2,103	2,038	-65	9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94	355	357	2	-37	2,644	2,698	2,647	-51	3
단순노무 종사자	1,696	1,954	1,922	-32	226	1,526	2,092	2,005	-87	479

주: 1) 15세 이상
2) 제7차 표준직업분류로 2013년부터 시계열 자료가 제공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11 성별 취업자 직업분포

(단위: %)



주: 15세 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853천 명으로 2013년 대비 2,566천 명 증가. 반면에 동기간 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369천 명과 291천 명 감소

- 2023년 여성 임금근로자는 9,976천 명,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2,488천 명으로,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80.0%로 나타남
- 여성 취업자를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2023년 상용근로자가 6,853천 명으로 55.0%를 차지하며, 임시근로자(2,803천 명, 22.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317천 명, 10.6%), 무급가족종사자(777천 명, 6.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394천 명, 3.2%), 일용근로자(320천 명, 2.6%) 순으로 많음
- 전년 대비 상용근로자가 330천 명 증가하여 여성 취업자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45천 명 증가)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7천 명 증가)에서도 여성 취업자가 증가함. 반면에 전년 대비 임시근로자(45천 명 감소), 무급가족종사자(30천 명 감소), 일용근로자(3천 명 감소) 등 상대적으로 노동 안정성과 환경이 좋지 못한 취업자 규모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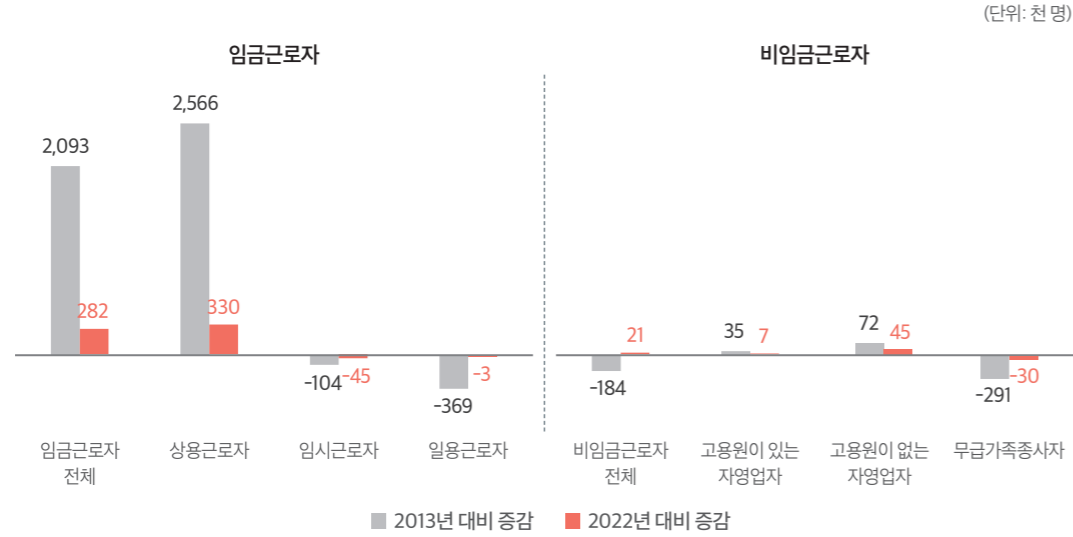
표 II-10 성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연도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소계	상용	임시	일용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2013	10,554	7,883	4,287	2,907	689	2,672	359	1,245	1,068	
2014	10,840	8,173	4,555	2,967	651	2,667	365	1,238	1,064	
2015	11,022	8,420	4,747	3,037	636	2,602	384	1,214	1,004	
2016	11,168	8,622	4,980	3,073	570	2,546	385	1,186	975	
2017	11,356	8,763	5,196	3,003	565	2,594	412	1,225	957	
2018	11,450	8,858	5,425	2,916	517	2,592	424	1,207	961	
2019	11,660	9,085	5,680	2,901	504	2,575	405	1,236	935	
2020	11,523	9,028	5,855	2,730	443	2,495	364	1,247	884	
2021	11,725	9,312	6,092	2,856	363	2,413	342	1,222	850	
2022	12,161	9,694	6,523	2,848	323	2,467	387	1,272	807	
2023	12,464	9,976	6,853	2,803	320	2,488	394	1,317	777	
증감	'22년 대비	303	282	330	-45	-3	21	7	45	-30
	'13년 대비	1,910	2,093	2,566	-104	-369	-184	35	72	-291
남성	2013	14,745	10,482	7,560	2,012	911	4,263	1,174	2,924	164
	2014	15,057	10,785	7,765	2,102	919	4,272	1,216	2,901	156
	2015	15,156	10,982	7,969	2,077	936	4,174	1,225	2,799	150
	2016	15,241	11,047	8,082	2,052	914	4,194	1,199	2,844	151
	2017	15,368	11,171	8,232	1,989	950	4,197	1,196	2,849	152
	2018	15,372	11,226	8,347	1,936	943	4,146	1,227	2,780	139
	2019	15,463	11,355	8,536	1,894	925	4,108	1,132	2,833	143
	2020	15,381	11,304	8,667	1,753	884	4,077	1,009	2,911	157
	2021	15,548	11,441	8,795	1,778	868	4,107	965	2,984	157
	2022	15,928	11,808	9,170	1,829	809	4,121	978	2,994	148
	2023	15,952	11,852	9,317	1,814	721	4,100	1,026	2,952	122
증감	'22년 대비	24	44	147	-15	-88	-21	48	-42	-26
	'13년 대비	1,207	1,370	1,757	-198	-190	-163	-148	28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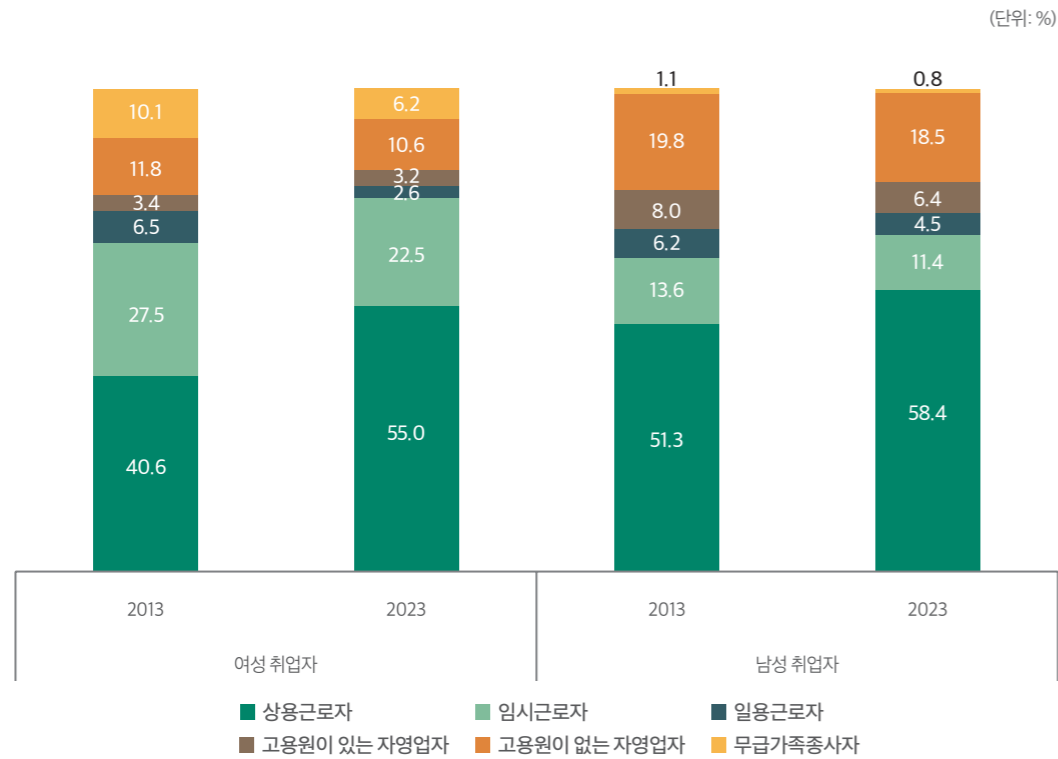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12 2023년 종사상지위별 여성 취업자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13 성별 취업자 종사상지위 변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 2023년 여성 취업자의 35.4%는 1~4인 사업장에서 근로

- 2023년 종사자 규모별 여성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1~4인이 4,416천 명(35.4%)으로 가장 많고 10~29인(2,322천 명, 18.6%), 30~99인(1,918천 명, 15.4%) 순으로 많으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여성 취업자는 전체의 8.6%인 1,078천 명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1~4인과 300인 이상에서 각각 108천 명과 56천 명 증가하는 등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여성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2013년과 비교하여 보면 1~4인 사업장은 69천 명 감소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취업자는 모두 증가

표 II-11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시점	소계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2013	25,299	9,928	3,610	4,189	3,614	1,777	2,182	
	2022	28,089	9,898	4,027	4,938	4,101	2,127	2,998	
	2023	28,416	9,962	4,027	5,052	4,147	2,142	3,087	
	증감	'22년 대비	327	63	-1	114	46	14	90
		'13년 대비	3,117	33	417	863	533	365	906
	여성	2013	10,554	4,484	1,602	1,753	1,571	550	593
2022		12,161	4,308	1,871	2,274	1,881	806	1,022	
2023		12,464	4,416	1,895	2,322	1,918	836	1,078	
증감		'22년 대비	303	108	25	48	37	30	56
		'13년 대비	1,910	-69	293	569	347	286	484
남성		2013	14,745	5,444	2,007	2,436	2,043	1,227	1,589
	2022	15,928	5,590	2,157	2,664	2,220	1,322	1,976	
	2023	15,952	5,546	2,132	2,730	2,230	1,306	2,010	
	증감	'22년 대비	24	-44	-25	66	10	-16	33
		'13년 대비	1,207	102	124	294	187	79	421

주: 15세 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2013년과 비교하여 여성 취업자는 5~299인 규모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495천 명 증가), 1~4인 규모에서 판매종사자가 가장 많이 감소(118천 명 감소)

- 2023년 종사자 규모별 여성 취업자의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1~4인 사업장은 서비스 종사자(25.5%)와 판매종사자(19.3%), 5~299인 사업장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7.4%)와 사무 종사자(24.9%),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사무 종사자(4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8.4%)가 높은 비중 차지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는 전년 대비 모든 규모별 사업장에서 여성 취업자가 증가, 반면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는 모든 규모별 사업장에서 여성 취업자가 감소. 전년 대비 규모별 가장 많이 증가한 직업은 5~299인 사업체의 서비스 종사자(95천 명 증가)이고, 가장 많이 감소한 직업은 5~299인 사업체의 단순노무 종사자(48천 명 감소)임
- 2013년 대비 규모에 따른 직업 변화를 보면, 5~299인 사업체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95천 명 증가), 서비스 종사자(402천 명 증가), 사무 종사자(335천 명 증가) 등에서 300천 명 이상의 큰 증가를 보이며, 1~4인 사업체의 판매 종사자(118천 명 감소)와 단순노무 종사자(107천 명 감소) 등에서 100천 명 이상 감소함

표 II-12 직업별·종사자 규모별 여성 취업자

(단위: 천 명, %, %p)

직업	2013			2022			2023			증감					
	1~4인	5~299인	300인 이상	1~4인	5~299인	300인 이상	1~4인	5~299인	300인 이상	'22년 대비			'13년 대비		
										1~4인	5~299인	300인 이상	1~4인	5~299인	300인 이상
전체	4,484 (100.0)	5,477 (100.0)	593 (100.0)	4,308 (100.0)	6,831 (100.0)	1,022 (100.0)	4,416 (100.0)	6,971 (100.0)	1,078 (100.0)	108	140	56	-69	1,494	484
관리자	2 (0.1)	42 (0.8)	2 (0.3)	2 (0.0)	55 (0.8)	7 (0.7)	1 (0.0)	67 (1.0)	10 (0.9)	-1 (0.0)	12 (0.2)	3 (0.2)	-1 (0.0)	25 (0.2)	8 (0.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52 (14.5)	1,414 (25.8)	212 (35.7)	668 (15.5)	1,864 (27.3)	369 (36.1)	686 (15.5)	1,909 (27.4)	414 (38.4)	19 (0.0)	46 (0.1)	46 (2.3)	35 (1.0)	495 (1.6)	202 (2.7)
사무 종사자	329 (7.3)	1,399 (25.5)	252 (42.4)	376 (8.7)	1,706 (25.0)	429 (42.0)	395 (8.9)	1,733 (24.9)	447 (41.4)	18 (0.2)	28 (-0.1)	18 (-0.6)	66 (1.6)	335 (-0.7)	195 (-1.0)
서비스 종사자	1,009 (22.5)	702 (12.8)	29 (4.9)	1,070 (24.8)	1,008 (14.8)	42 (4.1)	1,126 (25.5)	1,104 (15.8)	49 (4.5)	55 (0.6)	95 (1.1)	6 (0.4)	116 (3.0)	402 (3.0)	20 (-0.4)
판매 종사자	969 (21.6)	554 (10.1)	14 (2.3)	845 (19.6)	529 (7.7)	33 (3.3)	852 (19.3)	526 (7.5)	37 (3.5)	7 (-0.3)	-3 (-0.2)	4 (0.2)	-118 (-2.3)	-28 (-2.6)	24 (1.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60 (12.5)	14 (0.3)	0 (0.0)	539 (12.5)	10 (0.1)	1 (0.1)	544 (12.3)	12 (0.2)	1 (0.1)	5 (-0.2)	2 (0.0)	0 (0.0)	-15 (-0.2)	-2 (-0.1)	1 (0.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60 (3.6)	148 (2.7)	4 (0.6)	130 (3.0)	163 (2.4)	7 (0.7)	122 (2.8)	149 (2.1)	2 (0.2)	-8 (-0.3)	-14 (-0.2)	-5 (-0.5)	-37 (-0.8)	1 (-0.6)	-2 (-0.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5 (1.2)	287 (5.2)	52 (8.7)	59 (1.4)	238 (3.5)	59 (5.8)	47 (1.1)	260 (3.7)	50 (4.6)	-11 (-0.3)	22 (0.2)	-9 (-1.1)	-7 (-0.1)	-28 (-1.5)	-2 (-0.4)
단순노무 종사자	749 (16.7)	917 (16.7)	30 (5.0)	620 (14.4)	1,260 (18.4)	75 (7.3)	642 (14.5)	1,212 (17.4)	69 (6.4)	23 (0.2)	-48 (-1.1)	-6 (-0.9)	-107 (-2.2)	295 (0.6)	39 (1.3)

주: 1) 15세 이상
 2) 제7차 표준직업분류로 2013년부터 시계열이 제공됨
 3) 관리자: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3.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 현황

가. 경력단절 여성

○ 2023년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1,349천 명으로 전년 대비 3.4%(48천 명) 감소

- 가족 돌봄이 경력단절 사유로 추가된 2014년의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164천 명이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6년 1,924천 명, 2018년 1,847천 명, 2020년 1,506천 명, 2023년 1,349천 명으로 감소 추세
-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별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40대가 590천 명으로 가장 많으며, 30대가 544천 명, 50~54세 150천 명, 15~29세 64천 명 순으로 많음
- 경력단절 여성의 사유를 보면, 2023년 육아가 567천 명으로 가장 많고 결혼 353천 명, 임신·출산 310천 명 순으로 많음
- 전년 대비 경력단절 여성은 48천 명 감소했으며, 사유별로 보면 육아가 30천 명, 결혼이 15천 명, 임신·출산 8천 명, 가족돌봄 6천 명 감소했고 자녀교육의 사유는 10천 명 증가
- 2014년과 비교하여 보면, 경력단절 여성은 815천 명 감소했으며, 결혼 사유가 481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임신·출산(130천 명 감소)과 가족 돌봄(106천 명 감소) 등에서 많이 감소

표 II-13 사유별·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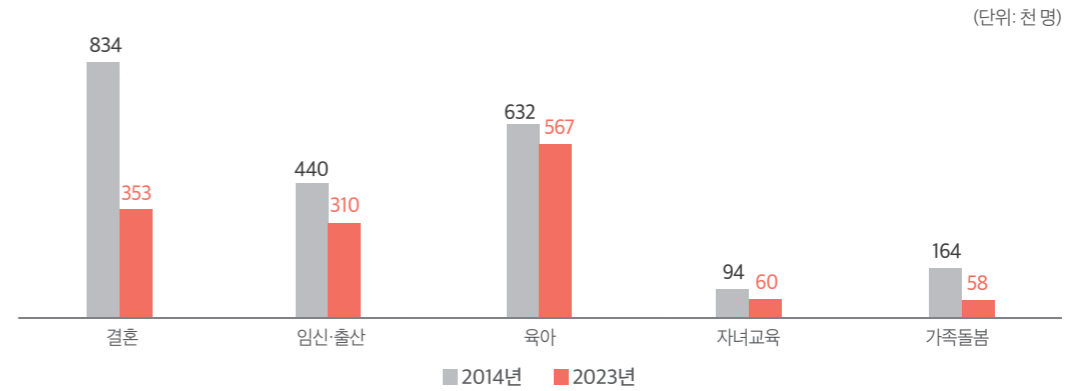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사유별	연령대별	2014	2016	2018	2020	2022	2023	증감	
								'22년 대비	'14년 대비
전체	계	2,164	1,924	1,847	1,506	1,397	1,349	-48	-815
	15~29세	190	161	139	97	57	64	7	-126
	30~39세	1,120	1,014	886	695	600	544	-56	-576
	40~49세	657	603	660	580	588	590	2	-67
	50~54세	197	146	161	134	152	150	-2	-47
결혼	계	834	668	634	414	368	353	-15	-481
	15~29세	76	61	47	27	18	19	1	-57
	30~39세	394	314	271	165	144	127	-17	-267
	40~49세	279	226	241	173	156	154	-2	-125
	50~54세	85	66	76	49	50	54	4	-31
임신·출산	계	440	505	445	321	318	310	-8	-130
	15~29세	60	60	50	32	16	23	7	-37
	30~39세	279	311	244	167	158	149	-9	-130
	40~49세	88	118	133	108	122	120	-2	32
	50~54세	14	16	17	15	22	18	-4	4

사유별	연령대별	2014	2016	2018	2020	2022	2023	증감	
								'22년 대비	'14년 대비
육아	계	632	578	619	640	597	567	-30	-65
	15~29세	50	39	40	36	23	21	-2	-29
	30~39세	394	352	341	337	284	247	-37	-147
	40~49세	162	164	208	231	248	253	5	91
	50~54세	26	23	30	36	43	46	3	20
자녀교육	계	94	81	71	62	50	60	10	-34
	15~29세	1	1	1	1	-	0	-	-1
	30~39세	32	27	21	18	9	16	7	-16
	40~49세	51	46	42	37	33	34	1	-17
	50~54세	10	6	7	6	8	10	2	0
가족돌봄	계	164	93	78	69	64	58	-6	-106
	15~29세	3	1	1	1	0	1	1	-2
	30~39세	21	10	9	8	5	6	1	-15
	40~49세	78	48	38	32	30	29	-1	-49
	50~54세	62	34	31	28	29	23	-6	-39

주: 2014년부터 경력단절여성 범위에 '가족돌봄' 사유가 추가되었음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II-16 사유별 경력단절 여성 규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나. 고용보험 가입 현황

○ 2023년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는 6,718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8천 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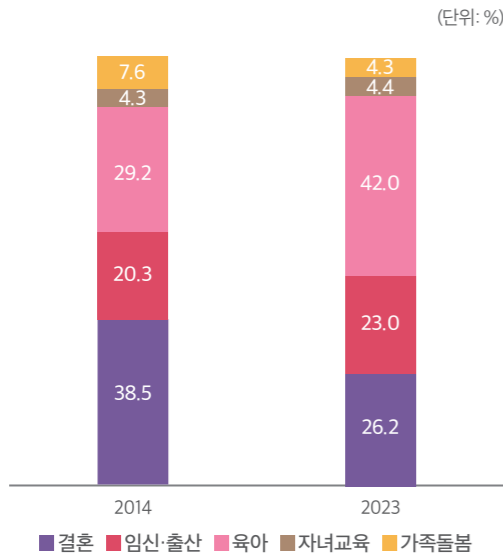
-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3년(4,600천 명, 39.7%)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현재 6,718천 명, 44.2%로 상승
- 2023년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3년 대비 2,351천 명 증가하였으며, 여성 비율 또한 4.5%p 상승

표 II-14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연도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비율	
					2013
2014	11,930,602	4,815,795	7,114,807	40.4	
2015	12,363,063	5,064,769	7,298,294	41.0	
2016	12,655,202	5,244,088	7,411,114	41.4	
2017	12,958,825	5,431,205	7,527,620	41.9	
2018	13,432,497	5,717,676	7,714,821	42.6	
2019	13,864,138	5,989,964	7,874,174	43.2	
2020	14,111,690	6,149,543	7,962,147	43.6	
2021	14,550,033	6,392,404	8,157,629	43.9	
2022	14,898,502	6,580,091	8,318,411	44.2	
2023	15,199,534	6,718,455	8,481,079	44.2	
증감	'22년 대비	301,032	138,364	162,668	0.0
	'13년 대비	4,047,180	2,350,801	1,696,379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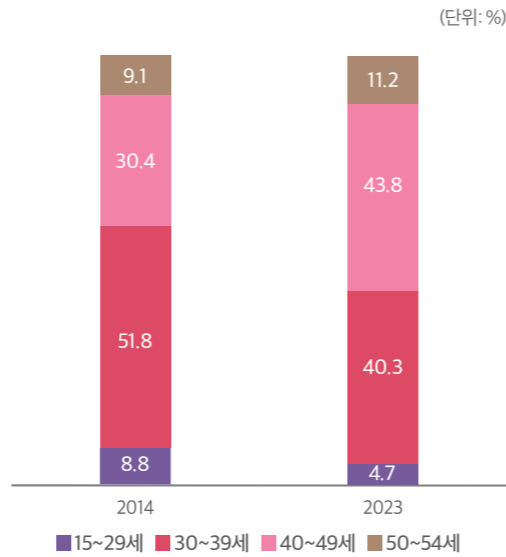
주: 여성비율은 여성고용보험가입자(상용근로자+자영업자)/전체고용보험가입자(상용근로자+자영업자)×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비정형통계 분석)

그림 II-14 사유별 경력단절 여성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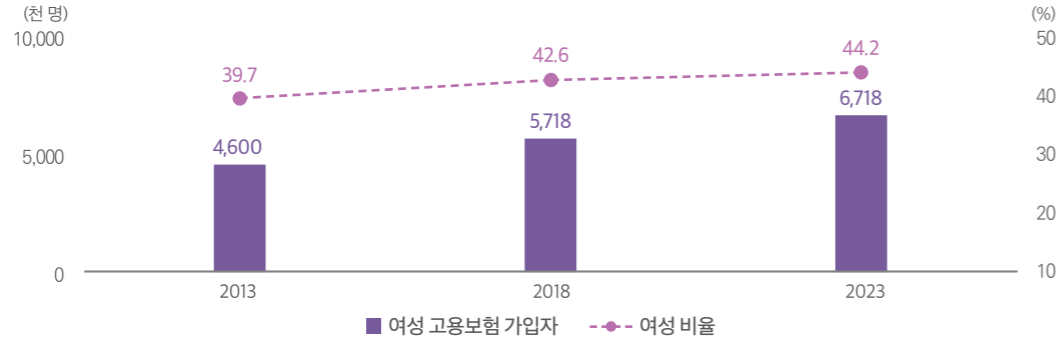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II-15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비율 변화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II-17 고용보험 여성 가입자 및 비율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비정형통계 분석)

다. 구인·구직 여성

○ 2022년 여성의 신규 구직 건수는 2,701,794건이며, 워크넷 구직을 통해 취업한 건수는 998,260건

- 워크넷을 통해서 나타난 여성의 신규 구직 건수는 2012년 1,717,819건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2,701,794건으로 2012년 대비 983,975건 증가
- 여성 취업 건수는 2012년 599,542건, 2017년 1,323,194건, 2020년 940,331건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은 998,260건으로 전년 대비 87,985건 감소
- 하지만 워크넷을 통해 취업한 건수는 2012년 이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으며, 2022년 기준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362,998건 더 많음

표 II-15 성별 구인·구직 및 취업 건수

연도	신규구인인원	신규 구직 건수				취업 건수			
		전체	구인배수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2	2,307,710	3,381,325	0.68	1,717,819	1,663,506	1,195,422	599,542	595,880	
2013	2,551,322	3,912,110	0.65	2,108,334	1,803,776	1,515,739	835,596	680,143	
2014	2,509,740	4,144,371	0.61	2,286,704	1,857,667	1,740,735	1,021,577	719,158	
2015	2,620,695	4,405,024	0.59	2,454,460	1,950,564	1,937,107	1,150,632	786,475	
2016	2,794,405	4,513,114	0.62	2,535,914	1,977,200	2,060,660	1,241,332	819,328	
2017	2,852,664	4,803,017	0.59	2,721,979	2,081,038	2,152,661	1,323,194	829,467	
2018	2,436,823	4,009,506	0.61	2,237,867	1,771,638	1,832,804	1,120,403	712,401	
2019	2,128,728	4,058,258	0.52	2,262,043	1,796,215	1,609,642	983,990	625,652	
2020	2,045,112	4,551,020	0.45	2,533,089	2,017,931	1,556,597	940,331	616,266	
2021	2,829,040	5,138,533	0.55	2,903,845	2,234,688	1,802,365	1,086,245	716,120	
2022	3,317,302	4,684,080	0.71	2,701,794	1,982,286	1,633,522	998,260	635,262	
증감	'21년 대비	488,262	-454,453	0.16	-202,051	-252,402	-168,843	-87,985	-80,858
	'12년 대비	1,009,592	1,302,755	0.03	983,975	318,780	438,100	398,718	39,382

주: 1) 구인배수=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건수

2) 취업건수는 공공근로가 포함된 수치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통계연보」

4. 주요 국가전략기술분야 여성 인력 현황¹⁾

가. 성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인력 현황

○ 2022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은 18,535명으로 전년 대비 9,290명 감소

- 2022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은 전체의 11.7%, 산업기술 여성 인력 대비 7.7%를 차지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인력은 2012년 이래 점차 증가하여 2022년은 157,826명으로 25,235명 증가했는데,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은 2012년 23,639명에서 2016년 36,663명으로 증가했지만, 2022년 18,535명으로 감소
- 남성 인력은 2012년 대비 30,339명 증가했지만, 여성 인력은 5,104명 감소했고 여성 비율은 2012년 대비 6.1%p 하락
- 이 분야의 여성 인력 감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모두에서 동시에 나타남. 반도체 여성 인력은 2012년 18,898명에서 2021년 24,708명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15,495명으로 감소, 또한 디스플레이 여성 인력은 2012년 4,741명에서 2016년 18,856명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3,040명으로 감소

표 II-16 성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인력

(단위: 명, %, %p)

연도	계(반도체+디스플레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12	132,591 (9.1)	23,639 (13.6)	108,952 (8.5)	17.8	85,899	18,898	67,001	46,692	4,741	41,951	
2014	140,627 (9.0)	31,762 (15.6)	108,865 (8.1)	22.6	91,113	19,102	72,011	49,514	12,660	36,854	
2016	137,735 (8.5)	36,663 (17.4)	101,072 (7.2)	26.6	86,525	17,807	68,718	51,210	18,856	32,354	
2018	142,973 (8.6)	31,368 (13.9)	111,606 (7.8)	21.9	92,873	21,541	71,332	50,100	9,827	40,274	
2020	148,080 (8.9)	29,901 (13.0)	118,179 (8.3)	20.2	99,285	24,397	74,888	48,795	5,504	43,291	
2021	152,868 (9.1)	27,825 (11.8)	125,042 (8.6)	18.2	104,004	24,708	79,296	48,864	3,117	45,746	
증감	2022	157,826 (9.3)	18,535 (7.7)	139,291 (9.5)	11.7	109,014	15,495	93,519	48,812	3,040	45,772
	'21년 대비	4,958 (0.2)	-9,290 (-4.1)	14,249 (0.9)	-6.5	5,010	-9,213	14,223	-52	-77	26
	'12년 대비	25,235 (0.2)	-5,104 (-5.9)	30,339 (1.0)	-6.1	23,115	-3,403	26,518	2,120	-1,701	3,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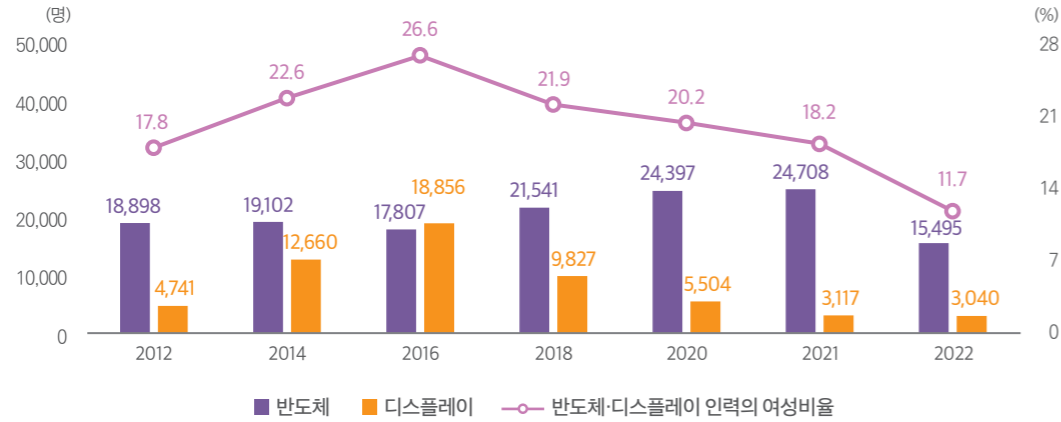
주: 1) ()는 전체 산업기술인력 대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인력 비율

2) 산업기술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정의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1) 주요 국가전략기술분야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024년 2월 1일 고시한 12개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 양자 등 성별 통계가 공표되지 않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를 의미함.

그림 II-18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나. 성별 원자력 분야 인력 현황

○ 2021년 원자력 분야 여성 인력은 3,926명으로 전년 대비 236명 증가

- 원자력 분야 여성 인력은 2013년 2,257명에서 2021년 3,926명으로 1,669명 증가했으며, 이에 여성 비율은 2013년 7.8%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21년 11.2%로 3.4%p 상승
- 전년 대비 원자력 분야 인력은 172명 감소하였으나 여성 인력은 236명 증가
- 2021년 원자력 분야 여성 인력은 기술직(1,514명) > 사무직(1,161명) > 기능직(835명) > 연구직(416명) 순으로 많이 분포
- 기능별 여성인력 변화를 보면, 기술직은 2013년 829명에서 2021년 1,514명으로 685명 증가, 사무직은 2013년 896명에서 2021년 1,161명으로 265명 증가, 연구직은 2013년 296명에서 2021년 416명으로 120명 증가, 기능직은 2013년 236명에서 2021년 835명으로 599명 증가함. 이에 기능별 해당 인력 중 여성 비율은 2013년 대비 기능직 11.8%p, 연구직 3.2%p, 기술직 2.5%p 상승. 단, 사무직은 2013년 대비 2.5%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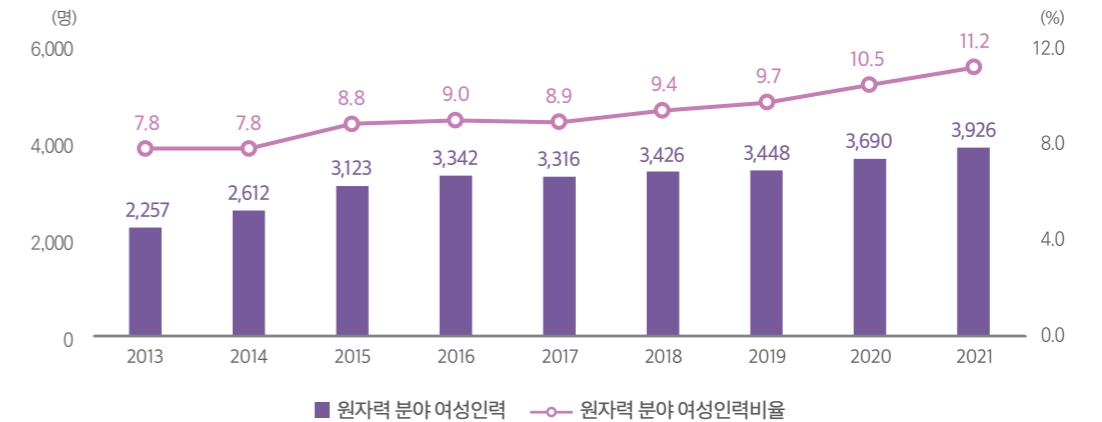
표 II-17 성별 원자력 분야 인력

(단위: 명, %, %p)

연도	원자력 분야 인력				원자력 분야 기능별 여성 인력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기술직	사무직	연구직	기능직	
2013	28,974	2,257	26,717	7.8	829(4.6)	896(22.9)	296(8.1)	236(6.9)	
2014	33,497	2,612	30,885	7.8	1,047(4.8)	1,018(20.8)	285(8.7)	262(7.6)	
2015	35,330	3,123	32,207	8.8	1,222(5.3)	1,145(21.9)	286(8.4)	470(12.9)	
2016	37,232	3,342	33,890	9.0	1,362(5.6)	1,127(23.6)	314(9.2)	539(11.6)	
2017	37,261	3,316	33,945	8.9	1,322(5.6)	1,120(25.0)	282(8.1)	592(10.6)	
2018	36,502	3,426	33,076	9.4	1,322(5.8)	1,050(24.9)	293(8.3)	761(12.9)	
2019	35,469	3,448	32,021	9.7	1,412(6.4)	973(23.0)	354(9.4)	709(13.1)	
2020	35,276	3,690	31,586	10.5	1,434(6.5)	1,046(24.4)	384(10.0)	826(16.1)	
2021	35,104	3,926	31,178	11.2	1,514(7.1)	1,161(20.4)	416(11.3)	835(18.7)	
증감	'20년 대비	-172	236	-408	0.7	80(0.6)	115(-4.0)	32(1.3)	9(2.6)
	'13년 대비	6,130	1,669	4,461	3.4	685(2.5)	265(-2.5)	120(3.2)	599(11.8)

주: ()는 원자력 분야 기능별 해당 인력 중 여성 비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그림 II-19 원자력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다. 성별 우주산업 분야 인력 현황

○ 2022년 우주항공 분야 여성 인력은 1,734명으로 전년 대비 164명 증가

- 우주산업 분야 여성 인력은 2015년 1,061명에서 2022년 1,734명으로 673명 증가, 이에 이 분야 여성 비율은 2015년 13.5%에서 2022년 17.1%로 상승
- 2022년 우주산업 분야 여성 인력의 학력 분포를 보면, 박사가 254명으로 박사 인력의 13.7%, 석사는 376명으로 석사 인력의 16.7%, 학사는 830명으로 학사 인력의 16.8%를 차지함
- 전년 대비 여성 인력은 박사 22명, 석사 83명, 학사 47명, 기타 12명의 인력이 증가하여 총 164명 증가하여 우주산업 분야에서의 여성 비율도 1.1%p 상승

표 II-18 성별 우주산업 분야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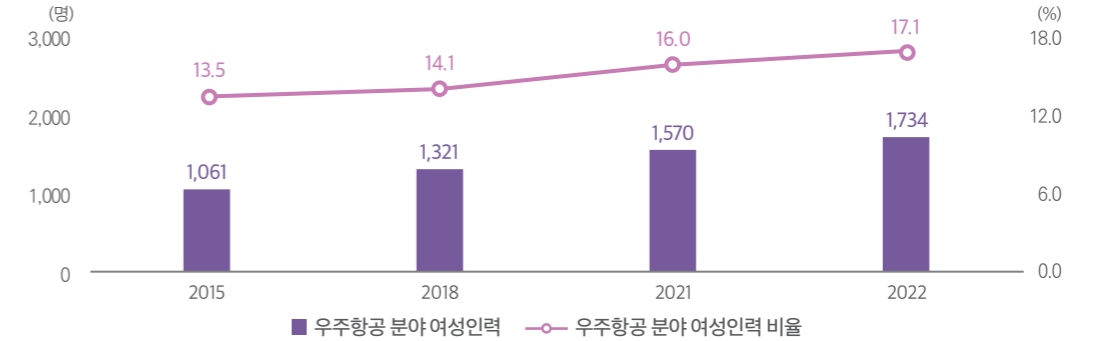
구분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체	2015	7,856	1,612	1,868	3,457	919	
	2018	9,372	1,899	2,191	4,250	1,032	
	2021	9,797	1,793	2,083	4,763	1,158	
	2022	10,125	1,853	2,249	4,951	1,072	
	증감	'21년 대비	328	60	166	188	-86
	'15년 대비	2,269	241	381	1,494	153	
여성	2015	1,061(13.5)	169(10.5)	224(12.0)	496(14.3)	172(18.7)	
	2018	1,321(14.1)	228(12.0)	337(15.4)	561(13.2)	195(18.9)	
	2021	1,570(16.0)	232(12.9)	293(14.1)	783(16.4)	262(22.6)	
	2022	1,734(17.1)	254(13.7)	376(16.7)	830(16.8)	274(25.6)	
	증감	'22년 대비	164	22	83	47	12
	'15년 대비	673	85	152	334	102	
남성	2015	6,795	1,443	1,644	2,961	747	
	2018	8,051	1,671	1,854	3,689	837	
	2021	8,227	1,561	1,790	3,980	896	
	2022	8,391	1,599	1,873	4,121	798	
	증감	'22년 대비	164	38	83	141	-98
	'15년 대비	1,596	156	229	1,160	51	

주: 1) 우주산업은 우주 개발 자체에 목적이 있는 우주 기기 제작 산업뿐 아니라 우주 개발을 통해 인류에게 돌아가는 부가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우주 개발을 위한 산업 및 우주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

2) ()는 우주산업 분야 인력 중 여성비율

자료: 우주항공청, 「우주산업실태조사」

그림 II-20 우주산업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자료: 우주항공청, 「우주산업실태조사」

라. 성별 수소 분야 인력 현황

○ 2022년 수소 분야 여성인력은 3,703명으로 전체 인력의 10.8% 차지

- 여성 인력을 업종별로 보면 수소활용이 2,982명으로 가장 많고, 수소관련서비스(293명), 수소유통(232명), 수소생산(196명) 순으로 많이 분포되며, 업종별 여성 비율 또한 동일한 순서대로 많아, 각각 13.7%, 9.4%, 6.9%, 3.2% 순임
- 기업규모별로 보면 여성 인력의 68.2%인 2,524명은 대기업에서, 16.3%인 604명은 중소기업에서, 8.8%인 325명은 중견기업에서, 그리고 나머지 6.7%인 249명은 기타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으로 보면 수소 분야 여성 인력의 73.4%가 100억 원 이상 기업체에서 근무

표 II-19 성별 수소 분야 인력(2022년)

구분	사업체	수소 산업 종사자 수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체	2,798	34,381	3,703	30,678	10.8
업종	수소생산	357	196	5,976	3.2
	수소유통	723	232	3,150	6.9
	수소활용	1,305	2,982	18,721	13.7
	수소관련서비스	413	293	2,832	9.4
기업규모	대기업	251	2,524	14,232	15.1
	중견기업	384	325	6,279	4.9
	중소기업	1,949	604	8,140	6.9
	기타	214	249	2,027	10.9
매출액	1억 원 미만	1,298	416	7,226	5.4
	1억 ~ 10억 원 미만	811	138	4,059	3.3
	10억 ~ 100억 원 미만	521	429	5,951	6.7
	100억 원 이상	169	2,719	13,443	16.8

주: 수소산업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실태조사」

마. 성별 인공지능 분야 인력 현황

○ 2023년 인공지능 분야 여성 인력은 8,001명으로 전년 대비 155명 증가

- 인공지능 분야 여성 인력은 2019년 2,231명에서 2023년 8,001명으로 약 3.6배 증가
- 이 분야의 여성 인력 비율은 2019년 10.3%에서 2022년 18.4%로 상승하였으나, 2023년 15.6%로 2.8%p 하락
- 인공지능 분야별로 여성 인력을 보면, 2023년 8,001명 중 6,303명은 AI SW 분야에, 1,632명은 AI 서비스 분야에, 66명은 AI HW 분야에서 근무함. 2019년 대비 분야별 인력의 증가를 보면, AI SW 분야는 5,281명, AI 서비스 분야는 430명, AI HW 분야는 59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2023년 여성 인력은 1,000인 이상(3,261명) > 100~1,000인 미만(2,303명) > 10~100인 미만(2,181명) > 10인 미만(257명) 순으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은 분포를 보임. 이에 비해 남성 인력은 10~100인 미만 사업체가 15,165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1,000인 미만(13,309명), 1,000인 이상(12,403명) 순으로 나타남

표 II-20 성별 인공지능 분야 인력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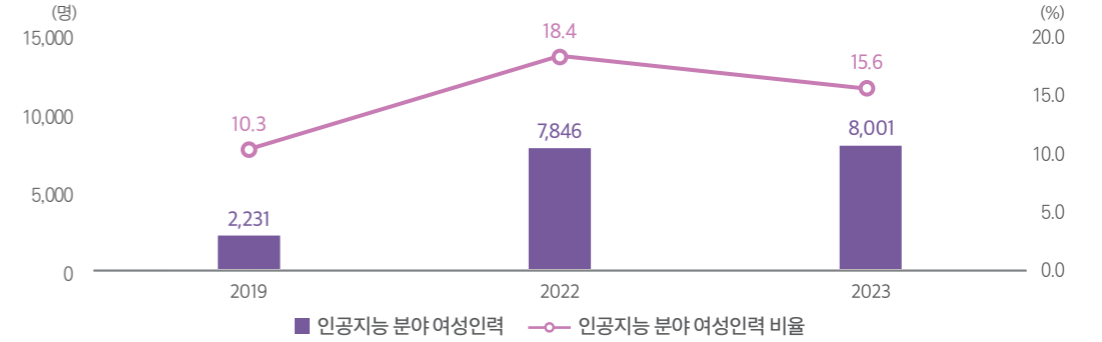
	전체	인공지능 분야			사업체 규모				
		AI SW	AI 서비스	AI HW	1,000인 이상	100~1,000인 미만	10~100인 미만	10인 미만	
전체	2019	21,584	9,302	12,110	171	7,508	5,492	6,976	1,608
	2022	42,551	31,001	11,030	520	13,845	12,908	13,394	2,404
	2023	51,425	37,021	13,707	697	15,664	15,612	17,346	2,802
	증감 '22년 대비	8,874	6,020	2,677	177	1,819	2,704	3,952	398
	'19년 대비	29,841	27,719	1,597	526	8,156	10,120	10,370	1,194
여성	2019	2,231	1,022	1,202	7	1,120	534	509	68
	2022	7,846	6,224	1,568	55	3,105	2,372	2,131	239
	2023	8,001	6,303	1,632	66	3,261	2,303	2,181	257
	증감 '22년 대비	155	79	64	11	156	-69	50	18
	'19년 대비	5,770	5,281	430	59	2,141	1,769	1,672	189
남성	2019	19,353	8,280	10,908	164	6,388	4,958	6,467	1,540
	2022	34,705	24,777	9,462	465	10,740	10,536	11,263	2,165
	2023	43,424	30,718	12,075	631	12,403	13,309	15,165	2,545
	증감 '22년 대비	8,719	5,941	2,613	166	1,663	2,773	3,902	380
	'19년 대비	24,071	22,438	1,167	467	6,015	8,351	8,698	1,005

주: 1) 인공지능산업은 인간의 지적 업무를 모방·대체하는 기반 기술의 총칭이라는 인공지능 개념과 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를 고려할 때, ① AI 생산 도구를 제공하거나, ② AI 활용 기반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③ AI 시스템 구축·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

2) 2023년은 잠정치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그림 II-21 인공지능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바. 성별 정보통신 분야 인력 현황

○ 2022년 정보통신 분야 여성 인력은 427,699명으로 전체 인력의 21.0% 차지

- 여성 인력을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방송기업(162,537명) >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 제작업(147,109명) > 정보통신방송인프라서비스업(66,100명) >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업(51,953명) 순으로 많이 분포하며, 각 업종의 여성 인력 비율은 각각 26.8%, 30.2%, 8.4%, 34.8%로 나타남
- 종사상 지위별로 여성 인력을 보면, 상용근로자가 346,614명으로 여성 인력의 81.0%를 차지함. 남성 인력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54.0%인 것과 비교하면 정보통신 분야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임

표 II-21 성별 정보통신 분야 인력(2022년)

(단위: 명, %)

구분	전체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임용종사자	기타종사자
전체	2,033,271	1,214,349	770,988	47,934
정보통신방송기업	607,581	581,623	13,361	12,597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업	149,179	138,082	8,757	2,340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 제작업	486,914	421,782	32,135	32,997
정보통신방송인프라서비스업	789,597	72,862	716,735	0
여성	427,699(21.0)	346,614	72,198	8,887
정보통신방송기업	162,537(26.8)	154,100	4,583	3,854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업	51,953(34.8)	47,200	3,989	764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 제작업	147,109(30.2)	133,575	9,265	4,269
정보통신방송인프라서비스업	66,100(8.4)	11,739	54,361	-

구분	전체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임용종사자	기타종사자
소계	1,605,572	867,735	698,790	39,047
정보통신방송기업	445,044	427,523	8,778	8,743
남성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업	97,226	90,882	4,768	1,576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 제작업	339,805	288,207	22,870	28,728
정보통신방송인프라서비스업	723,497	61,123	662,374	-

주: 1) ICT 산업 통계(정보통신 통계)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가 조사기반에서 등록기반으로 변경에 따라 2021년 이전과 2022년 이후의 시계열 변동이 있었음. 이에 2022년 이전 통계와 비교 시 주의 필요
2) ()는 종사자 중 여성비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

사. 성별 로봇 분야 인력 현황

○ 2022년 로봇 분야 여성 인력은 10,401명으로 전년 대비 1,514명 감소

- 로봇 분야 여성 인력은 2019년 7,617명에서 2022년 10,401명으로 2,784명 증가
- 이 분야의 여성 인력 비율은 2019년 15.0%에서 2021년 24.5%로 상승하였으나, 2022년 20.1%로 4.4%p 하락
- 사업체 규모별로 2022년 여성 인력은 50인 이상(4,627명) > 10~49인(3,498명) > 1~4인(1,208명) > 5~9인(1,068명) 순으로 많이 분포됨. 규모별 여성 인력은 2019년 대비 50인 이상에서 2,107명 증가하고 1~4인과 5~9인 사업체에서도 각각 823명과 376명 증가하였으나, 10~49인 사업체는 522명 감소

표 II-22 성별 로봇 분야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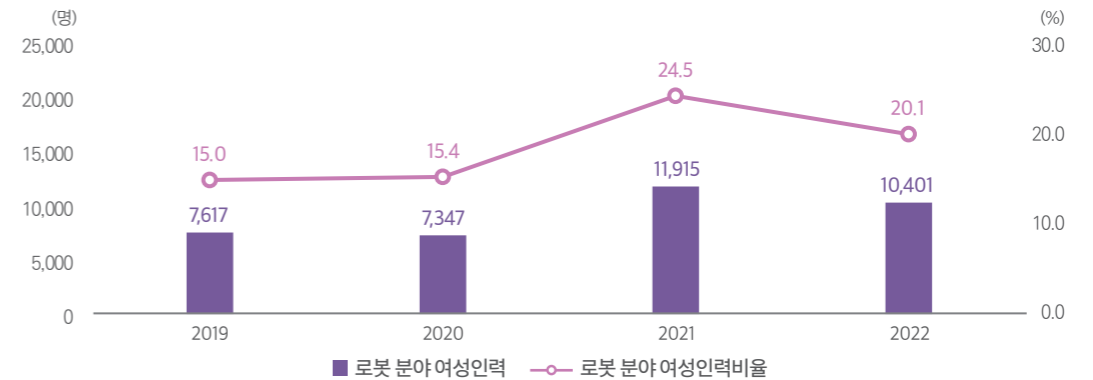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업체 규모					
		1~4인	5~9인	10~49인	50인 이상		
전체	2019	50,746	2,903	3,633	22,118	22,092	
	2020	47,849	3,373	5,582	14,981	23,913	
	2021	48,719	4,611	7,163	15,964	20,980	
	2022	51,656	4,657	5,200	18,408	23,391	
	증감	'21년 대비	2,937	46	-1,963	2,444	2,411
	'19년 대비	910	1,754	1,567	-3,710	1,299	
여성	2019	7,617(15.0)	385	692	4,020	2,520	
	2020	7,347(15.4)	582	1,026	2,143	3,596	
	2021	11,915(24.5)	1,419	1,774	3,754	4,968	
	2022	10,401(20.1)	1,208	1,068	3,498	4,627	
	증감	'21년 대비	-1,514	-211	-706	-256	-341
	'19년 대비	2,784	823	376	-522	2,107	

구분	전체	사업체 규모				
		1~4인	5~9인	10~49인	50인 이상	
남성	2019	43,129	2,518	2,940	18,098	19,573
	2020	40,502	2,790	4,557	12,838	20,316
	2021	36,804	3,193	5,389	12,210	16,012
	2022	41,255	3,449	4,132	14,910	18,764
증감	'21년 대비	4,451	256	-1,257	2,700	2,752
	'19년 대비	-1,874	931	1,192	-3,188	-809

주: 로봇 분야 업종은 제조업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로봇 시스템, 로봇 임베디드, 로봇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며, 2019년 로봇산업 특수분류 개정에 따름
자료: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산업실태조사」

그림 II-22 로봇 분야 여성 인력 및 비율 추이



자료: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산업실태조사」

03장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기업 활동

1.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2.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3. 여성 기업활동

03 장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기업 활동



1.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가. 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 현황

○ 2023년 정부지원 재직자 직업훈련의 여성 참여자 비율은 사업주훈련 44.3%, 근로자훈련 65.3%로 근로자훈련의 여성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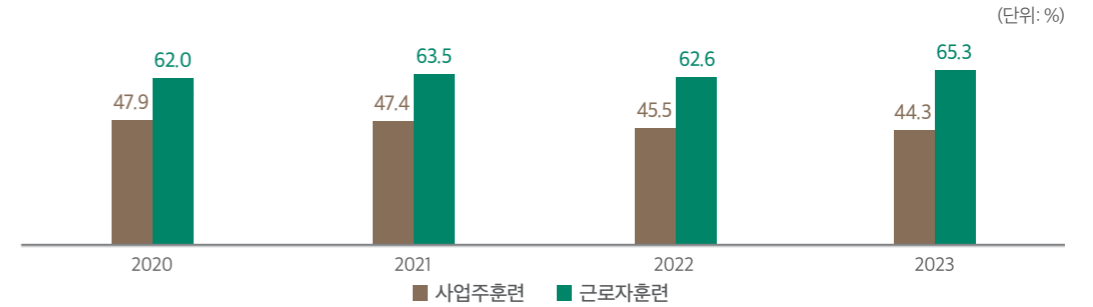
- 사업주훈련의 여성 참여자 수는 2020년 대비 222,599명 증가하여 남성의 458,417명 증가에 비해 낮은 반면, 근로자훈련의 여성 참여자 수는 2020년 대비 91,025명 증가하여 남성의 33,907명 증가에 비해 약 2.7배 많음

표 III-1 성별 정부지원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현황

구분		사업주훈련		근로자훈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20	전체	2,181,188	100.0	286,661	100.0
	여성	1,044,266	47.9	177,686	62.0
	남성	1,136,922	52.1	108,975	38.0
2021	전체	2,253,603	100.0	377,888	100.0
	여성	1,068,289	47.4	239,918	63.5
	남성	1,185,314	52.6	137,970	36.5
2022	전체	2,985,265	100.0	353,100	100.0
	여성	1,358,762	45.5	220,869	62.6
	남성	1,626,503	54.5	132,231	37.4
2023	전체	2,862,204	100.0	411,593	100.0
	여성	1,266,865	44.3	268,711	65.3
	남성	1,595,339	55.7	142,882	34.7

주: 사업주훈련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유급휴가 포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일학습병행 포함이며, 근로자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재직자)임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그림 III-1 정부지원 재직자 직업훈련 여성참여 비율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 2023년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 수는 총 663,348명이며, 여성의 훈련 참여 비중이 69.2%로 남성보다 약 2.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전체 훈련 참여자 수는 2020년 대비 231,896명 증가하였으며 증가분 중 여성이 78.0%를 차지하고, 여성 참여 비율은 4.7%p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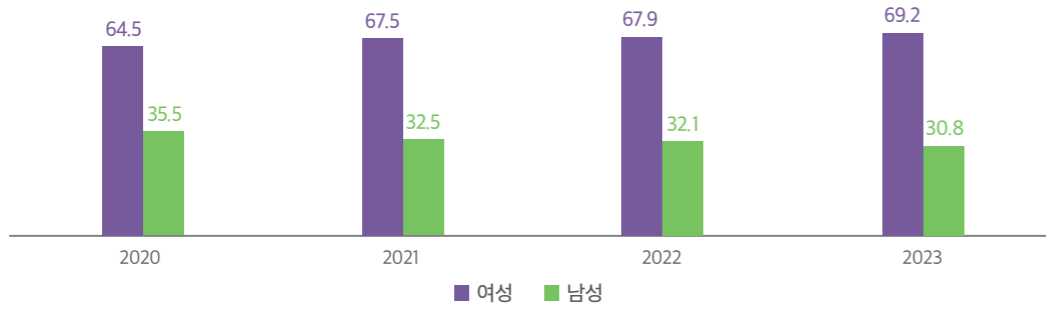
표 III-2 성별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 현황

구분	구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20	전체	431,452	100.0		
	여성	278,397	64.5		
	남성	153,055	35.5		
2021	전체	676,526	100.0		
	여성	456,955	67.5		
	남성	219,571	32.5		
2022	전체	586,967	100.0		
	여성	398,439	67.9		
	남성	188,528	32.1		
2023	전체	663,348	100.0		
	여성	459,164	69.2		
	남성	204,184	30.8		

주: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그림 III-2 성별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 비율 추이

(단위: %)



주: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현황

○ 법정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시·도의 추천심사위원회 및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의 지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

- 2024년 8월 기준 전국 159개소 지정·운영 중으로 광역센터 13개소, 지역센터 146개소

표 III-3 전국 새일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센터	146	24	10	5	8	5	2	5	1	27	9	5	10	8	8	8	8	3
광역센터	13	1	1	0	1	0	1	0	0	2	1	1	1	1	1	1	1	0
총계	159	25	11	5	9	5	3	5	1	29	10	6	11	9	9	9	9	3

주: 2024년 8월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 새일센터의 2023년 구직 건수는 589,685건, 취업 건수 163,674건, 창업 건수 1,865건

- 2022년 대비 구직 건수 36,095건 증가, 취업 건수 3,609건 증가, 창업 건수 158건 증가

표 III-4 새일센터 구직 건수, 취업률, 취·창업 건수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직 건수 (A)	취·창업 건수			
		소계 (B=C+D)	취업률 (B/A)	취업 건수 (C)	창업 건수 (D)
2020	552,198	176,866	32.0	175,589	1,277
2021	572,560	180,610	31.5	178,980	1,630
2022	553,590	161,772	29.2	160,065	1,707
2023	589,685	165,539	28.1	163,674	1,865

자료: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여성의 경력설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지원하고 이후 직업훈련, 인턴십 및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 연계하고 있음

-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인원은 2021년 26,669명, 2022년 26,807명, 2023년 26,823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표 III-5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명)

연도	참여자 수	수료자 수
2020	17,207	17,119
2021	26,808	26,669
2022	26,950	26,807
2023	26,999	26,823

자료: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 2023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는 715개, 직업훈련 수료자 수는 12,805명

- 2021년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는 738개로 처음으로 700개를 상회, 2023년은 715개로 전년 대비 3개 감소
- 2023년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수는 12,805명으로 전년 대비 886명 증가
- 2023년 전년 대비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는 감소하였으나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수는 증가

표 III-6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 및 수료자 수

(단위: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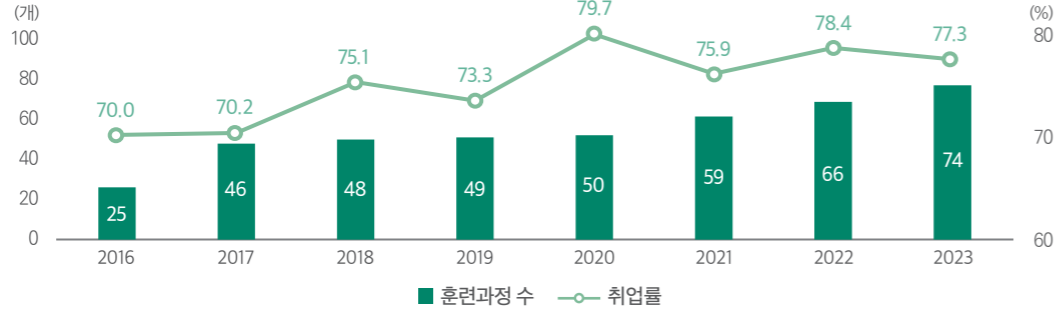
연도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수
2020	658	10,532
2021	738	11,998
2022	718	11,919
2023	715	12,805

자료: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 경력단절여성들이 시대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25개로 시작된 새일센터 고속연·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과정은 매년 확대

- 고속연·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과정은 2023년 74개로 2016년 대비 3.0배 증가하였음. 취업률은 2016년부터 70%를 상회, 2023년 취업률은 77.3%로 나타남

그림 III-3 새일센터 고속런·고부가가치 훈련과정 수 및 취업률 추이



자료: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 새일센터 고속런·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과정은 30세 미만 비중은 2020년 47.0%로 나타난 이후 40% 내외로 높은 편

- 2023년 30세 미만 비중은 41.0%로 전년 대비 1.9%p 상승

표 III-7 연령별 새일센터 고속런·고부가가치 훈련과정 참여 현황

연도	교육인원	연령별 비중 (%)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20	830	390	187	191	58	4
(참여율)	(100.0)	(47.0)	(22.5)	(23.0)	(7.0)	(0.5)
2021	931	403	245	198	73	12
(참여율)	(100.0)	(43.3)	(26.3)	(21.3)	(7.8)	(1.3)
2022	1,094	428	298	259	93	16
(참여율)	(100.0)	(39.1)	(27.2)	(23.7)	(8.5)	(1.5)
2023	1,271	521	362	284	95	9
(참여율)	(100.0)	(41.0)	(28.5)	(22.3)	(7.5)	(0.7)

자료: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 2023년 새일여성인턴 종료 인원은 7,202명, 연계 중 인원은 1,438명이며, 인턴 종료 후 취업자는 6,984명, 취업률은 97.0%

- 인턴 종료 후 취업률은 2023년 97.0%로 전년 대비 0.3%p 상승

표 III-8 새일여성인턴 연계 및 취업 현황

연도	새일여성인턴 연계 현황		인턴 종료 후 취업 현황	
	종료(A)	연계 중	취업(B)	취업률(B/A)
2020	5,812	628	5,658	97.4
2021	9,611	1,236	9,312	96.9
2022	8,298	1,085	8,027	96.7
2023	7,202	1,438	6,984	97.0

자료: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경력단절예방사업의 운영 센터 수와 참여자 꾸준히 증가. 2017년 경력단절예방사업 도입으로 기존 비취업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외에 재직 여성을 대상으로 새일센터 사업 대상 및 범위 확대

-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운영하는 센터 수는 2020년 60개소에서 2021~2022년 75개소 이후 2023년 80개소로 증가
- 경력단절예방사업에 참여한 재직여성은 2023년 85,372명으로 8만 명대 진입, 전년 대비 11,881명 증가
- 여성고용유지 지원사업 참여자 수는 2023년 총 48,706명으로 전체 참여 재직여성의 57.1% 차지
- 직장문화 개선 사업 컨설팅 참여 업체 수는 1,710개사로 전년 대비 20개사 증가
-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자 수는 2023년 1,277명으로 2020년 1,097명 이후 3년 만에 1,000명 이상 참여

표 III-9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사업 현황

연도	운영 센터 수	누적 실적		여성고용유지 지원		직장문화 개선			협력망 구축		기타	
		재직여성	기업	경력단절 예방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지원	컨설팅 (업체)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환경 개선 지원 (업체)	새일센터 종사자 교육		경력 단절 예방 협력망 (업체)
							교육 및 워크숍	네트워크 간담회				
2020	60개소	47,887	1,801	13,264	16,587	1,310	12,106	404	201	1,097	290	4,429
2021	75개소	67,897	2,375	15,548	27,095	1,747	16,520	3,586	166	934	462	4,214
2022	75개소	73,491	3,357	17,241	28,019	1,690	16,381	5,703	158	809	1,509	5,338
2023	80개소	85,372	2,888	19,226	29,480	1,710	20,507	7,055	155	1,277	1,023	7,827

자료: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2.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가. 과학기술인 현황

○ 지난 10여년간 여성 과학기술인 비중은 2012년 19.0%(42,323명)에서 2022년 22.7%(59,760명)로 3.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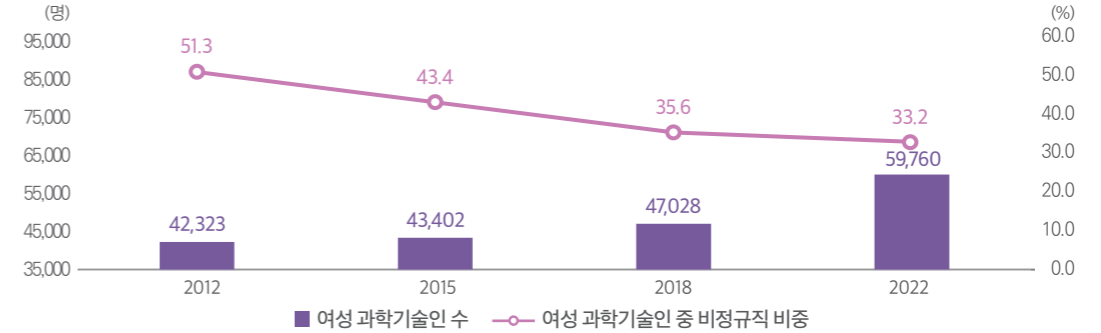
- 여성 비정규직 과학기술인력 수는 2022년 기준 19,835명으로, 2012년 21,708명보다 감소하였고 여성 과학기술인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22년 기준 33.2%로 2012년 51.3%에서 크게 감소

표 III-10 성별·고용형태별 과학기술인 인력 추이

연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2012	223,276	42,323	180,953	158,000	20,615	137,385	65,276	21,708	43,568	
2013	231,589	43,662	187,928	169,655	23,203	146,452	61,934	20,459	41,476	
2014	232,002	43,433	188,569	172,369	23,903	148,466	59,633	19,530	40,103	
2015	223,756	43,402	180,354	167,959	24,546	143,413	55,797	18,856	36,941	
2016	239,635	46,269	193,366	184,671	27,608	157,063	54,964	18,661	36,303	
2017	247,987	49,740	198,246	195,789	31,232	164,557	52,198	18,508	33,690	
2018	235,097	47,028	188,069	186,495	30,263	156,232	48,602	16,765	31,837	
2019	242,993	50,191	192,802	195,022	33,291	161,731	47,971	16,900	31,071	
2020	252,111	54,201	197,910	198,352	35,087	163,264	53,759	19,113	34,646	
2021	256,178	55,874	200,304	201,886	36,697	165,188	54,292	19,177	35,116	
2022	262,923	59,760	203,163	207,194	39,925	167,268	55,729	19,835	35,894	
증감	'21년 대비	6,745	3,886	2,859	5,308	3,228	2,080	1,437	658	778
	'12년 대비	39,647	17,437	22,210	49,194	19,310	29,883	-9,547	-1,873	-7,674

주: 비정규직은 기관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인력 중 고용보험(직장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며, 기관별 채용기준에 따른 비정규 고용형태의 인력을 의미함.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제수행기간 등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포함됨. 이공계 대학의 경우 '비전임교수', '시간강사', '전임연구원 및 연구참여 박사과정생'을 비정규직으로 포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그림 III-4 여성과학기술인 중 비정규직 비중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 이공계 대학의 여성과학기술인은 2012년 20,438명(25.0%)에서 2022년 22,392명(29.5%)으로, 공공연구기관 여성과학기술인은 2012년 7,867명(21.8%)에서 2022년 11,727명(26.0%)으로, 민간연구기관 여성과학기술인은 2012년 14,018명(13.3%)에서 2022년 25,641명(18.1%)으로 인력 수와 여성 비중 모두 증가
- 2012년에서 2022년 사이 이공계 대학의 남성과과학기술인 수는 7,770명 줄어든 반면 여성과학기술인 수는 1,954명 늘어남

표 III-11 성별·기관유형별 과학기술인 인력 추이

연도	이공계 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2012	81,625	20,438	61,187	36,017	7,867	28,150	105,634	14,018	91,616	
2013	78,761	19,241	59,520	35,304	8,209	27,095	117,524	16,212	101,313	
2014	77,828	18,631	59,197	34,666	7,933	26,733	119,508	16,869	102,639	
2015	73,023	18,370	54,653	36,717	8,484	28,233	114,016	16,548	97,468	
2016	74,403	18,820	55,583	36,547	8,648	27,899	128,685	18,801	109,884	
2017	71,764	18,918	52,846	38,226	9,078	29,148	137,997	21,744	116,252	
2018	68,345	18,131	50,214	37,352	8,912	28,440	129,400	19,985	109,415	
2019	66,828	18,171	48,657	43,027	10,511	32,516	133,138	21,509	111,629	
2020	73,283	21,232	52,051	44,834	11,086	33,748	133,994	21,883	112,111	
2021	74,413	21,795	52,618	45,663	11,303	34,360	136,102	22,776	113,326	
2022	75,809	22,392	53,417	45,069	11,727	33,342	142,045	25,641	116,404	
증감	'21년 대비	1,396	597	799	-594	424	-1018	5,943	2865	3,078
	'12년 대비	-5,816	1,954	-7,770	9,052	3,860	5,192	36,411	11,623	24,788

주: 2016년도부터 정부투자기관의 명칭을 공공연구기관으로 변경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 현황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및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연간 학·석사급 1인당 2,100만 원, 박사급 1인당 2,300만 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예산은 2020년 94억 75백만 원에서 2021년 108억 원, 2022년 120억 원으로 증가

- 2023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예산은 120억 원, 수혜자 수는 504명

표 III-12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예산 및 수혜자 수

(단위: 백만 원, 명)

연도	지원 예산	수혜자 수(지원 과제 수)
2020	9,475	398
2021	10,800	464
2022	12,000	503
2023	12,000	50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WISET 제공자료

○ 2023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사업 지원 종료자는 197명, 취업자는 152명, 취업유지율은 77.2%

- 2022년 대비 지원종료자는 3명 감소, 취업자는 5명 감소, 취업유지율은 1.3%p 하락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은 최대 3년간 가능함. 따라서 지원이 종료된 인원을 기준으로 취업유지율을 집계하며, 취업유지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III-13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사업 취업 유지 현황

(단위: 명, %)

연도	지원 종료 후 취업유지율		
	지원종료자(A)	취업자(B)	취업유지율(B/A)
2020	180	146	81.1
2021	336	266	79.2
2022	200	157	78.5
2023	197	152	77.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WISET 제공자료

3. 여성 기업활동

가. 여성경영인 기업²⁾ 현황

○ 전국 사업체 중 여성이 대표인 사업체는 2022년 40.5%로 2019년 이후 40% 이상 유지

- 여성경영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으로 50% 이상을 차지하며, 여성경영자 비율이 낮은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 광업으로 20% 미만임
- 대부분의 산업에서 2019년 대비 2022년의 여성경영인 비율이 늘어난 반면, 다른 산업에 비해 여성경영인 비율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여성대표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음
- 2019~2022년 사이 여성경영인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1%p), 정보통신업(3.5%p), 교육 서비스업(2.7%p), 제조업(1.6%p) 순임

표 III-14 산업별 여성경영인 기업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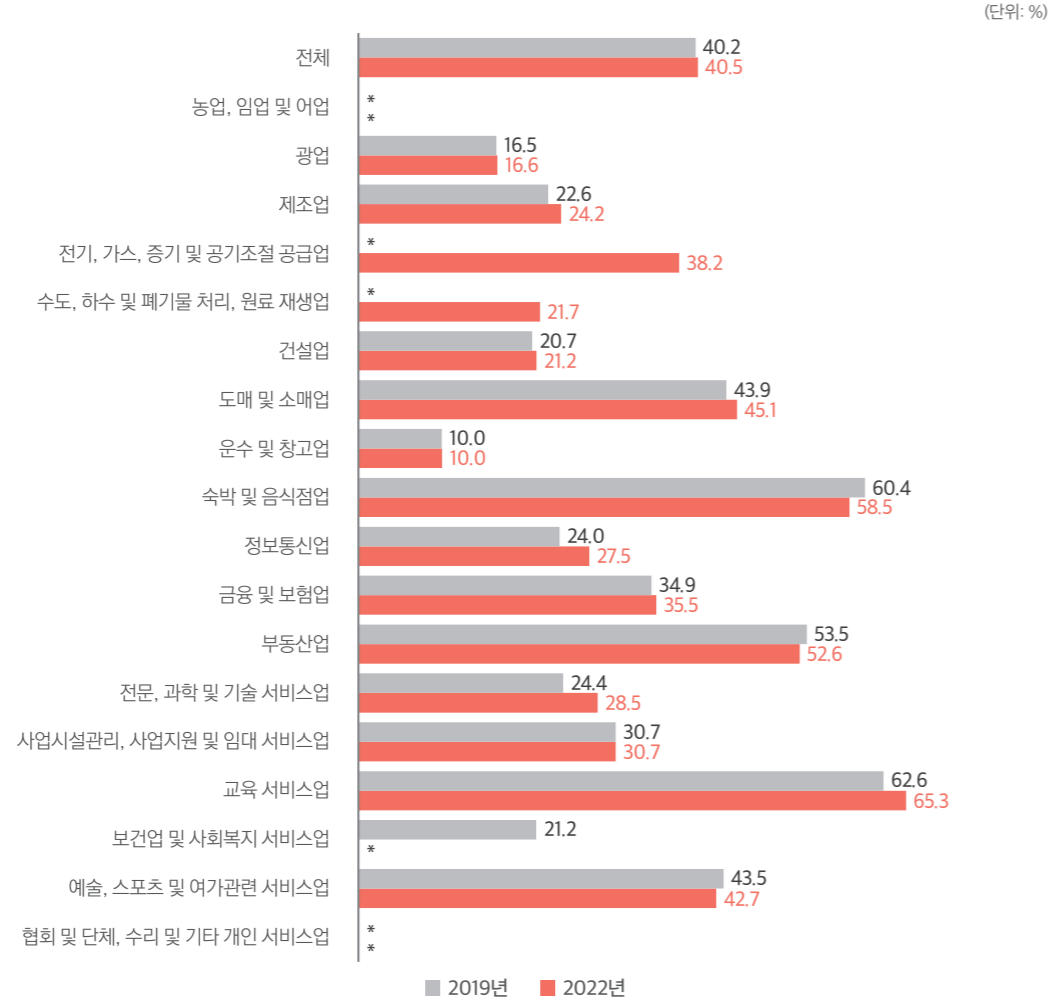
(단위: %)

산업별	2019	2020	2021	2022
전체	40.2	40.5	40.6	40.5
농업, 임업 및 어업	*	*	*	*
광업	16.5	*	*	16.6
제조업	22.6	23.5	24.0	24.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9.3	38.8	38.2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	*	21.7
건설업	20.7	20.9	21.1	21.2
도매 및 소매업	43.9	44.0	44.7	45.1
운수 및 창고업	10.0	10.0	10.0	10.0
숙박 및 음식점업	60.4	59.6	59.0	58.5
정보통신업	24.0	25.5	26.7	27.5
금융 및 보험업	34.9	34.8	35.5	35.5
부동산업	53.5	53.9	53.7	5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4	25.9	27.4	28.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7	30.9	30.6	30.7
교육 서비스업	62.6	63.4	64.4	65.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2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3.5	43.1	42.9	42.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주: 3 미만의 수치 또는 합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수치는 정보보호를 위해 * 처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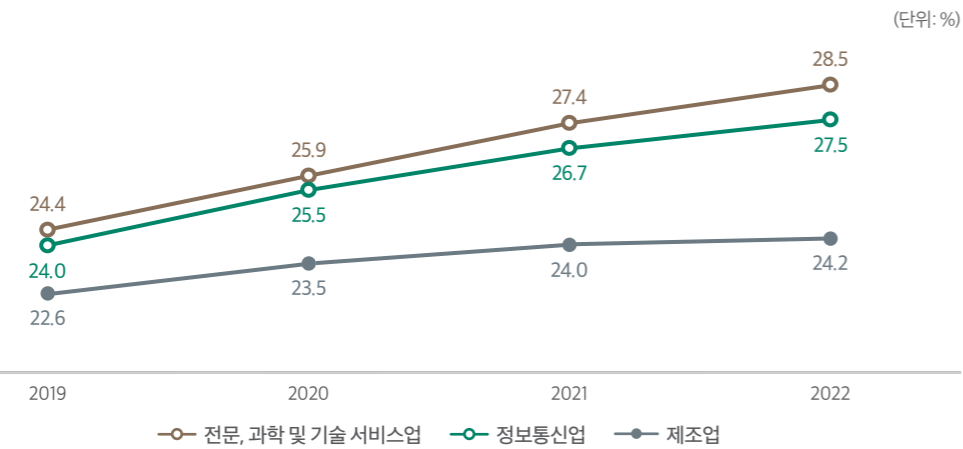
2)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

그림 III-5 산업별 여성경영인 기업 비율



주: 3 미만의 수치 또는 합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수치는 정보보호를 위해 * 처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그림 III-6 여성경영자 비중이 증가한 주요 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여성기업실태조사³⁾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기업 중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36.7%, 기업 성장단계 중에서는 성숙기의 비중이 39.2%, 매출액 규모로는 5~10억 원 미만이 6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산업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3.0%에서 21.7%로 18.7%p 증가하였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 29.4%에서 36.7%로 7.3%p, 부동산업이 2.7%에서 3.9%로 1.2%p 증가
- 창업기의 비중은 7.4%에서 31.3%로 23.9%p 증가하였고, 매출액 규모 5~10억 원 미만의 비중이 30.0%에서 61.5%로 크게 증가. 이는 최근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의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

표 III-15 산업별·기업 성장단계별·매출액 규모별 여성기업 현황

구분	2018		202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42,803	100.0	240,597	100.0
산업별				
식료품/음료 제조업	1,062	2.5	2,991	1.2
섬유/의복/가방/신발 제조업	1,031	2.4	3,385	1.7
기타 제조업	7,799	18.2	22,920	9.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88	1.1	1,137	0.5
건설업	7,510	17.5	22,542	9.4
도매 및 소매업	12,575	29.4	88,249	36.7
운수 및 창고업	1,810	4.2	4,381	1.8
숙박 및 음식점업	1,267	3.0	52,144	21.7
정보통신업	1,078	2.5	3,018	1.3
금융 및 보험업	363	0.8	3,137	1.3
부동산업	1,159	2.7	9,269	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24	4.0	6,018	2.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164	5.1	5,038	2.1
교육 서비스업	845	2.0	5,401	2.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68	2.5	7,380	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3	0.6	951	0.4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97	1.4	2,508	1
기업 성장단계별				
창업기	3,167	7.4	75,307	31.3
성장기	18,148	42.4	59,668	24.8
성숙기	17,506	40.9	94,314	39.2
쇠퇴기	3,981	9.3	11,308	4.7
매출액규모별				
5~10억 원 미만	12,861	30.0	147,861	61.5
10~50억 원 미만	23,197	54.2	79,940	33.2
50~100억 원 미만	4,166	9.7	8,102	3.4
100~200억 원 미만	1,674	3.9	-	-
200~300억 원 미만	380	0.9	-	-
300억 원 이상	525	1.2	656	0.3

자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실태조사」

3) 여성기업실태조사의 조사명부는 2021년까지는 전국 사업체 조사 기업체 명부를 사용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기업등록통계부(SBR)를 사용함

나. 창업 현황

○ 2023년 여성 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1,238,617개) 중 45.4%(562,750개)를 차지하며, 2016년 여성 창업기업 551,682개에 비해 11,068개(2.0%) 증가

- 남녀 모두 서비스업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2023년 기준 92.4%가 서비스업(남성 84.9%). 그중 남녀 모두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여성 40.9%, 남성 32.4%)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의 여성 창업기업 수는 2016년 2,714개에서 10,415개로 3배 이상 증가함

표 III-16 산업별 여성 창업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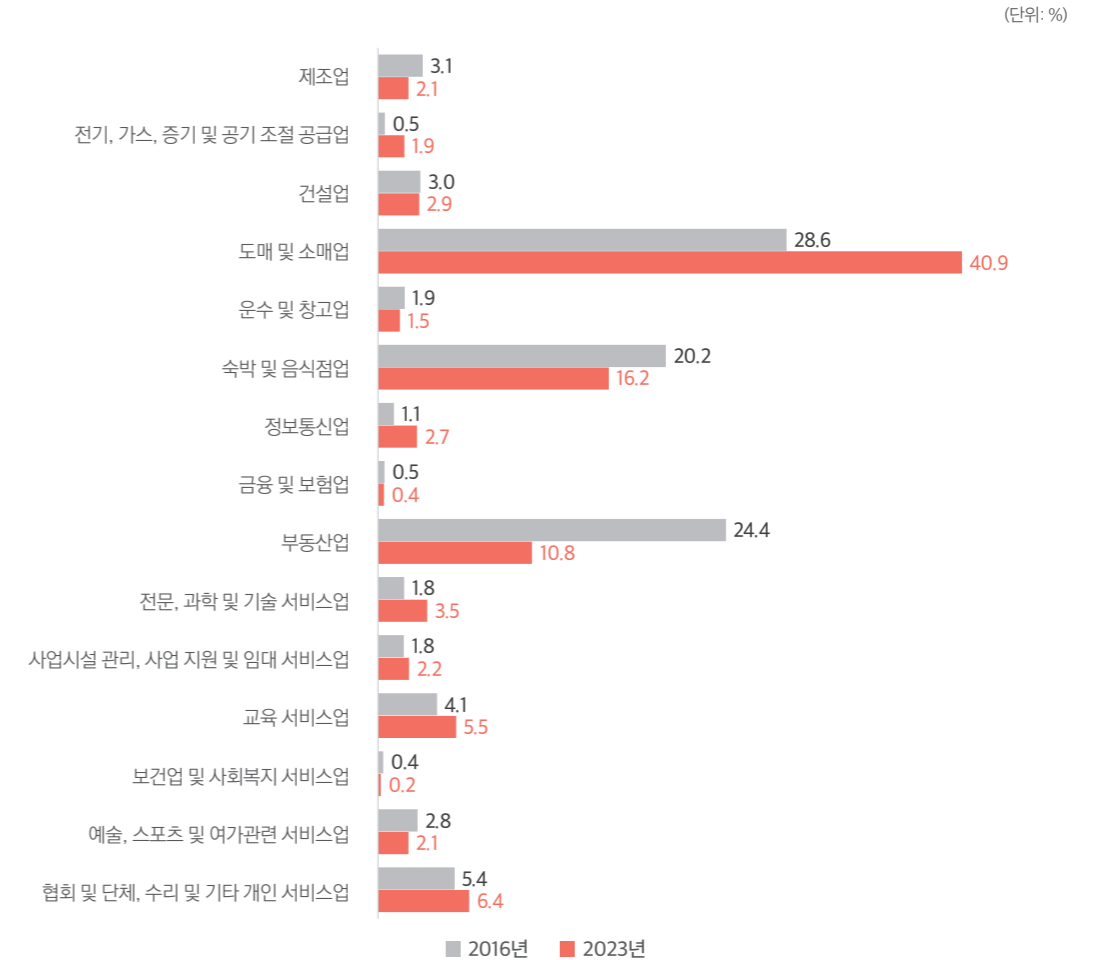
산업별	2016			2022			2023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1,190,177	551,682	637,829	1,317,479	604,425	711,637	1,238,617 (100.0)	562,750 (100.0)	673,891 (100.0)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0,296	2,558	7,735	15,752	4,462	11,289	14,250 (1.2)	3,990 (0.7)	10,257 (1.5)
소계(제조업 전체)	58,742	17,314	41,394	41,595	13,462	28,110	37,280 (3.0)	12,046 (2.1)	25,208 (3.7)
음식료품 및 음료	6,992	3,147	3,840	5,985	3,113	2,871	5,433 (0.4)	2,742 (0.5)	2,691 (0.4)
섬유 및 가죽	7,972	3,348	4,622	5,455	2,525	2,928	4,639 (0.4)	2,189 (0.4)	2,447 (0.4)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	3,665	1,048	2,616	2,787	853	1,933	2,373 (0.2)	651 (0.1)	1,722 (0.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73	484	989	879	294	585	782 (0.1)	302 (0.1)	480 (0.1)
고무 및 화학제품	6,246	2,079	4,162	3,996	1,222	2,771	3,537 (0.3)	1,060 (0.2)	2,474 (0.4)
기계, 금속	15,544	3,252	12,280	11,395	2,605	8,783	10,273 (0.8)	2,437 (0.4)	7,829 (1.2)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8,117	1,833	6,279	5,992	1,448	4,537	5,178 (0.4)	1,201 (0.2)	3,972 (0.6)
자동차 및 운송장비	3,307	726	2,579	2,627	637	1,989	2,643 (0.2)	617 (0.1)	2,021 (0.3)
기타 제조업	5,426	1,397	4,027	2,479	765	1,713	2,422 (0.2)	847 (0.2)	1,572 (0.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693	2,714	3,979	23,773	8,254	15,519	31,546 (2.5)	10,415 (1.9)	21,131 (3.1)
건설업	62,200	16,405	45,792	67,271	17,621	49,648	61,514 (5.0)	16,305 (2.9)	45,208 (6.7)
소계(서비스업 전체)	1,052,246	512,691	538,929	1,169,088	560,626	607,071	1,094,027 (88.3)	519,994 (92.4)	572,087 (84.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48	196	652	704	171	532	690 (0.1)	150 (0.0)	540 (0.1)
도매 및 소매업	303,493	157,815	145,322	456,426	235,934	219,401	450,194 (36.3)	230,103 (40.9)	218,440 (32.4)
운수 및 창고업	63,849	10,350	53,489	65,798	9,364	56,425	61,241 (4.9)	8,687 (1.5)	52,544 (7.8)
숙박 및 음식점업	191,472	111,176	80,274	156,489	84,345	72,130	169,188 (13.7)	90,974 (16.2)	78,190 (11.6)
정보통신업	22,409	6,184	16,175	46,041	16,729	29,245	44,870 (3.6)	15,362 (2.7)	29,437 (4.4)
금융 및 보험업	7,070	2,509	4,551	8,541	3,254	5,278	6,557 (0.5)	2,388 (0.4)	4,166 (0.6)
부동산업	265,827	134,447	131,328	205,761	101,824	103,919	126,685 (10.2)	60,699 (10.8)	65,970 (9.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5,185	10,155	24,951	58,035	22,130	35,781	52,805 (4.3)	19,425 (3.5)	33,253 (4.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1,780	10,011	21,744	39,291	11,510	27,747	43,023 (3.5)	12,274 (2.2)	30,724 (4.6)
교육 서비스업	35,777	22,855	12,920	42,536	29,784	12,748	44,622 (3.6)	30,849 (5.5)	13,762 (2.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166	2,035	5,131	4,815	1,222	3,593	4,540 (0.4)	1,149 (0.2)	3,391 (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5,328	15,330	19,988	28,318	12,365	15,946	27,661 (2.2)	12,013 (2.1)	15,641 (2.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2,042	29,628	22,404	56,333	31,994	24,326	61,951 (5.0)	35,921 (6.4)	26,029 (3.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 2023년 여성 창업기업은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40.9%로 가장 높으며, 2016년 28.6%에서 12.3%p 증가

- 2016년 대비 2023년 부동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여성 창업기업 수 비중은 각각 13.6%p, 4.0%p 감소한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1.6%p와 1.7%p 증가

그림 III-7 여성 창업기업의 산업별 비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다. 여성경영인 기업 수

○ 2022년 여성경영인 기업 수는 3,259,853개이며 2019년 대비 485,183개(17.5%) 증가

- 2019년 대비 여성경영인 기업 수가 많이 증가한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217,785개(29.9%), 교육 서비스업 37,759개(2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484개(63.5%) 순임

표 III-17 산업별 여성경영인 기업 수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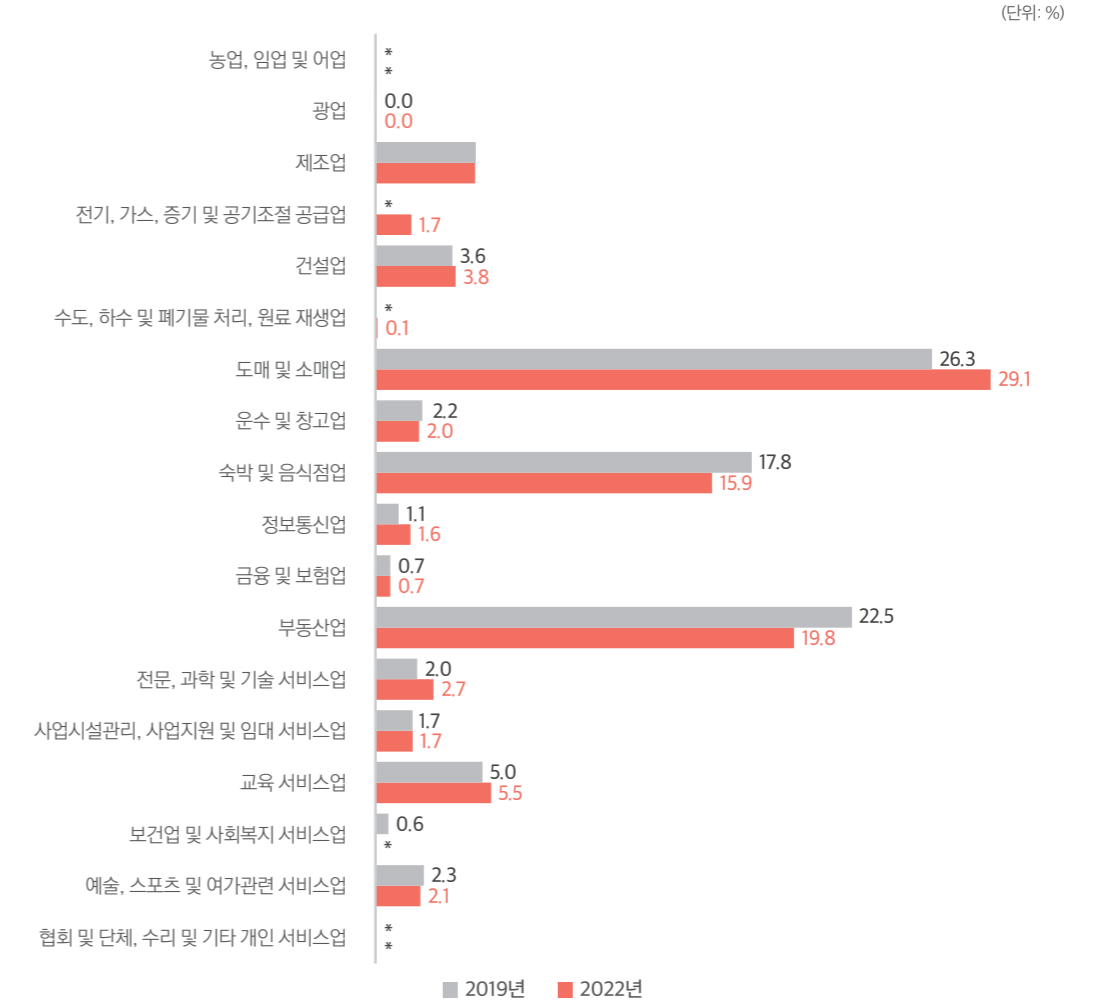
산업별	2019		2020		2021		2022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전체	2,774,670	100.0	2,951,781	100.0	3,137,121	100.0	3,259,853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	*	*	*	*	*	*	*
광업	437	0.0	*	*	*	*	413	0.0
제조업	131,022	4.7	137,936	4.7	148,830	4.7	153,044	4.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43,472	1.5	48,835	1.6	54,989	1.7
건설업	100,428	3.6	107,397	3.6	116,126	3.7	123,294	3.8
서비스업	2,277,519	82.1	2,408,276	81.6	2,555,981	81.5	2,647,440	81.2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	*	*	*	*	2,946	0.1
도매 및 소매업	729,451	26.3	787,020	26.7	864,936	27.6	947,236	29.1
운수 및 창고업	61,230	2.2	62,834	2.1	64,463	2.1	66,705	2.0
숙박 및 음식점업	493,048	17.8	501,316	17.0	513,290	16.4	517,897	15.9
정보통신업	30,158	1.1	37,272	1.3	45,526	1.5	53,521	1.6
금융 및 보험업	18,916	0.7	19,642	0.7	21,569	0.7	22,309	0.7
부동산업	624,318	22.5	666,788	22.6	683,802	21.8	644,467	19.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4,333	2.0	65,300	2.2	77,873	2.5	88,817	2.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6,228	1.7	53,503	1.8	54,059	1.7	57,024	1.7
교육 서비스업	140,001	5.0	150,099	5.1	163,894	5.2	177,760	5.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496	0.6	*	*	*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3,340	2.3	64,502	2.2	66,569	2.1	68,758	2.1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	*	*

주: 3 미만의 수치 또는 합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수치는 정보보호를 위해 * 처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2023년 여성경영인 기업은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29.1%로 가장 높으며, 2019년 26.3%에서 2.8%p 증가

- 2019년 대비 2023년 부동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여성경영인 기업 비중은 각각 2.7%p, 1.9%p 감소한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0.7%p와 0.5%p 증가

그림 III-8 산업별 여성경영인 기업 비율



주: 3 미만의 수치 또는 합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수치는 정보보호를 위해 * 처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현황

○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기준 전국 238개 운영 중

- 2007년 9개로 시작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7개 시·도에 센터를 두고, 시·도마다 9개에서 최대 19개까지 보육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
- 2007년 중앙에서 시작한 이후 전국에서 부산과 경기도가 2008년 가장 빠르게 보육실을 설치하였으며 2010년 시작한 인천이 19개 보육실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 중

표 III-18 지역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개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경기 북부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제주
설립연도	-	'17	'08	'09	'21	'10	'11	'11	'12	'08	'17	'09	'13	'10	'14	'09	'09	'12
보육실	238	16	10	16	12	19	9	15	16	11	15	13	9	16	10	12	18	1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마. 여성 벤처기업 현황

○ 2023년 말 기준 여성 벤처기업 수는 4,842개사로 전체 벤처기업 40,081개사 중 12.1% 차지

- 여성 벤처기업 유형은 혁신성장이 66.7%로 가장 많고 예비벤처가 0.6%로 가장 적음
- 혁신성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 벤처기업이 66.7%로 전체 벤처기업 64.8%보다 1.9%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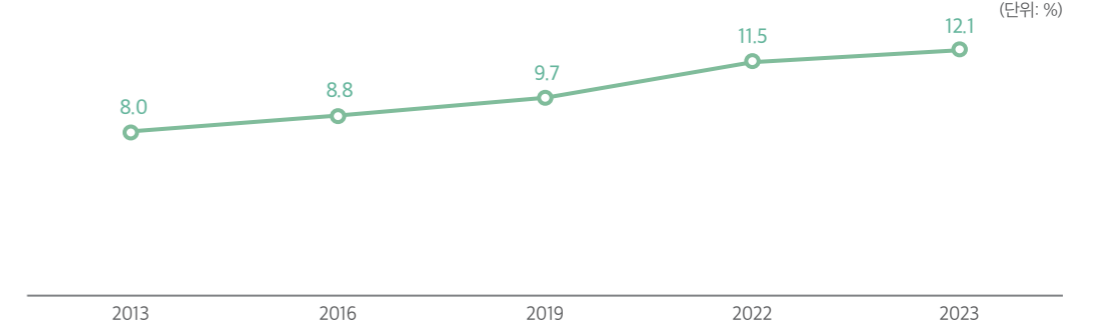
표 III-19 벤처기업 대표자 성별 현황

(단위: 개)

연도	전체	여성	남성	
2013	29,135	2,336	26,799	
2014	29,910	2,393	27,517	
2015	31,260	2,566	28,694	
2016	33,360	2,923	30,437	
2017	35,282	3,277	32,005	
2018	36,820	3,504	33,316	
2019	37,008	3,579	33,429	
2020	39,511	3,950	35,561	
2021	38,319	4,104	34,215	
2022	35,123	4,023	31,100	
2023	40,081	4,842	35,239	
증감	'22년 대비	4,958	818	4,139
	'13년 대비	10,946	2,506	8,44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그림 III-9 여성벤처 기업 비중 추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표 III-20 유형별 여성 벤처기업 현황('23.12.31. 기준)

(단위: 개, %)

구분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예비벤처	합계					
전체 벤처기업 수	6,930	17.3	6,931	17.3	25,953	64.8	267	0.7	40,081	100.0
여성 벤처기업 수	862	17.8	722	14.9	3,231	66.7	27	0.6	4,842	100.0

주: 벤처기업 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은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②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③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연구개발유형은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②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③ 벤처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참고)이 5%이상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유형은 ①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예비벤처유형은 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의미(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기관, 2024. 7.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 pp.20-3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 2023년 여성 벤처기업의 업종은 제조업이 56.6%로 가장 많고 농·어·임광업이 0.3%로 가장 적음

- 여성 벤처기업 유형은 전체 벤처기업에 비해 도소매업(5.8%)과 기타(13.1%) 비중이 높음

표 III-21 업종별 여성 벤처기업 현황('23.12.31. 기준)

(단위: 개, %)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합계
전체 벤처기업 수	23,264	8,676	1,508	876	1,559	179	4,019	40,081
	58.0	21.6	3.8	2.2	3.9	0.4	10.0	100.0
여성 벤처기업 수	2,741	867	175	131	280	14	634	4,842
	56.6	17.9	3.6	2.7	5.8	0.3	13.1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자료

바. 벤처기업 여성고용 현황

○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총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30.7%이며, 한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여성 7.7명, 남성 17.4명임

- 2015년과 비교하여 남녀 모두 비정규직 종사자 수가 많아졌으며, 벤처기업 여성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22년 기준 4.0%임
- 2015년 대비 2022년 벤처기업 여성종사자 수는 51,466명(26.1%) 증가

표 III-22 성별·고용형태별 벤처기업 종사자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전체	여성	남성	
2015	총 종사자 수	소계	728,424	197,013	531,411
		기업당 평균	23.3	6.3	17
	정규직 종사자 수	소계	717,670	193,998	523,672
		기업당 평균	23	6.2	16.8
	비정규직 종사자 수	소계	10,754	3,015	7,739
		기업당 평균	0.3	0.1	0.2
2020	총 종사자 수	소계	817,297	240,426	576,871
		기업당 평균	20.9	6.1	14.8
	정규직 종사자 수	소계	801,812	233,890	567,922
		기업당 평균	20.5	6	14.5
	비정규직 종사자 수	소계	15,485	6,536	8,949
		기업당 평균	0.4	0.2	0.2
2021	총 종사자 수	소계	834,627	246,572	588,056
		기업당 평균	22.1	6.5	15.6
	정규직 종사자 수	소계	814,791	238,105	576,686
		기업당 평균	21.6	6.3	15.3
	비정규직 종사자 수	소계	19,836	8,467	11,369
		기업당 평균	0.5	0.2	0.3
2022	총 종사자 수	소계	808,824	248,479	560,345
		기업당 평균	25.1	7.7	17.4
	정규직 종사자 수	소계	783,239	238,615	544,624
		기업당 평균	24.3	7.4	16.9
	비정규직 종사자 수	소계	25,585	9,864	15,721
		기업당 평균	0.8	0.3	0.5

주: 성별인력 현황은 2015년부터 제공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04장



여성의 일·생활 균형

1.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 현황
4.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5. 초등돌봄교실 참여 현황
6.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04장 여성의 일·생활 균형



1.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2023년 여성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138만 9천 명으로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13.9%를 차지

- 남성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수는 204만 1천 명으로 17.1%를 차지하였음
-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 모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세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21년 이후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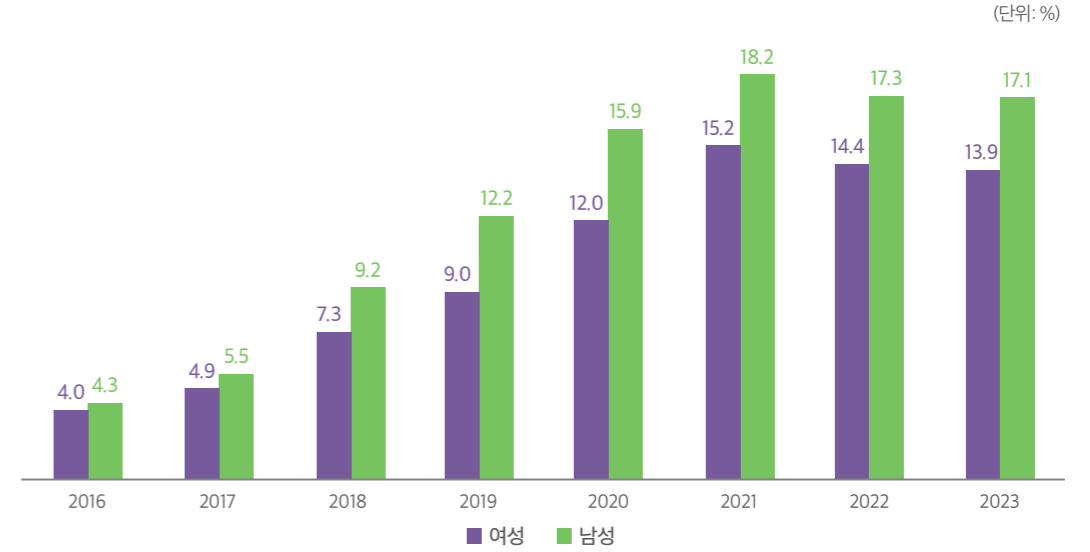
표 IV-1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임금근로자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20,992	21,724	21,954
	유연근무제 활용	823	1,041	1,675	2,215	2,898	3,534	3,475	3,430
	비중	4.2	5.2	8.4	10.8	14.2	16.8	16.0	15.6
여성	임금근로자	8,658	8,818	8,874	9,163	9,085	9,476	9,788	10,027
	유연근무제 활용	349	429	645	827	1,093	1,441	1,406	1,389
	비중	4.0	4.9	7.3	9.0	12.0	15.2	14.4	13.9
남성	임금근로자	11,086	11,188	11,171	11,396	11,361	11,517	11,936	11,927
	유연근무제 활용	475	612	1,030	1,387	1,805	2,092	2,069	2,041
	비중	4.3	5.5	9.2	12.2	15.9	18.2	17.3	17.1

주: 비중은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림 IV-1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 추이



주: 비중은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2023년 여성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은 시차출퇴근제(36.1%), 탄력적 근무제(26.7%), 선택적 근무시간제(2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2년에는 시차출퇴근제(33.7%)의 활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재택 및 원격근무제(28.3%), 선택적 근무시간제(24.8%) 순이었음
- 2023년 남성의 경우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은 탄력적 근무제(34.2%), 시차출퇴근제(30.8%), 선택적 근무시간제(2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2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

(단위: 천 명, %)

구분	2022				2023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전체	1,406	100.0	2,069	100.0	1,389	100.0	2,041	100.0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160	11.4	223	10.8	144	10.4	184	9.0
시차출퇴근제	474	33.7	626	30.3	501	36.1	629	30.8
선택적 근무시간제	348	24.8	513	24.8	347	25.0	561	27.5
재택 및 원격 근무제	398	28.3	558	27.0	264	19.0	419	20.5
탄력적 근무제	336	23.9	635	30.7	371	26.7	699	34.2
기타 유형	124	8.8	192	9.3	134	9.6	182	8.9

주: 중복 응답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산업별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정보통신업(37.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6.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9.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9.0%), 금융 및 보험업(28.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남성도 동일하게 정보통신업이 4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8.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7.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6.5%), 금융 및 보험업(25.6%) 순으로 나타남

표 IV-3 성별·산업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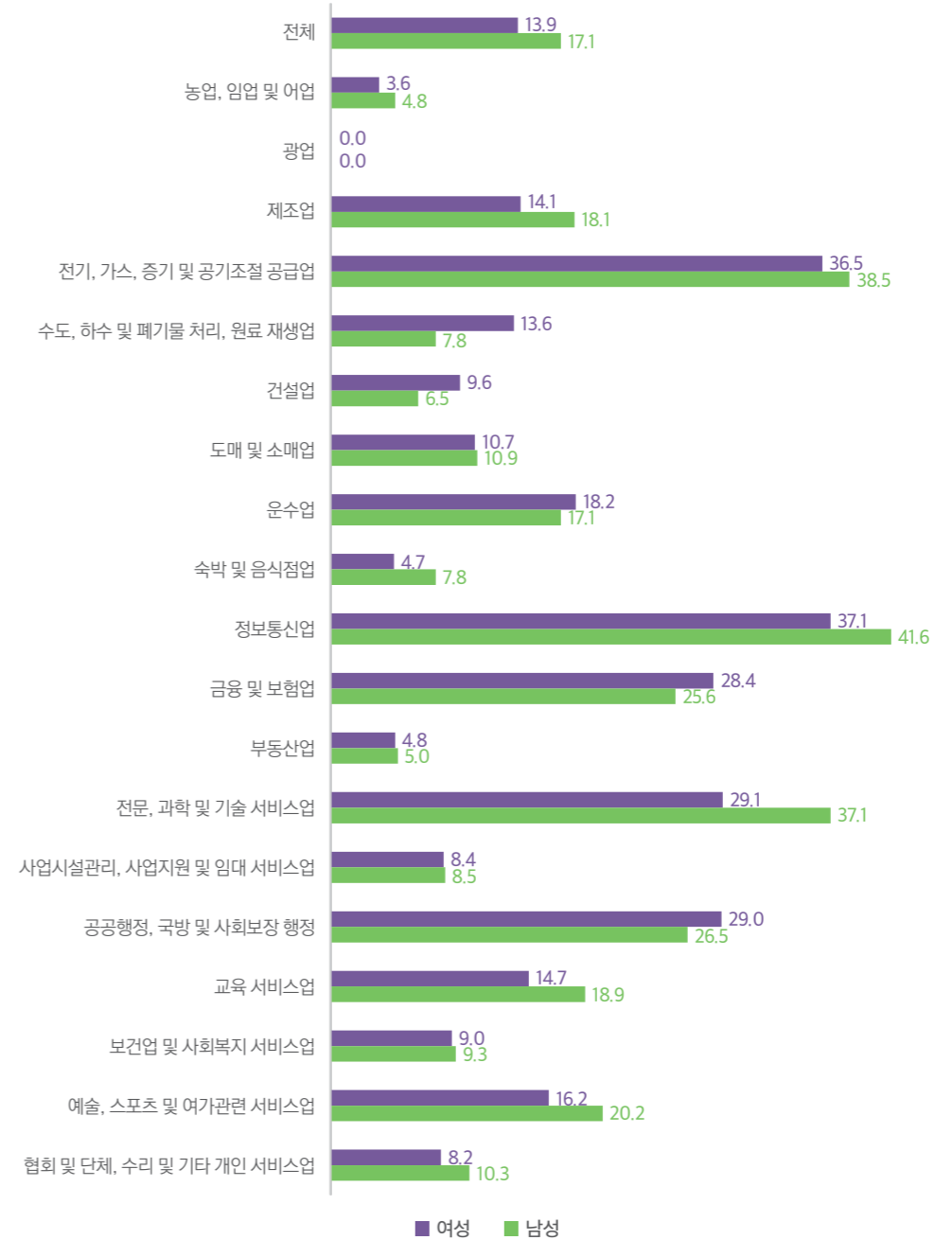
(단위: %)

산업별	2022			2023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전체	16.0	14.4	17.3	15.6	13.9	17.1
농업, 임업 및 어업	4.5	2.2	5.9	4.3	3.6	4.8
광업	8.1	0.0	8.6	0.0	0.0	0.0
제조업	16.6	15.0	17.2	16.9	14.1	18.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4.5	29.1	35.9	38.1	36.5	38.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3.0	16.5	12.5	8.7	13.6	7.8
건설업	7.7	11.6	7.2	6.9	9.6	6.5
도매 및 소매업	12.3	12.2	12.3	10.8	10.7	10.9
운수업	16.9	18.9	16.4	17.3	18.2	17.1
숙박 및 음식점업	4.6	4.1	5.7	5.8	4.7	7.8
정보통신업	44.3	40.8	46.1	40.1	37.1	41.6
금융 및 보험업	33.1	32.8	33.5	27.2	28.4	25.6
부동산업	4.9	4.9	4.9	4.9	4.8	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2.2	29.4	33.9	34.1	29.1	37.1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5	8.9	8.2	8.4	8.4	8.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8.0	28.3	27.7	27.6	29.0	26.5
교육 서비스업	17.5	14.6	23.3	16.2	14.7	18.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5	8.6	8.0	9.0	9.0	9.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3	17.4	17.2	18.2	16.2	2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6	8.1	8.9	9.4	8.2	10.3

주: 활용률은 산업별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림 IV-2 2023년 성별·산업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단위: %)



주: 활용률은 산업별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직업별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사무 종사자가 2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리자(20.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8.6%)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2.0%), 사무 종사자(24.1%), 관리자(22.8%) 순으로 나타남

표 IV-4 성별·직업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직업별	2022			2023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전체	16.0	14.4	17.3	15.6	13.9	17.1
관리자	24.2	22.6	24.5	22.4	20.1	22.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5.9	19.5	32.2	25.5	18.6	32.0
사무 종사자	25.0	23.4	26.7	23.1	22.2	24.1
서비스 종사자	9.5	7.0	14.3	9.8	7.6	14.4
판매 종사자	11.6	12.1	10.9	11.0	12.0	9.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9.6	0.0	11.7	16.6	0.0	18.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3	6.8	7.3	6.9	8.4	6.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8	11.1	10.7	10.1	9.3	10.3
단순노무 종사자	4.0	4.3	3.6	3.9	3.8	4.0

주: 활용률은 직종별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 2023년 기준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300인 이상(36.0%), 100~299인(23.3%), 30~99인(19.0%), 10~29인(15.5%), 5~9인(2.6%), 1~4인(1.6%)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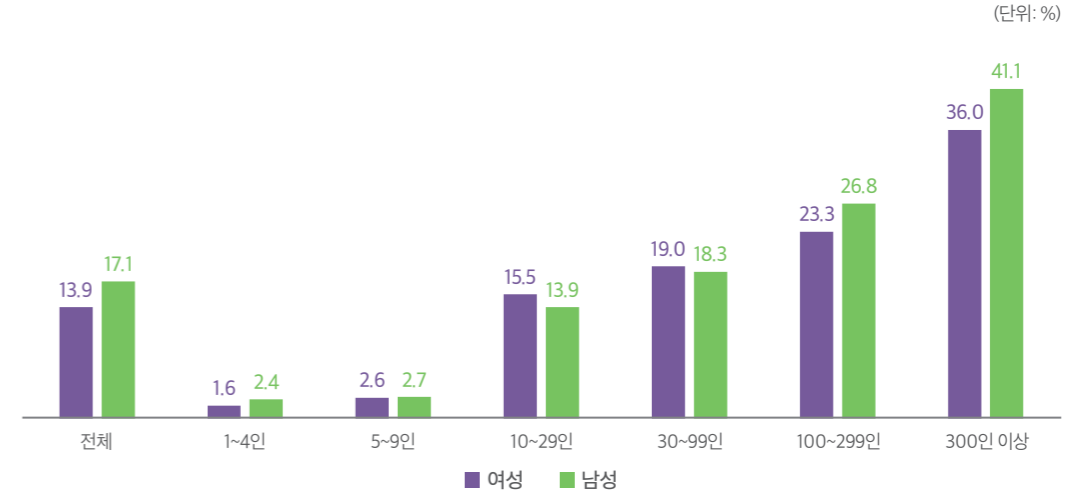
• 남성 근로자 역시 2023년 300인 이상 사업체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은 41.1%인 반면, 1~4인 사업체와 5~9인 사업체는 각각 2.4%와 2.7%로 나타남

표 IV-5 성별·사업장 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사업장 규모별	2022			2023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전체	16.0	14.4	17.3	15.6	13.9	17.1
1~4인	1.5	1.3	1.7	2.0	1.6	2.4
5~9인	2.2	2.2	2.2	2.7	2.6	2.7
10~29인	14.8	15.7	14.0	14.7	15.5	13.9
30~99인	20.9	21.0	20.7	18.6	19.0	18.3
100~299인	24.1	22.8	24.9	25.5	23.3	26.8
300인 이상	40.4	38.7	41.3	39.3	36.0	41.1

주: 활용률은 사업장 규모별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림 IV-3 2023년 성별·사업장 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주: 활용률은 사업장 규모별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 활용 비중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2023년 유연근무제 미활용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여성 근로자는 49.1%로 나타남

•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유형은 선택적 근무시간제(35.5%), 탄력적 근무제(29.0%), 근로시간 단축근무제(23.8%) 순이었음

표 IV-6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여부 및 유형

구분	2022				2023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미활용 근로자	비율	미활용 근로자	비율	미활용 근로자	비율	미활용 근로자	비율
전체	8,382	100.0	9,867	100.0	8,637	100.0	9,887	100.0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3,898	46.5	4,356	44.1	4,244	49.1	4,466	45.2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944	(24.2)	976	(22.4)	1,010	(23.8)	1,094	(24.5)
시차출퇴근제	821	(21.1)	890	(20.4)	854	(20.1)	861	(19.3)
선택적 근무시간제	1,344	(34.5)	1,429	(32.8)	1,508	(35.5)	1,463	(32.7)
재택 및 원격 근무제	764	(19.6)	614	(14.1)	794	(18.7)	621	(13.9)
탄력적 근무제	1,116	(28.6)	1,493	(34.3)	1,233	(29.0)	1,498	(33.5)
기타 유형	289	(7.4)	416	(9.6)	297	(7.0)	382	(8.6)
유연근무제 활용 비희망	4,484	53.5	5,511	55.9	4,393	50.9	5,421	54.8

주: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유형은 중복 응답으로, 괄호의 총합은 100%가 아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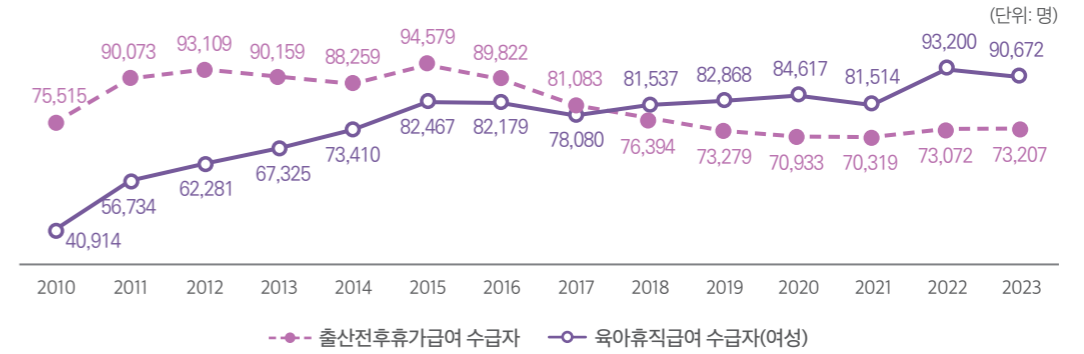
-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수는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35명(0.2%) 증가한 73,207명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2022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전년 대비 5,076명(3.9%) 감소한 126,008명으로 나타남
 -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여성은 90,672명으로 전년 대비 2,528명(2.7%)이 감소하였고 남성은 35,336명으로 전년 대비 2,548명(6.7%) 감소
 -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2023년 전체 수급자의 28.0%를 차지

표 IV-7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연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전체	여성	남성	
2010	75,515	41,733	40,914	819	
2011	90,073	58,136	56,734	1,402	
2012	93,109	64,071	62,281	1,790	
2013	90,159	69,618	67,325	2,293	
2014	88,259	76,831	73,410	3,421	
2015	94,579	87,339	82,467	4,872	
2016	89,822	89,795	82,179	7,616	
2017	81,083	90,122	78,080	12,042	
2018	76,394	99,199	81,537	17,662	
2019	73,279	105,165	82,868	22,297	
2020	70,933	112,038	84,617	27,421	
2021	70,222	110,555	81,514	29,041	
2022	73,072	131,084	93,200	37,884	
2023	73,207	126,008	90,672	35,336	
증감	'22년 대비	135	-5,076	-2,528	-2,548
	'13년 대비	-16,952	56,390	23,347	33,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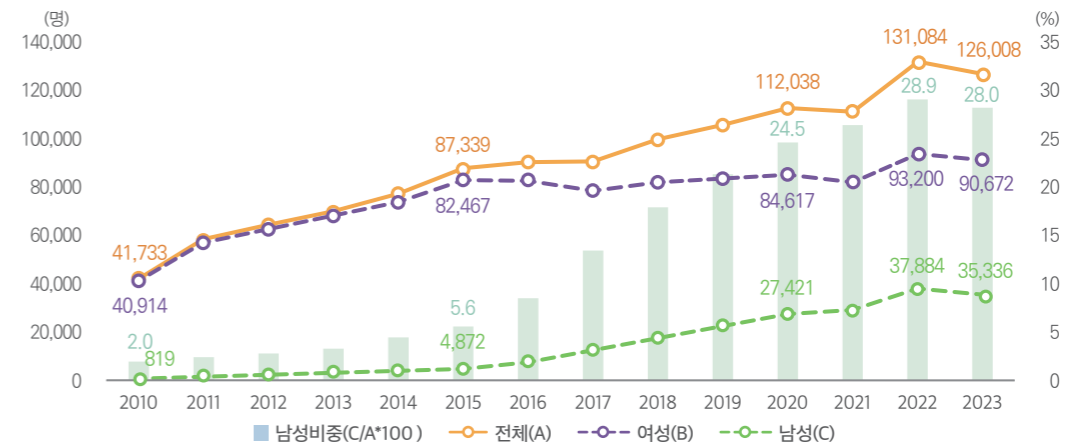
주: 공무원, 교직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석에 유의 바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그림 IV-4 여성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추이



주: 공무원, 교직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석에 유의 바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그림 IV-5 성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추이



주: 공무원, 교직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석에 유의 바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를 보면, 2023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이 약 37.2%(전체 여성 중), 남성이 55.4%(전체 남성 중)를 차지

표 IV-8 성별·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사업장 규모별	2022			2023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전체	131,084	93,200	37,884	126,008	90,672	35,336
1~9인	23,056	18,861	4,195	22,382	18,506	3,876
10~29인	16,541	13,654	2,887	16,697	14,041	2,656
30~99인	16,912	12,809	4,103	16,914	12,906	4,008
100~299인	17,434	11,958	5,476	16,717	11,501	5,216
300~999인	18,288	11,956	6,332	17,323	11,478	5,845
1,000인 이상	38,853	23,962	14,891	35,975	22,240	13,73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 현황

○ 20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는 여성은 20,773명으로 전년 대비 3,308명(18.9%) 증가하였고, 남성은 2,415명으로 전년 대비 414명(20.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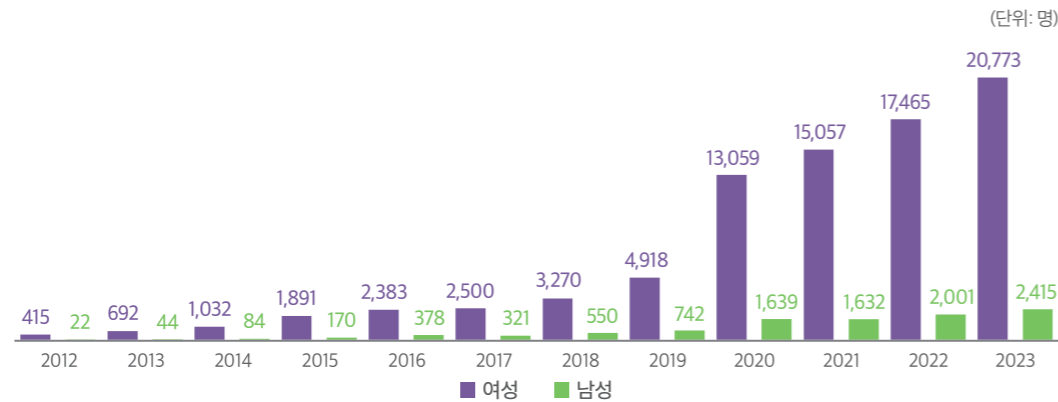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는 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 수급자 수가 지속 증가
- 2023년 전체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낮은 편임

표 IV-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현황

연도	전체	여성	남성	
2012	437	415	22	
2013	736	692	44	
2014	1,116	1,032	84	
2015	2,061	1,891	170	
2016	2,761	2,383	378	
2017	2,821	2,500	321	
2018	3,820	3,270	550	
2019	5,660	4,918	742	
2020	14,698	13,059	1,639	
2021	16,689	15,057	1,632	
2022	19,466	17,465	2,001	
증감	'22년 대비	3,722	3,308	414
	'13년 대비	22,452	20,081	2,37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그림 IV-6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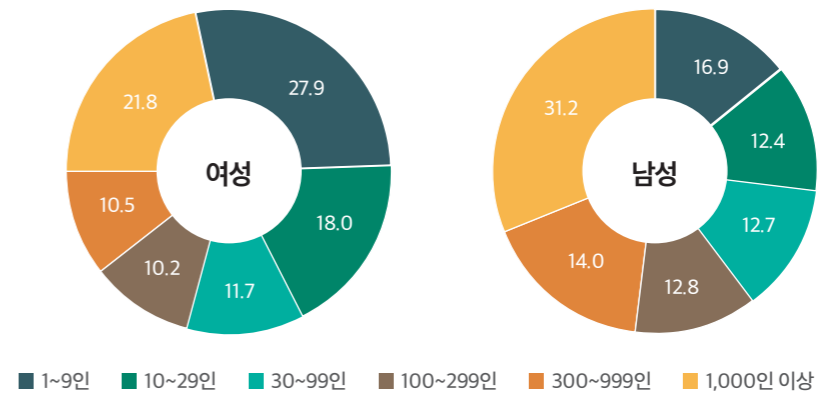
○ 사업장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중은 여성이 32.3%(전체 여성 중), 남성이 45.2%(전체 남성 중)로, 육아휴직에 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10 성별·사업장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

사업장 규모별	2022			2023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전체	19,466	17,465	2,001	23,188	20,773	2,415
1~9인	5,659	5,358	301	6,210	5,801	409
10~29인	3,265	3,039	226	4,029	3,730	299
30~99인	2,226	1,941	285	2,733	2,427	306
100~299인	1,904	1,653	251	2,420	2,110	310
300~999인	2,169	1,821	348	2,510	2,172	338
1,000인 이상	4,243	3,653	590	5,286	4,533	75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그림 IV-7 2023년 성별·사업장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분포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4.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 2023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28,954개로, 전년 대비 1,969개 감소, 2023년 기준 보육아동 수는 1,011,813명으로, 전년 대비 83,637명 감소

- 기관 유형별 분포를 보면 가정어린이집(36.9%), 민간·개인어린이집(30.7%), 국공립어린이집(21.4%), 직장어린이집(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육아동 수를 기준으로 보면 민간·개인어린이집이 41.5%로 가장 높고, 국공립어린이집(28.3%), 가정어린이집(15.8%), 직장어린이집(6.1%) 등이 그 뒤를 이음

표 IV-11 전국 어린이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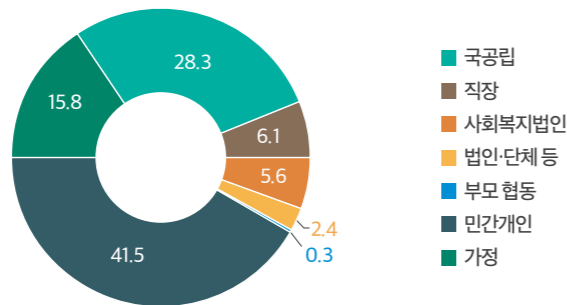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

어린이집 유형	2022				2023			
	어린이집 수		보육아동 수		어린이집 수		보육아동 수	
	개소	비율	현원	비율	개소	비율	현원	비율
전체	30,923	100.0	1,095,450	100.0	28,954	100.0	1,011,813	100.0
국공립	5,801	18.8	276,670	25.3	6,187	21.4	286,487	28.3
직장	1,291	4.2	61,650	5.6	1,308	4.5	61,570	6.1
사회복지법인	1,254	4.1	64,503	5.9	1,206	4.2	56,812	5.6
법인·단체 등	610	2.0	27,743	2.5	551	1.9	24,010	2.4
부모 협동	132	0.4	3,203	0.3	124	0.4	2,851	0.3
민간·개인	9,726	31.5	477,628	43.6	8,886	30.7	420,219	41.5
가정	12,109	39.2	184,053	16.8	10,692	36.9	159,864	15.8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그림 IV-8 2023년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비율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 2023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비중은 4.5%로 전년 대비 0.3%p 증가

- 2023년 직장어린이집 수는 1,308개로 나타났으며 보육아동 수는 61,570명
- 전체 보육아동 수에서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비중은 6.1%로 전년 대비 0.5%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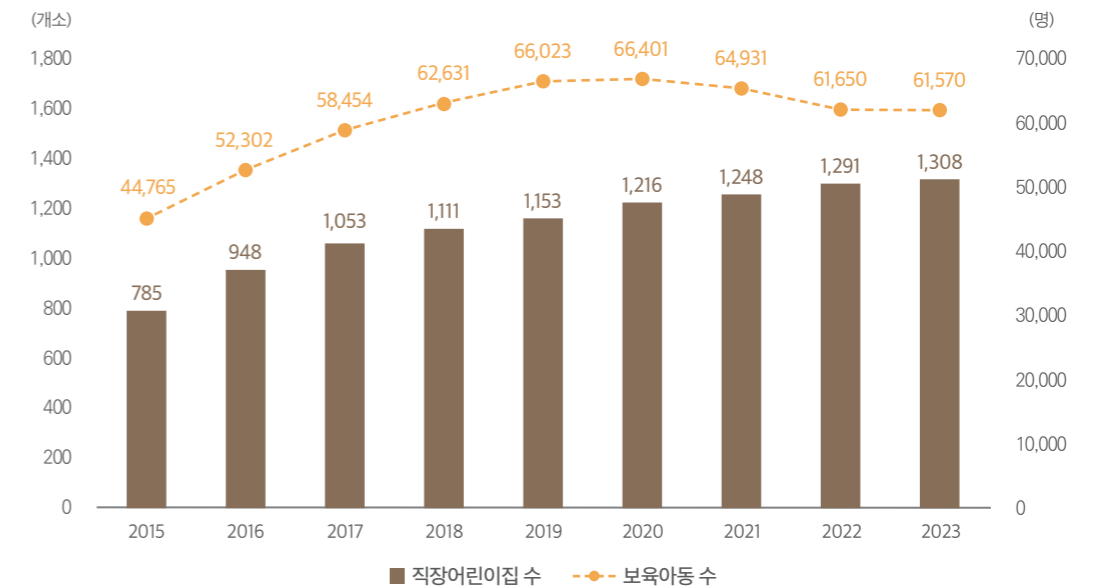
표 IV-12 직장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명, %)

연도	어린이집 수		보육아동 수	
	개소	비중	현원	비중
2015	785	1.8	44,765	3.1
2016	948	2.3	52,302	3.6
2017	1,053	2.6	58,454	4.0
2018	1,111	2.8	62,631	4.4
2019	1,153	3.1	66,023	4.8
2020	1,216	3.4	66,401	5.3
2021	1,248	3.8	64,931	5.5
2022	1,291	4.2	61,650	5.6
2023	1,308	4.5	61,570	6.1

주: 비중은 전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비중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그림 IV-9 직장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수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639개로 전년에 비해 2.3%(37개) 증가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93.1%로 전년 대비 1.6%p 증가

표 IV-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단위: 개소, %)

연도	의무사업장	이행	설치		미이행
			설치	위탁	
2015	1,143	52.9	50.5	2.4	47.1
2016	1,153	81.5	63.2	18.3	18.5
2017	1,253	86.7	67.0	19.7	13.3
2018	1,389	90.1	68.9	21.2	9.9
2019	1,445	90.2	68.3	21.9	9.8
2020	1,432	90.9	68.4	22.4	9.1
2021	1,486	90.9	68.4	22.5	9.1
2022	1,602	91.5	67.9	23.6	8.5
2023	1,639	93.1	68.3	24.8	6.9

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설치 의무 위반 시 명단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수는 2018년 65,248가구에서 2023년 86,100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면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2023년 기준 종일제 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대상) 이용가구는 1,890가구로 나타났으며, 시간제 서비스 이용가구는 66,515가구, 일시연계와 기관연계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이용가구는 17,695가구로 나타남

표 IV-1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가구,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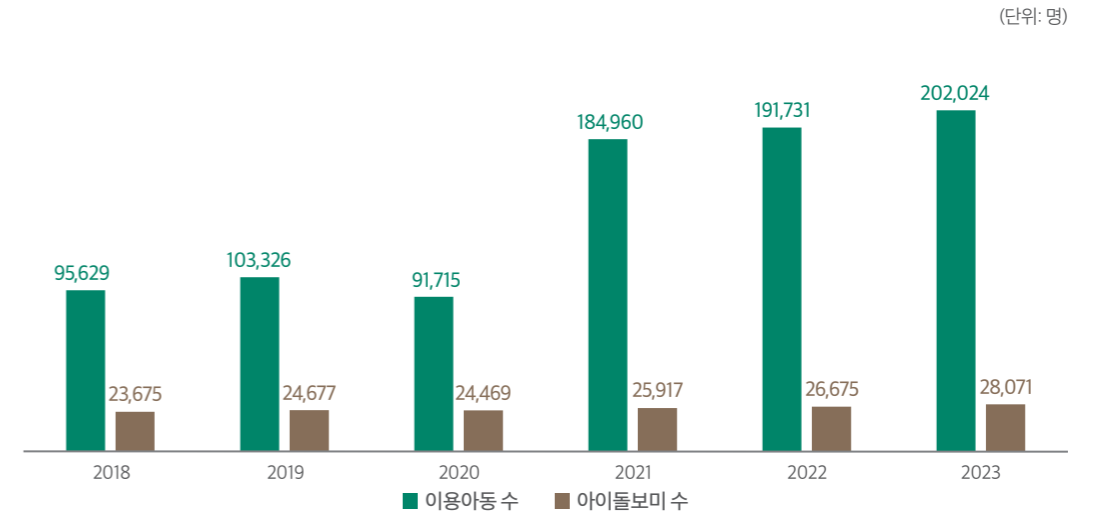
연도	이용가구	가구별 월평균 이용시간		
		시간제	종일제	기타
2018	65,248	60,710	4,538	-
2019	70,485	66,783	3,702	-
2020	59,663	56,525	3,138	-
2021	71,789	57,454	2,617	11,718
2022	78,212	61,138	2,760	14,314
2023	86,100	66,515	1,890	17,695

주: 기타는 일시연계, 기관연계,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을 의미. 가구별 월평균 이용시간은 시간제기분형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수 및 아이돌봄비 수 증가 추세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아동 수는 2022년 191,731명에서 2023년 202,024명으로 5.4% 증가하였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비 수 역시 2022년 26,675명에서 2023년 28,071명으로 증가

그림 IV-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수 및 아이돌봄비 수 추이



자료: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5. 초등돌봄교실 참여 현황

○ 초등돌봄교실 수와 이용 인원 수 꾸준히 증가

- 돌봄교실 수는 2022년 14,970개에서 2023년 15,147개로 177개 증가하였으며, 이용 인원 수는 2022년 292,068명에서 2023년 300,535명으로 8,467명 증가

표 V-15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이용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돌봄교실 수	11,980	12,398	13,910	14,278	14,774	14,970	15,147
이용 인원	245,303	261,287	290,358	256,213	283,818	292,068	300,535

자료: 교육부 제공자료

6.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 2018년부터 시작된 가족친화인증제를 통해, 2023년 총 5,911개의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그중 중소기업이 4,110개로 69.5%를 차지

표 IV-16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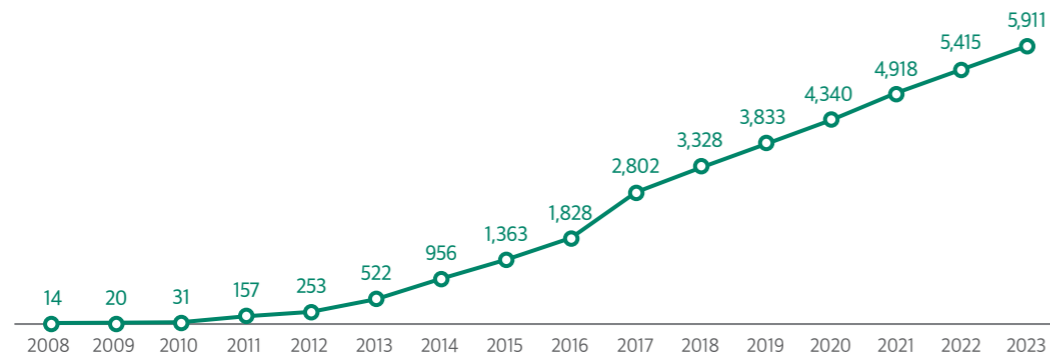
(단위: 개사, %)

연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기업·기관수	비율	기업·기관수	비율	기업·기관수	비율
2008	14	1	7.1	4	28.6	9	64.3
2009	20	6	30	6	30	8	40
2010	31	9	29	11	35.5	11	35.5
2011	157	49	31.2	43	27.4	65	41.4
2012	253	76	30	65	25.7	112	44.3
2013	522	183	35.1	144	27.6	195	37.4
2014	956	428	44.8	223	23.3	305	31.9
2015	1,363	702	51.5	258	18.9	403	29.6
2016	1,828	992	54.3	276	15.1	560	30.6
2017	2,802	1,596	57	335	12	871	31.1
2018	3,328	2,028	60.9	364	10.9	936	28.1
2019	3,833	2,445	63.8	408	10.6	980	25.6
2020	4,340	2,840	65.4	455	10.5	1,045	24.1
2021	4,918	3,317	67.4	520	10.6	1,081	22
2022	5,415	3,706	68.4	591	10.9	1,118	20.6
2023	5,911	4,110	69.5	668	11.3	1,133	19.2

자료: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그림 IV-11 가족친화인증기업 수 추이

(단위: 개사)



자료: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05장



여성의 근로여건 현황

1. 임금
2. 근로시간
3. 사회보험

05장 여성의 근로여건 현황⁴⁾



1. 임금

○ 2023년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8,502원, 시간당 임금의 남녀 성비는 71%

- 2023년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3,409천 원으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1,475천 원)의 약 2.3배 수준이며,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20,205원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14,944원)의 약 1.4배 수준임
- 전년 대비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100천 원, 시간당 임금은 388원 상승하였으며,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 월 임금 총액은 206천 원, 시간당 임금은 611원 상승함
- 10년 전(2013년) 대비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910천 원, 시간당 임금은 6,467원 높아졌으며, 정규직 여성의 경우 월 임금 총액은 1,203천 원, 시간당 임금은 7,118원 높아짐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전년 대비 월 임금 총액은 30천 원, 시간당 임금은 356원 상승하였고, 10년 전 대비 월 임금 총액은 349천 원, 시간당 임금은 5,277원 높아짐

표 V-1 성별·고용형태별 평균 임금

(단위: 월임금 총액-천 원, 시간당 임금-원, 임금성비-%)

연도	성별	전체 근로자			정규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2013	전체	2,617	16,067		2,985	17,525		1,404	11,259	
	여성	1,873	12,035	64.5	2,205	13,087	65.6	1,125	9,667	74.6
	남성	3,095	18,658		3,410	19,945		1,703	12,967	
2018	전체	3,028	19,522		3,510	21,203		1,588	14,492	
	여성	2,259	15,265	67.8	2,702	16,561	68.8	1,266	12,357	74.0
	남성	3,569	22,515		4,007	24,059		1,919	16,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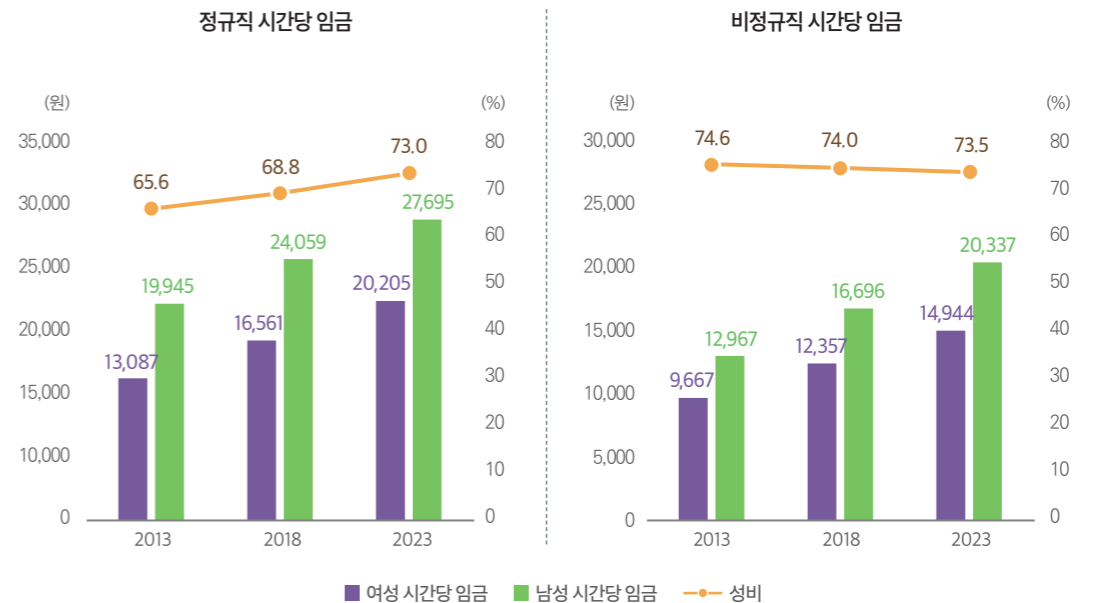
4) 본 장은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중 특수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표본에 대한 요약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포함되는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일부 업종(“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개인경영 농림어업”)을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음. 본 장의 분석 결과는 이들 업종에 관한 사항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연도	성별	전체 근로자			정규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2022	전체	3,526	22,651		4,078	24,409		1,826	17,233		
	여성	2,683	18,113	70.0	3,203	19,594	71.3	1,445	14,588	73.3	
	남성	4,127	25,886		4,633	27,466		2,211	19,903		
2023	전체	3,640	22,878		4,280	24,799		1,876	17,586		
	여성	2,783	18,502	71.0	3,409	20,205	73.0	1,475	14,944	73.5	
	남성	4,260	26,042		4,830	27,695		2,294	20,337		
증감	'22년 대비	전체	114	227		202	389		50	352	
		여성	100	388	1.1	206	611	1.6	30	356	0.2
		남성	133	156		196	229		83	434	
	'13년 대비	전체	1,023	6,811		1,296	7,274		472	6,326	
		여성	910	6,467	6.5	1,203	7,118	7.3	349	5,277	-1.1
		남성	1,165	7,384		1,420	7,751		591	7,37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그림 V-1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성비

(단위: 천 원,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여성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평균 월 임금 총액과 시간당 임금이 높아짐

- 2023년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 총액은 1,857천 원, 시간당 임금은 14,802원, 근속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 총액은 2,573천 원, 시간당 임금은 16,884원, 근속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2,868천 원, 시간당 임금은 18,362원, 근속기간 5년 이상 7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3,088천 원, 시간당 임금 19,086원, 근속기간 7년 이상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4,308천 원, 시간당 임금 26,058원으로 나타남
- 성별 임금 비율은 근속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근로자 집단에서 각각 78.4%,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근속기간 7년 이상 집단의 경우 73.1%로 가장 낮음
- 남녀 임금 성비는 모든 근속기간 구간별 집단에서 전년 대비, 10년 전 대비 증가함
-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근속기간별 임금을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여성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은 4,223천 원으로 근속기간 5년 미만 여성 근로자(2,903천 원)에 비해 월 급여 총액이 현저히 높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5년 이상 여성의 월 급여 총액은 1,878천 원으로 근속기간 5년 미만 여성 근로자(1,431천 원)에 비해 약간만 높은 수준임

표 V-2 성별·근속기간별 평균 임금

(단위: 월임금 총액-천 원, 시간당 임금-원, 임금성비-%)

연도	성별	1년 미만			1~3년			3~5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2013	전체	1,617	11,040		2,172	13,044		2,506	14,992	
	여성	1,297	9,236	73.3	1,736	10,896	73.8	1,977	12,281	72.7
	남성	1,895	12,601		2,523	14,768		2,877	16,892	
2018	전체	1,909	14,464		2,498	15,796		2,919	18,064	
	여성	1,560	12,106	73.4	2,022	13,533	76.0	2,325	15,017	73.8
	남성	2,210	16,500		2,919	17,805		3,361	20,336	
2022	전체	2,215	17,294		2,867	18,477		3,260	20,151	
	여성	1,829	14,475	73.7	2,346	16,184	78.5	2,652	17,200	76.3
	남성	2,536	19,642		3,353	20,619		3,754	22,549	
2023	전체	2,278	17,518		3,149	19,328		3,504	21,237	
	여성	1,857	14,802	74.7	2,573	16,884	78.4	2,868	18,362	78.1
	남성	2,635	19,812		3,665	21,523		4,004	23,497	

증감	'22년 대비	전체	64	224		282	851		244	1,086	
		여성	28	328	1.0	227	700	0.0	216	1,162	1.9
		남성	99	170		312	904		250	949	
	'13년 대비	전체	661	6,479		976	6,284		998	6,245	
		여성	560	5,566	1.4	837	5,988	4.7	891	6,080	5.4
		남성	740	7,211		1,143	6,755		1,127	6,60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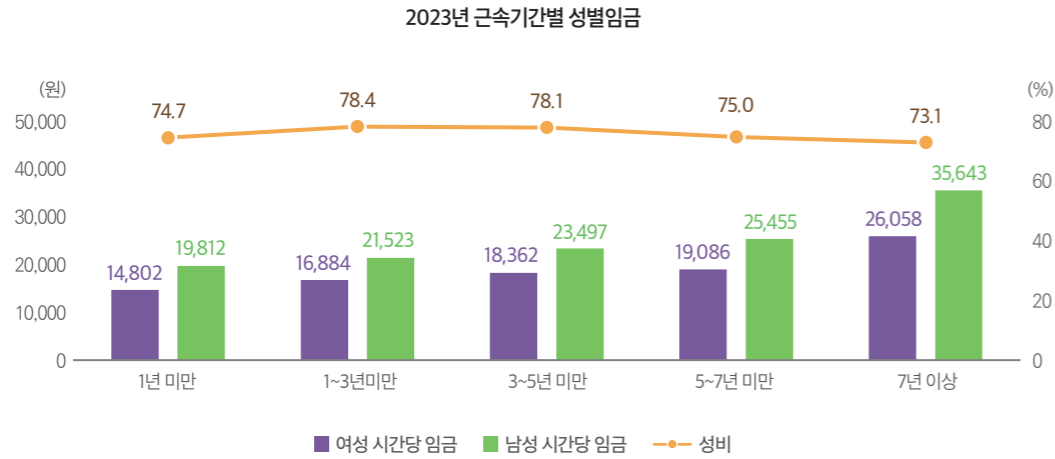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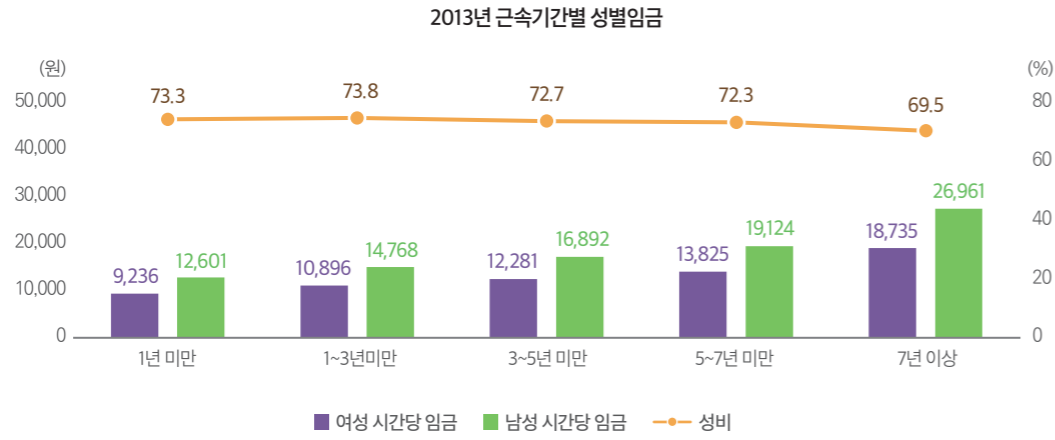
표 V-2 성별·근속기간별 평균 임금-계속

(단위: 월임금 총액-천 원, 시간당 임금-원, 임금성비-%)

연도	성별	5~7년			7년 이상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성비	월 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성비	
2013	전체	2,879	17,208		4,156	24,855		
	여성	2,262	13,825	72.3	3,043	18,735	69.5	
	남성	3,228	19,124		4,539	26,961		
2018	전체	3,284	20,260		4,757	29,207		
	여성	2,612	16,684	73.7	3,622	22,863	71.6	
	남성	3,730	22,635		5,242	31,915		
2022	전체	3,614	22,081		5,181	31,286		
	여성	2,892	18,372	74.0	3,990	24,894	72.5	
	남성	4,148	24,825		5,747	34,327		
2023	전체	3,851	22,827		5,557	32,518		
	여성	3,088	19,086	75.0	4,308	26,058	73.1	
	남성	4,387	25,455		6,161	35,643		
증감	'22년 대비	전체	237	747		376	1,232	
		여성	196	714	1.0	317	1,164	0.6
		남성	239	630		414	1,316	
	'13년 대비	전체	972	5,619		1,401	7,663	
		여성	826	5,261	2.7	1,264	7,323	3.6
		남성	1,159	6,331		1,622	8,68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그림 V-2 근속기간별 남녀 근로자의 임금과 성비(2013, 2023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표 V-3 성별·고용형태별·근속기간별 평균 임금

(단위: 월임금총액-천원, 시간당임금-원, 임금성비-%)

연도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5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월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2013	전체	2,284	13,229		3,941	23,395		1,374	11,028		1,812	14,394	
	여성	1,860	10,904	73.3	2,927	17,651	69.2	1,103	9,473	74.6	1,421	12,287	73.6
	남성	2,583	14,867		4,317	25,522		1,664	12,695		2,238	16,686	

연도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5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월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월임금 총액	시간당 임금	임금 성비	
2018	전체	2,735	16,395		4,545	27,627		1,556	14,308		1,932	16,514		
	여성	2,270	13,820	75.2	3,513	21,700	71.7	1,237	12,146	73.6	1,557	14,468	75.9	
	남성	3,092	18,372		5,008	30,284		1,880	16,503		2,399	19,060		
2022	전체	3,176	19,023		5,024	30,059		1,782	17,136		2,193	18,041		
	여성	2,693	16,480	78.3	3,917	23,956	72.4	1,405	14,413	72.7	1,752	15,932	77.8	
	남성	3,559	21,042		5,573	33,083		2,156	19,838		2,706	20,491		
2023	전체	3,406	19,723		5,361	31,070		1,821	17,420		2,423	19,229		
	여성	2,903	17,211	79.6	4,223	25,017	73.4	1,431	14,752	73.2	1,878	16,719	75.2	
	남성	3,787	21,629		5,926	34,072		2,221	20,161		3,075	22,234		
증감	'22년 대비	전체	230	700		337	1,011		39	284		230	1,188	
		여성	209	731	1.3	306	1,061	1.0	26	338	0.5	126	787	-2.6
		남성	229	587		353	989		66	323		370	1,743	
'13년 대비	전체	1,121	6,494		1,420	7,675		447	6,392		610	4,835		
	여성	1,042	6,307	6.2	1,296	7,366	4.3	328	5,279	-1.4	456	4,432	1.6	
	남성	1,204	6,762		1,609	8,549		557	7,465		837	5,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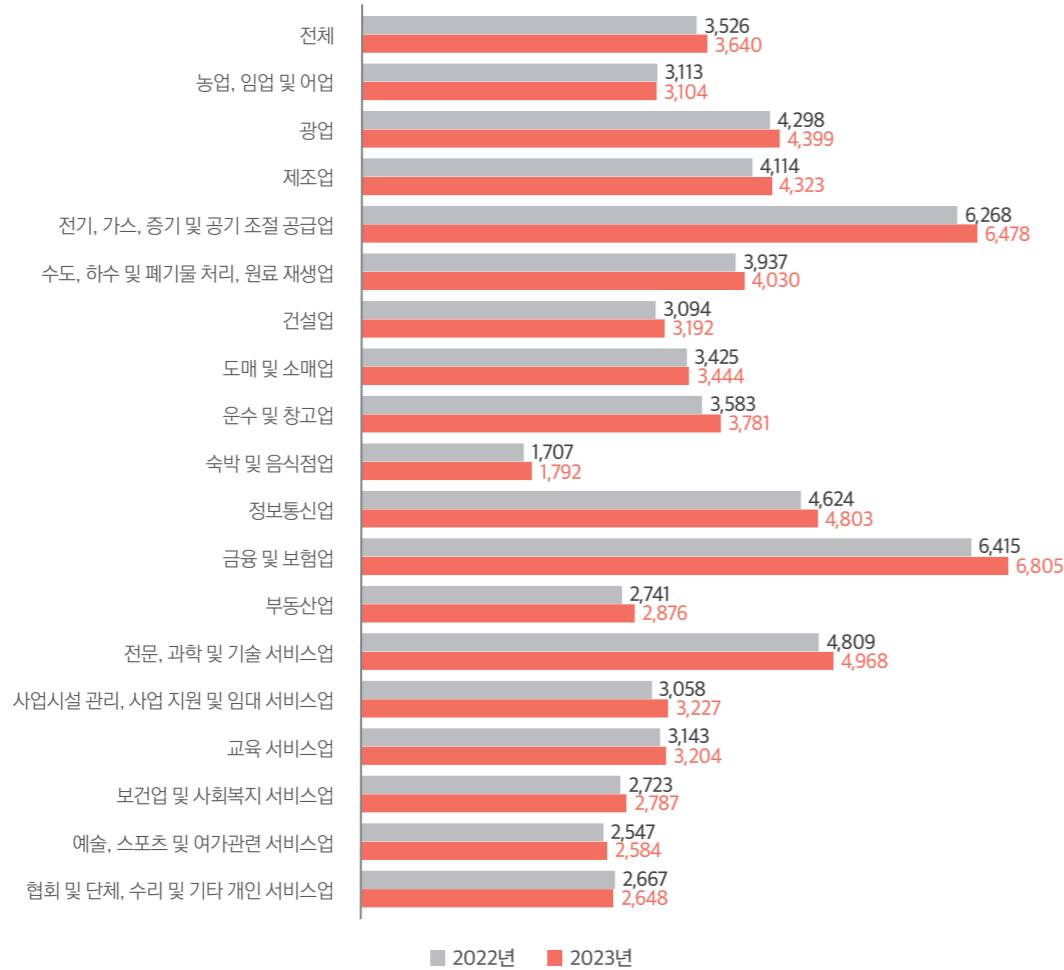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2023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평균 월 급여 총액이 5,737천 원이며, 평균 월 급여 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1,618천 원임

- 전년 대비 임금 증가폭이 가장 큰 업종도 금융 및 보험업으로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이 전년 대비 364천 원 증가하였음
- 반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평균 임금이 6천 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적었음

그림 V-3 업종별 여성 월 평균 임금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표 V-4 성별·업종별 평균 월 급여 총액

(단위: 천 원)

업종 대분류	2023			2022			전년 대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3,640	2,783	4,260	3,526	2,683	4,127	114	100	133
농업, 임업 및 어업	3,104	2,442	3,350	3,113	2,246	3,445	-9	196	-95
광업	4,399	3,444	4,529	4,298	3,340	4,414	101	104	115
제조업	4,323	3,173	4,712	4,114	3,026	4,485	209	146	22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478	5,057	6,795	6,268	4,752	6,609	211	304	18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030	3,333	4,164	3,937	3,209	4,072	93	124	92
건설업	3,192	2,858	3,247	3,094	2,723	3,157	99	135	89
도매 및 소매업	3,444	2,688	4,022	3,425	2,659	3,999	19	30	23

업종 대분류	2023			2022			전년 대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운수 및 창고업	3,781	3,350	3,890	3,583	3,087	3,698	197	263	192
숙박 및 음식점업	1,792	1,618	2,114	1,707	1,550	2,008	85	68	106
정보통신업	4,803	3,872	5,262	4,624	3,655	5,089	178	216	172
금융 및 보험업	6,805	5,737	7,803	6,415	5,373	7,388	390	364	415
부동산업	2,876	2,271	3,182	2,741	2,104	3,068	134	167	1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968	3,896	5,570	4,809	3,702	5,413	158	193	15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227	2,665	3,699	3,058	2,496	3,549	169	169	150
교육 서비스업	3,204	2,625	3,987	3,143	2,558	3,918	61	67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87	2,459	4,392	2,723	2,389	4,420	64	70	-2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84	2,129	2,998	2,547	2,081	2,941	38	49	5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48	2,120	2,984	2,667	2,114	3,022	-20	6	-3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2023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34.3천 원)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12.5천 원)임

- 전년 대비 모든 업종에서 여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증가하였는데,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으로 1천 원 증가하였고, 시간당 임금이 가장 적게 증가한 업종은 광업, 건설업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
- 2023년 기준, 남녀 임금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으로 남성 임금 대비 여성은 평균 89.9% 수준이고, 남녀 임금비가 가장 낮은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3.5%)임

표 V-5 성별·업종별 평균 시간당 임금

(단위: 천 원, %)

업종 대분류	2023			2022			전년 대비		
	여성	남성	임금비	여성	남성	임금비	여성	남성	임금비
전체	18.5	26.0	71.0	18.1	25.9	70.0	0.4	0.2	1.1
농업, 임업 및 어업	16.0	21.1	75.6	15.2	22.5	67.7	0.7	-1.4	7.9
광업	20.1	25.4	79.2	20.1	25.2	79.6	0.0	0.2	-0.4
제조업	18.9	26.6	71.3	18.4	25.8	71.2	0.6	0.8	0.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0.3	39.2	77.2	29.5	39.3	75.2	0.7	-0.1	2.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1	23.1	86.8	19.7	23.1	85.3	0.4	0.0	1.5
건설업	20.1	25.4	78.9	20.0	25.0	80.2	0.0	0.4	-1.3
도매 및 소매업	17.6	24.0	73.1	17.5	24.6	71.0	0.1	-0.6	2.2
운수 및 창고업	20.5	22.8	89.9	19.5	22.5	86.9	1.0	0.3	3.1
숙박 및 음식점업	12.5	14.3	87.1	12.3	13.9	88.5	0.2	0.5	-1.4
정보통신업	23.6	31.4	75.0	22.9	31.3	73.4	0.6	0.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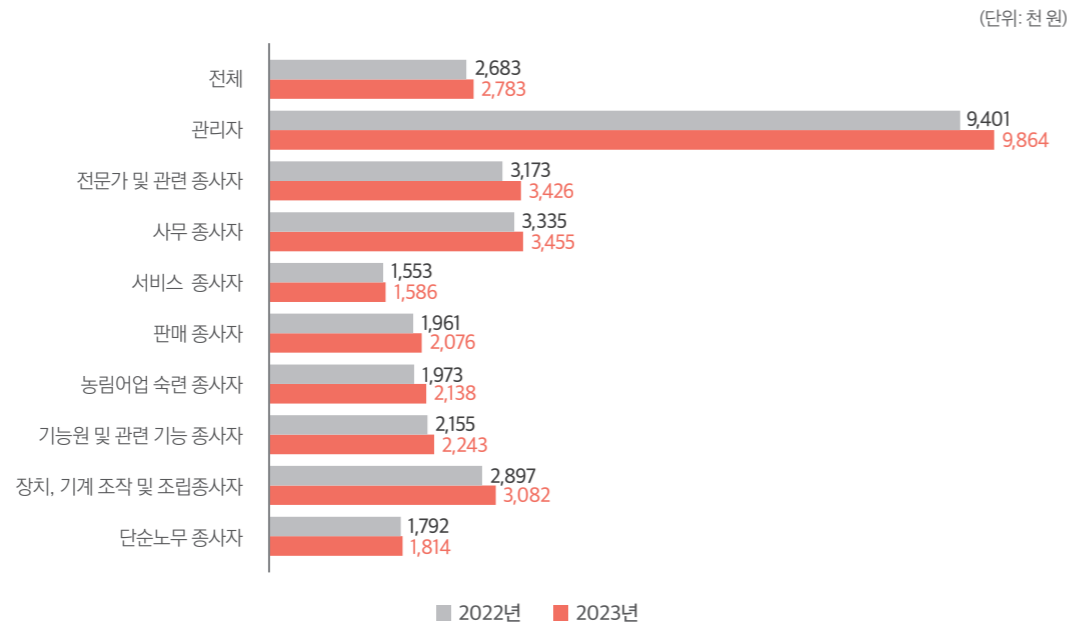
업종 대분류	2023			2022			전년 대비		
	여성	남성	임금비	여성	남성	임금비	여성	남성	임금비
금융 및 보험업	34.3	46.4	73.9	33.7	45.9	73.4	0.7	0.6	0.6
부동산업	15.8	18.2	86.8	15.0	17.8	84.4	0.8	0.4	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9	33.5	71.3	23.5	33.7	69.8	0.3	-0.2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6.7	22.1	75.8	16.5	21.9	75.3	0.2	0.2	0.4
교육 서비스업	22.8	31.0	73.4	22.5	31.8	70.8	0.3	-0.8	2.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1	27.0	63.5	16.4	27.7	59.3	0.7	-0.7	4.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0	19.1	83.9	15.3	18.5	82.8	0.7	0.5	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2	18.4	82.9	14.9	18.9	79.1	0.3	-0.5	3.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2023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이 가장 높은 직종은 관리자로 평균 월 급여 총액이 9,864천 원이었고, 평균 월 급여 총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로 평균 월 급여 총액은 1,586천 원이었음

- 전년 대비 임금 증가폭이 가장 큰 직종은 관리자 직종으로 전년 대비 평균 월 급여총액이 462천 원 증가하였음
-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월 급여 총액이 23천 원만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적었음

그림 V-4 직종별 여성 월 평균 임금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표 V-6 성별·직종별 평균 월 급여 총액

직업 대분류	2023			2022			전년 대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3,640	2,783	4,260	3,526	2,683	4,127	114	100	133
관리자	11,927	9,864	12,232	11,880	9,401	12,164	47	462	6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17	3,426	5,426	4,260	3,173	5,198	257	253	228
사무 종사자	4,283	3,455	5,075	4,157	3,335	4,916	126	120	158
서비스 종사자	1,763	1,586	2,303	1,729	1,553	2,285	34	33	17
판매 종사자	2,890	2,076	3,610	2,862	1,961	3,601	28	115	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432	2,138	2,481	2,411	1,973	2,496	21	164	-1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250	2,243	3,379	3,017	2,155	3,140	233	88	23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788	3,082	3,897	3,609	2,897	3,721	180	185	177
단순노무 종사자	2,058	1,814	2,241	2,019	1,792	2,198	39	23	4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2023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관리자 직종(59천 원)이며 가장 낮은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 및 단순노무 종사자(13.5천 원)임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0.4천 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전년대비 여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증가하였는데,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로 631원 증가하였음
- 2023년 기준, 남녀 임금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로 평균 89.6% 수준이고, 남녀 임금비가 가장 낮은 직종은 판매 종사자(66.4%)임

표 V-7 성별·직종별 평균 시간당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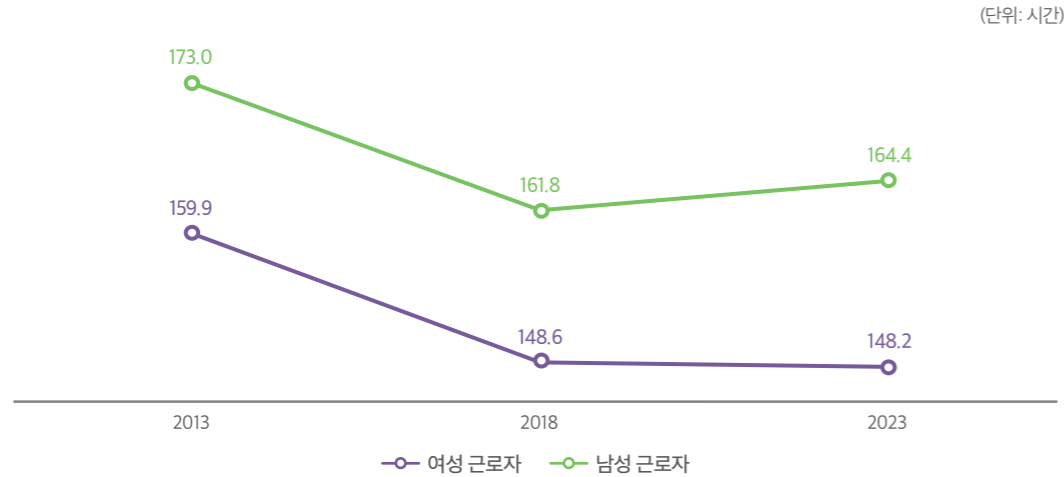
직업 대분류	2023			2022			전년 대비		
	여성	남성	임금비	여성	남성	임금비	여성	남성	임금비
전체	18.5	26.0	71.0	18.1	25.9	70.0	0.4	0.2	1.1
관리자	59.0	73.2	80.6	58.4	74.8	78.0	0.6	-1.7	2.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3	32.8	67.9	21.2	32.7	64.8	1.1	0.1	3.1
사무 종사자	21.1	30.0	70.5	21.1	30.1	70.2	0.0	-0.1	0.3
서비스 종사자	13.5	15.1	89.6	12.9	14.9	86.9	0.6	0.3	2.7
판매 종사자	14.6	22.0	66.4	14.1	22.3	63.4	0.4	-0.3	2.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4.1	17.3	81.7	13.5	17.5	77.2	0.6	-0.2	4.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3	23.4	69.5	16.7	23.1	72.3	-0.4	0.3	-2.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6	21.4	82.3	16.5	20.9	79.0	1.1	0.5	3.3
단순노무 종사자	13.5	16.9	80.0	13.2	15.6	84.3	0.3	1.3	-4.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2. 근로시간

○ 2023년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간 총 근로시간은 148.2시간, 남성 근로자는 164.4시간이며 지난 10년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

그림 V-5 성별 근로자 월 평균 근로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2023년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48.2시간으로 전년 대비 1.5시간 증가, 10년 전 대비 11.7시간 감소하였음

-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은 2023년 143.7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전년 대비 소정 근로시간은 1.7시간 증가, 초과 근로시간은 0.2시간 감소함
- 고용형태별로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70.4시간(소정 근로시간 164.8시간, 초과 근로시간 5.6시간)으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 101.8시간(소정 근로시간 99.6시간, 초과 근로시간 2.2시간)에 비해 68.6시간 많음
-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5.4시간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3시간 감소하였음

표 V-8 성별·고용형태별 월 평균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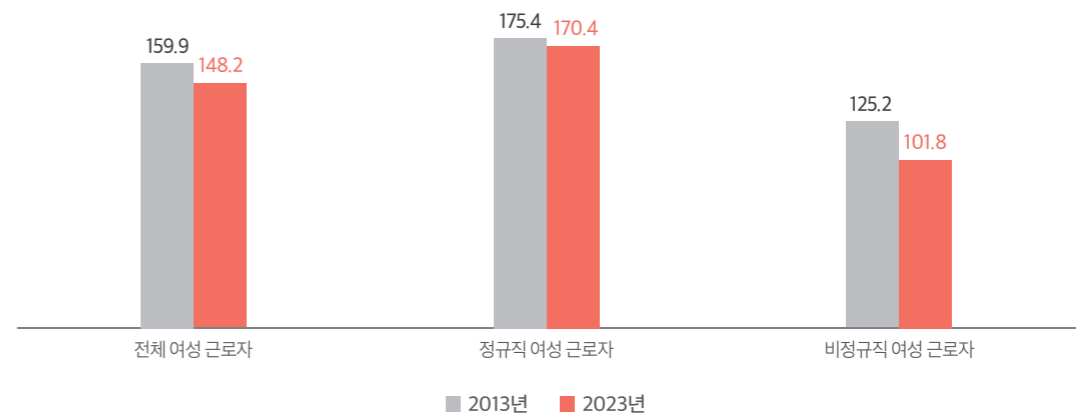
(단위: 시간)

연도	성별	전체 근로자			정규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총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총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총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2013	전체	167.9	156.2	11.6	178	164.6	13.4	134.4	128.6	5.8
	여성	159.9	152.5	7.4	175.4	166.2	9.2	125.2	121.6	3.6
	남성	173	158.7	14.3	179.4	163.8	15.7	144.4	136.1	8.2
2018	전체	156.4	147.9	8.5	169.7	159.9	9.8	116.3	111.9	4.4
	여성	148.6	143.4	5.2	166.7	160.3	6.4	108	105.5	2.5
	남성	161.8	151	10.8	171.6	159.7	11.9	124.8	118.4	6.4
2022	전체	154.9	147.4	7.5	169	160.4	8.6	111.7	107.4	4.3
	여성	146.7	142	4.7	165	159.4	5.5	103.1	100.5	2.6
	남성	160.8	151.3	9.5	171.5	161.1	10.5	120.3	114.3	6
2023	전체	157.6	150.3	7.4	174.5	165.9	8.6	111	107.2	3.8
	여성	148.2	143.7	4.5	170.4	164.8	5.6	101.8	99.6	2.2
	남성	164.4	155	9.4	177.1	166.6	10.5	120.5	115	5.4
증감	전체	2.7	2.9	-0.1	5.5	5.5	0	-0.7	-0.2	-0.5
	'22년 대비 여성	1.5	1.7	-0.2	5.4	5.4	0.1	-1.3	-0.9	-0.4
	남성	3.6	3.7	-0.1	5.6	5.5	0	0.2	0.7	-0.6
	전체	-10.3	-5.9	-4.2	-3.5	1.3	-4.8	-23.4	-21.4	-2
	'13년 대비 여성	-11.7	-8.8	-2.9	-5	-1.4	-3.6	-23.4	-22	-1.4
	남성	-8.6	-3.7	-4.9	-2.3	2.8	-5.2	-23.9	-21.1	-2.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그림 V-6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이 근속기간이 짧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김**

-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여성 근로자의 2023년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65.3시간이며, 소정 근로시간은 159.3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나타남
- 근속기간 5년 미만인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41.2시간이며, 소정 근로시간은 137.3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3.9시간임
- 근속기간 5년 이상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4.9시간 증가했지만, 10년 전 대비 5.1시간 감소했고, 근속기간 5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1.2시간 증가, 10년 전 대비 15.3시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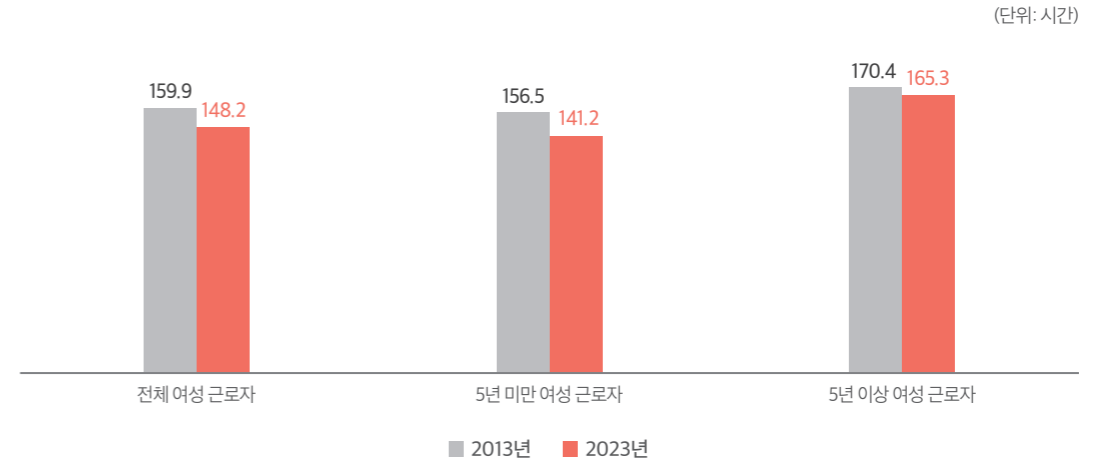
표 V-9 **성별·근속기간별 월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연도	성별	근속기간 5년 미만			근속기간 5년 이상			
		총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총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2013	전체	164.3	154.2	10.2	174.8	160.3	14.4	
	여성	156.5	149.9	6.6	170.4	160.3	10.1	
	남성	170.6	157.6	13.1	176.5	160.3	16.1	
2018	전체	150.9	143.7	7.3	166.8	156.1	10.7	
	여성	144.0	139.6	4.4	161.1	153.9	7.1	
	남성	156.8	147.1	9.7	169.5	157.1	12.4	
2022	전체	147.2	140.8	6.5	166.8	157.6	9.2	
	여성	140.0	135.9	4.1	160.4	154.5	5.9	
	남성	153.4	145.0	8.5	170.2	159.3	10.9	
2023	전체	149.7	143.6	6.2	172.0	162.5	9.5	
	여성	141.2	137.3	3.9	165.3	159.3	6.0	
	남성	157.0	148.9	8.1	175.6	164.3	11.3	
증감	'22년 대비	전체	2.5	2.8	-0.3	5.2	4.9	0.3
		여성	1.2	1.4	-0.2	4.9	4.8	0.2
		남성	3.6	3.9	-0.4	5.4	5.0	0.4
	'13년 대비	전체	-14.6	-10.6	-4.0	-2.7	2.2	-4.9
		여성	-15.3	-12.7	-2.7	-5.1	-1.0	-4.1
		남성	-13.6	-8.7	-5.0	-0.9	3.9	-4.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그림 V-7 **근속기간별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3. 사회보험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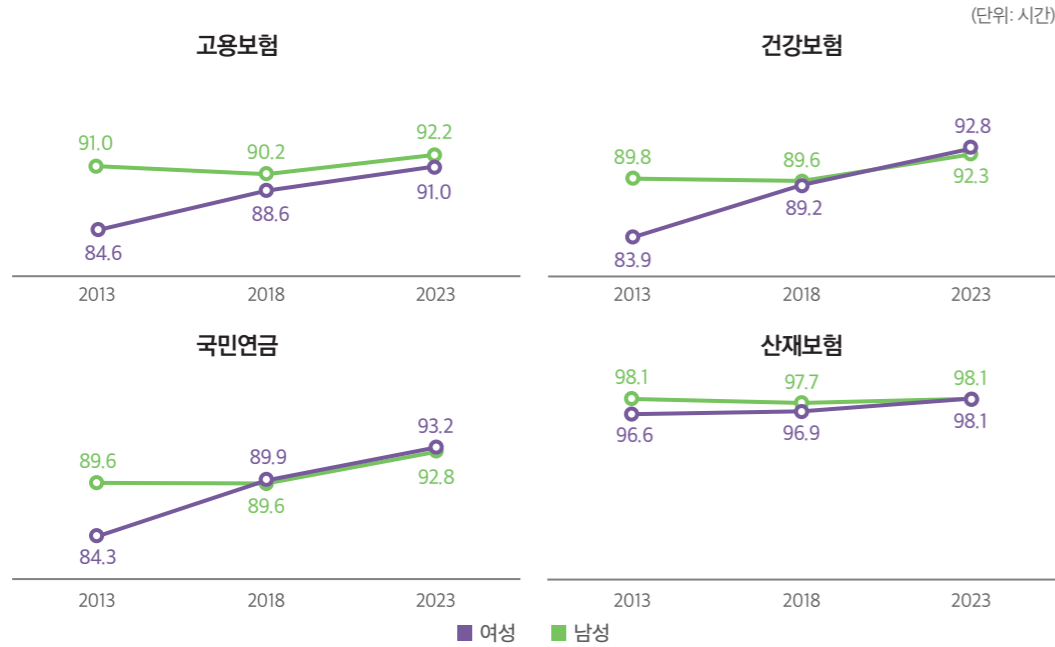
○ **지난 10년간 적용 제외 대상을 제외한 여성 근로자 중 사회보험 가입자 비중(사회보험 가입률⁶⁾)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모두에서 증가세**

-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23년 91.0%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하였으나 10년 전 대비 6.4%p 증가한 수준
- 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2023년 92.8%로 전년 대비 0.3%p 증가, 10년 전 대비 8.9%p 증가하였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3년 93.2%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10년 전 대비 8.9%p 증가함
- 여성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3년 98.1%로 전년 대비 0.1%p 증가, 10년 전 대비 1.6%p 증가함

5) 고용보험은 65세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상용근로자 5년 미만 농림어업 제외, 건강보험은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국민연금은 18세 미만, 60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산재보험은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년 미만 농림 어업 제외함. 또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교육서비스업 취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수처 집계 시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제외되었음

6) 각 사회보험 가입률은 적용제외 대상을 제외한 근로자 중 가입자 비중을 %로 나타냄.

그림 V-8 남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표 V-10 성별·근로자 사회보험 유형별 가입률

연도	성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2013	전체	88.6	87.6	87.6	97.5
	여성	84.6	83.9	84.3	96.6
	남성	91.0	89.8	89.6	98.1
2018	전체	89.6	89.4	89.7	97.4
	여성	88.6	89.2	89.9	96.9
	남성	90.2	89.6	89.6	97.7
2022	전체	91.8	92.5	93.0	98.2
	여성	91.3	92.6	93.2	98.0
	남성	92.2	92.5	92.8	98.3
2023	전체	91.7	92.5	92.9	98.1
	여성	91.0	92.8	93.2	98.1
	남성	92.2	92.3	92.8	98.1
증감	전체	-0.1	0.0	0.0	0.0
	여성	-0.2	0.3	0.0	0.1
	남성	0.0	-0.2	-0.1	-0.1
	전체	3.1	4.9	5.4	0.6
	남성	6.4	8.9	8.9	1.6
	남성	1.2	2.4	3.1	0.0

주: 각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 보험에서 적용제외대상을 제외한 가입 대상 근로자 중 가입자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률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3년 기준 각각 94.0%, 98.5%, 98.4%, 98.3% 수준이며,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각 보험 가입률은 순서대로 81.6%, 77.4%, 74.9%, 97.7%임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2023년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년 대비 0.3%p 증가, 10년 전 대비 23.9%p 증가, 건강보험 가입률은 전년 대비 1.7%p 증가, 10년 전 대비 25.6%p 증가,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년 대비 0.1%p 감소, 10년 전 대비 24.5%p 증가, 산재보험 가입률은 전년 대비 0.4%p 감소, 10년 전 대비 2.2%p 증가함
- 정규직-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간 가입률 차이는 고용보험 12.4%p, 건강보험 21.1%p, 국민연금 23.5%p, 산재보험 0.6%p로, 국민연金的 가입률 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보험의 경우 격차가 거의 없음

표 V-11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연도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2013	전체	95.6	97.4	97.2	97.8	60.9	50.6	47.0	96.4
	여성	94.4	96.1	96.0	96.9	57.8	51.8	50.4	95.6
	남성	96.2	98.2	97.9	98.3	64.1	49.4	43.5	97.2
2018	전체	94.6	98.1	97.9	97.5	70.8	59.5	56.5	96.7
	여성	94.3	97.6	97.5	97.3	71.6	65.9	65.5	95.6
	남성	94.8	98.3	98.2	97.7	69.9	53.7	48.0	97.7
2022	전체	94.6	98.6	98.5	98.1	80.7	70.3	67.5	98.4
	여성	94.2	98.2	98.1	98.0	81.3	75.7	75.0	98.2
	남성	94.8	98.9	98.8	98.2	80.2	65.6	60.5	98.5
2023	전체	94.5	98.8	98.6	98.1	81.4	71.7	68.5	98.2
	여성	94.0	98.5	98.4	98.3	81.6	77.4	74.9	97.7
	남성	94.7	99.0	98.8	98.0	81.1	66.7	62.7	98.7
증감	전체	-0.1	0.1	0.1	0.0	0.6	1.4	1.0	-0.1
	여성	-0.2	0.3	0.3	0.3	0.3	1.7	-0.1	-0.4
	남성	0.0	0.0	0.0	-0.2	0.9	1.0	2.2	0.2
'13년 대비	전체	-1.1	1.4	1.4	0.3	20.5	21.1	21.4	1.8
	여성	-0.4	2.5	2.4	1.4	23.9	25.6	24.5	2.2
	남성	-1.5	0.8	0.9	-0.3	17.0	17.2	19.2	1.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통계 설명자료

용어	해설
경제활동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함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
취업자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
육아	조사대상주간에 주로 미취학자녀(초등학교 입학전)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
가사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한 사람
통학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통학한 사람
연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입 있는 일, 구직활동 등 아무 일 없이 시간을 보낸 사람
심신장애	정상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장기적인 질환, 정신·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취업준비	학교나 학원에 가지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진학준비	혼자 집이나 도서실 등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경우
군입대대기	군대를 가기 위해 조사대상기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사람
쉬었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조기퇴직·명퇴 등으로 인해 쉬고 있는 사람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종사상지위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하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

용어	해설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 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
산업	산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을 의미 하며, 산업의 분류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는 1991년에 개정된 6차 한국 표준산업분류 기준,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 개정, 2004~2017년 수록), 10차 한국 표준산업분류(2017년 개정, 2013년~)를 적용
직업	직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기능별 종류를 말하며, 직업의 분류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는 1992년에 개정된 4차 한국 표준직업분류 기준을,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2000년에 개정된 5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6차 한국표준직업분류(2007년 개정, 2004~2017년간 신규 병행수록),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2017년 개정, 2013년 이후 소급제공)를 적용
여성기업	- 통계적 정의: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여성기업실태조사) - 법적 정의: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 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관련 사이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moel.go.kr/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https://worklife.kr/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https://saeil.mogef.go.kr/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ffsb.kr/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https://www.wbiz.or.kr/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홈페이지	https://www.wiset.or.kr/
여성과학기술인 생애주기 성장 플랫폼 'W브릿지'	https://www.wbridge.or.kr/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행일 2025년 1월 16일

발행처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집필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기택, 주재선, 김난주, 노우리
한국노동연구원 | 손연정, 최세림

편집·디자인 세일포커스(주)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 창강빌딩 6층
Tel. 02-2275-6894 www.seilfocus.com